

한글서체
한글서예
韓契書體
韓契書藝

관공체 한글재민체
官公體 韓契在民體

박재갑 김선숙 이규선 김민 지음

한글재민체연구회 韓契在民體研究會
Hangeul Jaemin Type Association

한글서체
한글서예
韓契書體
韓契書藝

관공체 한글재민체
官公體 韓契在民體

초판 1쇄 발행 2024년 2월 22일

지은이 박재갑 Park Jae Gahb
김선숙 Kim Sun Sook
이규선 Lee Kyu Sun
김민 Kim Min

펴낸이 박재갑
도운이 김해림
표지디자인 김미애
본문디자인 견병진, 김정현
펴낸곳 한글재민체연구회
등록 제2022-000176호(2022년 9월 2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4길 30, 501동 1401호
전화 02-766-8080
이메일 hangeuljaemin@gmail.com
홈페이지 <http://www.hangeuljaemin.kr>

©한글재민체연구회

- 출판은 봉래출판문화재단과 대신송촌문화재단에서 지원하였습니다.
- 사전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9-11-980056-6-3(05640)

한글서체
한글서예

韓契書體
韓契書藝

관공체 한글재민체

官公體 韓契在民體

지은이

박재갑 朴在甲 www.jgpark.net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2013년 퇴직을 하였다. 2000~2006년 국립암센터 초대 및 2대 원장을 역임하고, 2010~2011년 법인으로 전환된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대한암학회 이사장, 대한대장항문학회 이사장, 세계대장항문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199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세포주연구재단韓國細胞株研究財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의학박사. 성균관대학교 철학박사. 국내 단행본으로 『대장항문학, 일조각, 서울, 1991, 2000, 2005, 2012.』, 『종양학, 일조각, 서울, 2003, 2012.』 등 14권, 국외 단행본으로 『Atlas of Human Tumor Cell Lines, Academic Press, San Diego, 1994.』 등 12권, 국내 논문 228편, 국제 논문 218편을 발표하였다. 2011년~2014년 충청북도 제1기 및 제2기 명예도지사, 2001년 황조근정훈장, 2003년 제18회 성곡학술문화상, 2005년 세계금연의날 WHO 금연공로상, 2008년 미국대장외과학회 최우수 논문상, 2009년 제11회 관악대상, 2018년 국민훈장무궁화장 등을 수상하였다.

김선숙 金善淑

경기대학교 미술디자인대학원 전통예술학과(현 예술대학원)에서 서예(학)전공을 하였으며 『傳山의 書藝觀에 관한 研究-‘四寧四母’說을 中心으로-』 논문으로 2008년 8월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 기획부이사장, 서울미술협회 서예분과 부이사장, (사)아시아캘리그래피협회 부이사장, (사)세종한글서예큰뜻모임 이사이다. 제17대 대통령에게 서예 지도를 하였다. 공동편저로 『15세기 한글서예사』가 있으며, 공저로 『새겨 읽은 규합총서』가 있다. 현재 심재서예원沁齋書藝院을 주재主宰하고 있으며, 동방서법탐원과정東方書法探源課程에서 정음체正音體를 지도하고 있다.

이규선 李奎宣

시카고 미술대학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를 졸업하고, 뉴욕의 활자活字 공방工房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시각디자인학과에서 한글재민체 1.0부터 3.0에 이르기까지 김민 원장의 지도하에 글꼴 디자인 및 연구에 참여하고, 2022년 8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민대 부설 연구소인 사회문화디자인연구소에서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를 포함하여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국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였다.

김민술 民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1985년부터 2년간 일본의 세계적인 CI 전문회사 (주)파오스PAOS에 근무하며 스미토모은행, 기린맥주, 캔우드, 브릿지스톤, 조지루시 등의 CI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귀국 후 1990년에는 파오스 서울을 설립하여 (주)한샘의 CI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였다. 1993년까지 (주)CDR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데이콤, OB 맥주, 삼성중공업 등의 CI 작업을 주도하였다. 1996년 미국 RISD(Rhode Island School of Design)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996년 미국 보스턴에 JAM Design Inc. 와 1998년 뉴욕에 Telosphere Inc. 를 설립하여 아트디렉터로서 다수의 CI와 웹디자인 프로젝트를 완성하였다. 1999년 국민대학교에 부임하였다. 2005년에는 천상병 시인의 각종 필적을 찾아내 디지털 폰트로 완성하였고 신영복, 운동주 등의 육필 복원 디지털 폰트를 비롯하여 CJ그룹, GS칼텍스, 이견산업 등 다수의 기업 전용 서체를 디자인하였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원장으로 재직중이며, 2012년 제2회 사회적기업의날 정부포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2013년 제25회 아산상, 2017년 제19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2021년 제12회 봉래상蓬萊賞 등을 수상하였다.

일러두기

관공체官公體 : 문관文官, 서사관書寫官, 사자관寫字官 등등이 공식公式 문서文書 등등에 자체字體가 바르게 또박또박 쓴 정자체正字體

상표출원(국제등록)번호: 4020220174282, 상표출원(국제등록)일자: 2022. 09. 22.

상표등록번호: 4021531520000, 상표등록일자: 2024. 02. 13.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의 관공체官公體 서체에 기반하여 개발된 재해석再解釋 폰트

봉래출판문화재단蓬萊出版文化財團과 대신송촌문화재단大信松村文化財團 지원支援으로 간행刊行된 『한글서체 한글서예 관공체 한글재민체 韓契書體 韓契書藝 官公體 韓契在民體』는 비매품非賣品/무료無料이며, 국립중앙도서관國立中央圖書館www.nl.go.kr과 한글재민체연구회www.hangeuljaemin.kr에서 전자책電子冊을 무료無料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글서체
한글서예
韓契書體
韓契書藝

관공체 한글재민체
官公體 韓契在民體

박재갑 · 김선숙 · 이규선 · 김민 지음

한글재민체연구회 韓契在民體研究會
Hangeul Jaemin Type Association

머리말

박재갑朴在甲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재직하다가 2013년 8월 말 정년을 맞은 대장암 전문 외과 의사로서 7천여 명의 환자들을 수술한 바 있습니다. 박재갑 이름 석 자라도 제대로 쓰고 싶어 2018년 11월 12일부터 서예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글자의 서체書體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무심코 지나쳤던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대한의원개원칙서」에 담긴 한글서체韓契書體가 그동안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고 단아端雅하고 깨끗하며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선비답고 고귀高貴한 서체가 현재는 사라지고 없어졌나 하는 아쉬움에 「대한의원개원칙서」의 붓글씨 서체를 되살려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한문國漢文 혼용混用의 「대한의원개원칙서」를 한글학자 박갑수朴甲洙 교수에게 부탁드려 기존의 국역國譯 문장을 다듬은 후 개원칙서의 글꼴과 유사하게 반복하여 붓으로 써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설날 인사차 방문한 국민대학교 김민金民 교수가 이 모습을 보고 반기며 본인本人의 정년停年이 8년 남았는데 마지막 업적으로 함께 「대한의원개원칙서」에 기반한 서체書體를 개발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박재갑은 서체 개발에 관하여 전혀 아는 것이 없는 문외한門外漢이었으므로 큰 귀인貴人을 만난 셈이었습니다.

김민金民은 2000년 7월 14일 국립암센터의 심볼 및 로고로 선정된 작품을 디자인한 홍석표洪碩杓의 지도교수로 당시 국립암센터 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박재갑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박재갑이 하는 공익활동단체公益活動團體인 한국세포주연구재단韓國細胞株研究財團, 담배없는세상연맹, 글로벌문화경제포럼의 로고, 그리고 영문서적인 『Banning Tobacco담배제모뎀매금지』의 표지 디자인 등을 재능 기부한 바 있습니다.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5~6쪽

2020년 한글날에는 「대한의원개원칙서」의 서체를 재해석하여 개발한 디지털 폰트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를 발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韓國著作權委員會에서 개설한 웹사이트 공유마당에 오픈소스 형식으로 기증하여 온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발된 한글재민체의 보급과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한글재민체연구회韓契在民體研究會를 2022년 8월 8일 발족하였습니다.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의 붓글씨 서체를 ‘문관文官, 서사관書寫官, 사자관寫字官 等等이 공식公式 문서文書 等等에 자체字體가 바르게 또박또박 쓴 정자체正字體’라고 정의定義한 후 관공체官公體라 명명命名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글서체의 정의定義 및 명칭名稱의 기원起源을 공식적公式的인 기록記錄으로 남기기 위하여 대한민국大韓民國 특허청特許廳에 상표명商標名 「관공체官公體」를 2022년 9월 22일 상표출원[상표출원(국제등록) 번호: 4020220174282]하였으며, 상표명 「관공체」가 2024년 2월 13일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4021531520000]되었습니다.

원로 중진 서예가 30인, 강복영, 강영애, 곽상혁, 구자송, 김상숙, 김선숙, 김응학, 김이중, 김일순, 김정묵, 김후분, 박병천, 박정숙, 서복희, 서정선, 서정수, 송하경, 신길자, 유혜선, 이기훈, 이명실, 이성숙, 이송자, 이신영, 장지훈, 장혜자, 정복동, 조종숙, 최미연, 함민숙을 초대하여 《한글재민체 한글서에 초대전 - 개원칙서와 보건의료》 특별전을 대신송촌문화재단大信松村文化財團의 후원으로 2023년 1월 11~31일 개최하였습니다.

관공체官公體를 향한 한글 정자체正字體의 발전 과정을

조망眺望하고자 박재갑의 한글 정자체正字體 임서臨書 32작품과 한글재민체 19작품 등을 소개하는 『한글재민체 소고韓契在民體小考』를 대신송촌문화재단의 지원支援으로 2023년 5월 5일 출간 出刊 하였습니다.

2023년 8월 21~25일 《한글재민체서예대전韓契在民體書藝大典》을 대신송촌문화재단의 후원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작품은 애국가愛國歌 가사歌詞 1~4절(후렴구는 마지막 4절에 한 번만) 총 136자(부록3)를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나 관공체官公體 등의 한글 정자체正字體로 70×70cm 크기의 한지에 자유로운 장법章法으로 제작하게 하였습니다.

《한글재민체 한글서예 초대전-개원칙서와 보건의료》 특별 초대전과 《한글재민체서예대전韓契在民體書藝大典》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서예교본書藝敎本이 있으면 좋겠다는 요청要請이 있어, 『한글서체 한글서예 관공체 한글재민체韓契書體 韓契書藝 官公體 韓契在民體』를 집필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선숙金善淑은 「제13장. 한글재민체 결구법結構法」을 일곱 분의 서예가와 함께 집필하였습니다.

이규선李奎宣은 「제12장.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중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디자인’ 부분을 집필하였습니다.

2024년 2월 22일 봉래출판문화재단蓬萊出版文化財團과 대신송촌문화재단大信松村文化財團의 지원支援으로 『한글서체 한글서예 관공체 한글재민체韓契書體 韓契書藝 官公體 韓契在民體』 출간출간에 이르기까지 한글재민체의 개발, 활용, 보급에 아래와 같은 많은 분께 무한無限의 신세를 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물심양면物心兩面 후원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계명대학교 고문헌실,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국민일보,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내일신문, 농민신문, 뉴스1, 뉴시스, 대신송촌문화재단, 동아일보, 매일경제, 봉래출판문화재단, 부산시립박물관, 서울경제,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신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아시아경제, 안중근의사기념관, 연합뉴스, 오죽헌시립박물관, 월간서예, 윤디자인, 이데일리, 일중선생기념사업회, 조선일보, 참빛아카이브, 특허청, 한겨레, 한국경제,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글학회, 험버트박사기념사업회, 헤럴드경제, 강복영, 강연민, 강영애, 곽상혁, 견병진, 고인수, 고재석, 광노봉, 고호근, 구자송, 권재일, 권진호, 김규봉, 김기석, 김길원, 김두현, 김동각, 김동진, 김미애, 김병기, 김상숙, 김상태, 김성기, 김성수, 김수하, 김순찬, 김시연, 김연수, 김운기, 김응학, 김이중, 김인걸, 김인규, 김일순, 김일환, 김재년, 김정목, 김정수, 김정은, 김정현, 김종규, 김지명, 김지영, 김채식, 김한영, 김해림, 김현승, 김현일, 김 호, 김후분, 박갑수, 박기호, 박병천, 박상철, 박연철, 박영국, 박용만, 박윤정, 박정숙, 박중신, 박지원, 박형근, 배광식, 부정애, 서복희, 서정선, 서정수, 서 준, 서흥관, 성인근, 성 파, 손신진, 손용석, 송하경, 송현경, 신길자, 신선호, 심동섭, 안병욱, 안휘준, 양홍석, 오강남, 오석원, 우동엽, 유홍준, 유혜선, 유희정, 윤동한, 윤양희, 윤진영, 이규복, 이기동, 이기훈, 이동훈, 이명규, 이명박, 이명실, 이문석, 이문수, 이배용, 이상백, 이상찬, 이석연, 이성숙, 이성자, 이신영, 이어룡, 이영관, 이태준, 이태진, 이필숙, 이현정, 이현주, 이호영, 임광규, 임기연, 임원선, 임흥재, 장광순, 장명국, 장민환, 장지훈, 장혜자, 전광배, 전정우, 정 광, 정복동, 정상식, 정상혁, 정재두, 정재영, 정진웅, 정해창, 조용진, 조종숙, 진항가, 최명근, 최미연, 최병구, 최은철, 최인숙, 최재혁, 최홍식, 편석훈, 표학길, 하철용, 한도희, 한원자, 한재영, 한재훈, 함민숙, 허경무, 허성도, 허유미, 홍윤표, 황문환, 황상익, 황위주, 황준석 (가나다 순順, 직함職銜 및 존칭尊稱 생략省略)

2024년 2월 박재갑·김선숙·이규선·김민

목차

머리말

제1장 개요概要

- 1. 관공체官公體 12
- 2.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14
- 3. 한글서체韓契書體의 명칭名稱,
한글서체표韓契書體表와 한글서체도韓契書體圖 15
- 4. 『한글서체 한글서에 관공체 한글재민체
韓契書體 韓契書藝 官公體 韓契在民體』의 내용 17

제2장 한글의 발명發明과 한글 변천變遷의 시대時代 구분區分

- 1. 한글의 발명 18
 - 1-1. 고대古代 인도印度 음성학音聲學과의 연관성 18
 - 1-2. 동아시아 민족의 문자 제정制定과 그 영향 19
 - 1-3. 발명의 동기動機 20
 - 1-4. 한글 발명의 독창성獨創性 22
- 2. 한글 명칭의 변화 24
- 3. 한글운동과 한글의 변천變遷 25
 - 3-1. 정음시대正音時代(창정기創定期), 1446~1494년 25
 - 3-2. 언문시대諺文時代(침체기沈滯期), 1495~1893년 26
 - 3-3. 국문시대國文時代(부흥기復興期), 1894~1910년 27
 - 3-4. 한글시대韓契時代(정리기整理期), 1911~1932년 28
- 4. 일제 강점기 조선어朝鮮語 말살정책抹殺政策 30
- 5. 한글시대韓契時代(확산기擴散期) 31

제3장 국문國文의 새로운 용도用途 규정規定(1894년, 1895년)

- 1. 「군국기무처의안軍國機務處議案, 일체 국내외 공적인
문서와 사적인 문서에 외국의 국명, 지명, 인명이 구라과
글로 쓰여 있으면 모두 국문으로 번역해서 시행한다」,
1894년 7월 8일 34
- 1-1. 적용사례: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
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1894년 10월 11일 36
- 2. 「칙령勅令 제1호第一號, 공문식제公文式制 반포頒布,
공문식公文式 제14조: 법률法律·칙령勅令은 모두
국문國文을 기본으로 하고 한문漢文으로 번역을 붙이거나
혹은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한다」, 1894년 11월 21일 38
- 2-1. 적용사례: 「칙령勅令 제13호第十三號,
순검巡檢 징벌 규례를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1894년 12월 10일 42
- 3. 「칙령勅令 제86호第八十六號, 공문식公文式的
개정改正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케 하노라,
공문식公文式 제9조: 법률法律, 명령命令은 다 국문國文
으로 기본基本을 삼고 한문漢文 번역翻譯을 첨부添附
하며 혹은 국한문國漢文을 섞어서 쓴다」, 1895년 5월 8일 44

제4장 국문시대國文時代 국서 國書, 주본奏本, 주의奏議, 의주議奏,
 칙령勅令, 내부내거문內部來去文, 관급증서官給證書,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의 관공체官公體(1894~1909년)

1.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50 의 관공체官公體	4. 내부내거문內部來去文의 관공체官公體 94
1-1.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 50	4-1. 내부내거문內部來去文, 「조회照會 제1호第一號」, 1895년 4월 22일 94
1-1-1.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 1895년 5월 3일 50	4-2. 관공체官公體 65자, 23 날자, 95
1-1-2.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 1899년 10월 30일 52	내부내거문內部來去文, 「조회照會 제1호第一號」, 1895년
1-2. 관공체官公體 26자, 18 날자, 54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1894년, 1895년, 1899년	5. 관급증서官給證書의 관공체官公體 96
2. 주본奏本, 주의奏議, 의주議奏의 관공체官公體 55	5-1. 「윤병학尹秉學의 대한의원大韓醫院 졸업증서卒業證書」, 1907년 7월 30일 96
2-1. 주본奏本, 1895년 1월 29일 56	5-2. 「대한국기념장증서大韓國紀念章證書」, 1907년 8월 27일 98
2-2. 주의奏議, 1896년 11월 4일 60	5-3. 관공체官公體 19자, 14 날자, 100 관급증서官給證書, 1907년
2-3. 의주議奏, 1895년 3월 21일 62	
2-4. 관공체官公體 441자, 56 날자, 66 주본奏本, 주의奏議, 의주議奏, 1895년, 1896년	6.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의 관공체官公體 101
3. 칙령勅令의 관공체官公體 74	6-1.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1909년 1월 27일~2월 3일 101
3-1. 칙령勅令, 1895년 1월 29일, 1895년 3월 25일, 1899년 3월 24일, 1899년 4월 24일, 1907년 3월 10일 75	6-2. 관공체官公體 74자, 33 날자, 103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1909년
3-2. 관공체官公體 631자, 49 날자, 84 칙령勅令, 1894년, 1895년, 1899년, 1907년	

제5장 국문시대 國文時代 한국 韓國 개화기 開化期 국어교과서
國語教科書(1894~1910년)의 국문서체 國文書體

1.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 士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106 경성京城,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2.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국민소학 독본國民小學讀本』,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5년	114
3.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소학독본小學讀本』,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5년	114
4.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신정심상 소학新訂尋常小學』,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6년	115
5. 리봉운李鳳雲, 리규대, 『국문정리國文正理』, 국문국國文局, 경성京城, 1897년	116
6. 대한민국민교육회大韓國民教育會, 『초등소학1初等小學 一』, 대한민국민교육회장판大韓國民教育會藏板, 1906년	120
7. 학부學部, 『보통학교학도용普通學校學徒用 국어독본國語讀本 권1卷一』, 한국정부인쇄국인쇄 韓國政府印刷局印刷,鉛活字本, 1907년 初版, 1908년 再版, 1909년 參版, 1909년 四版	121
8. 정인호鄭寅琥, 『최신초등소학1最新初等小學 一』, 옥호서림玉虎書林, 경성京城, 1908년	122
9. 장지연張志淵, 『녀자독본女子讀本 상』, 광학서포 廣學書鋪, 경성京城, 1908년	124
10. 유길준俞吉濬, 『노동야학독본勞動夜學讀本』, 경성일보사京城日報社, 경성京城, 1908년	125
11. 유길준俞吉濬, 『대한문전 전 大韓文典 全』, 융문관隆文館, 경성京城, 1909년	126
12. 현재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127
13. 周時經, 『國語文法 全』과 주시경체周時經體	138
13-1. 周時經, 『國語文法 全』, 博文書館, 京城, 1910년	138
13-2. 주시경체周時經體	139

제6장 『국문연구의정안 國文研究議定案』(1909년)의
국문서체 國文書體

1. 『국문연구의정안』 보고서, 1909년 12월 28일	141
2. 『국문연구國文研究』	142
2-1. 주시경周時經, 『국문연구國文研究』, 학부學部, 한성漢城, 1907년	142

제7장 한글시대 韓契時代 한글교과서 韓契教科書(1911~1939년)
의 한글서체 韓契書體

1. 周時經, 『朝鮮語文法』, 新舊書林, 京城, 1911년	146
2. 崔正學, 『蒙學必讀 卷一』, 普書館, 京城, 1912년	147
3. 周時經, 『말의소리』, 新文館, 京城, 1914년	149
4. 朝鮮總督府 編纂, 『普通學校朝鮮語及漢文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15년	152
5. 朝鮮總督府, 『普通學校朝鮮語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23년	153
6. 朝鮮總督府, 『普通學校朝鮮語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30년	154
7. 최현배, 『중등 조선 말본』, 동광당서점, 京城, 1934년	155
8. 이운재李允宰, 『學生啓蒙隊用 한글공부』, 東亞日報社, 京城, 1934년	156
9. 朝鮮總督府, 『簡易學校用 初等朝鮮語讀本 全』, 朝鮮總督府, 1939년	157

제8장 한글시대韓契時代 보통학교普通學校 습자첩習字帖
(1911년, 1913년)과 쓰기방법견본집書法見本集(1924년, 1936년,
1937년)의 한글서체韓契書體

1.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 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159
2.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 普通學校習字帖 권1卷一』, 朝鮮總督府, 1913년	172
3.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 普通學校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3년	176
4.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용상 普通學校書方手本 第三學年用上』, 朝鮮總督府, 1924년	178
5.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1학년 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년	181
6.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1학년 普通學教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년	181
7.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상 書方手本 第二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83
8.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상 普通學教書方手本 第二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83
9.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하 普通學教書方手本 第二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185
10.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상 普通學教書方手本 第三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87
11.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하 書方手本 第三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189
12.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하 普通學交書方手本 第三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189
13.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4학년상 書方手本 第四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90
14.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5학년상 書方手本 第五學年上』, 朝鮮總督府, 1937년	191

제9장 고종실록高宗實錄의 한글서체韓契書體

1. 『고종실록高宗實錄』	192
1-1. 『고종실록高宗實錄』, 「국고國庫의 고갈枯渴로 일본 은행에서 300만 원의 차관借款을 받기로 하다」, 1895년 3월 5일	194

제10장 건국建國 초기初期 한글교과서韓契教科書(1945년,
1949년)의 한글서체韓契書體

1. 조선어학회, 『한글 첫 걸음』, 군정청 학무국, 1945년	198
2. 라우박, 『한글 첫 걸음-성인 교육 교재』, 미국공보원, 1949년	199

제11장 한글서예, 한글 글꼴과 글씨본

1. 김충현, 우리글씨 쓰는 법(1946~1948년)	200
1-1. 정인보鄭寅普 서문序文, 『우리글씨쓰는법』, 文教社, 1948년	200
1-2. 김충현金忠顯 서문序文, 『우리글씨쓰는법』, 文教社, 1948년	200
1-3. 김충현, 「한글과 궁체宮體」, 『중앙신문』, 1946년	200
1-3-1. 김충현金忠顯, 「한글과 궁체宮體 (一)」, 『중앙신문』, 1946년	200
1-3-2. 김충현金忠顯, 「한글과 궁체宮體 (二)」, 『중앙신문』, 1946년	201
1-3-3. 김충현金忠顯, 「한글과 궁체宮體 (三)」, 『중앙신문』, 1946년	202
1-4. 「바로 찾아야 할 국문 쓰는 법」, 『서울신문』, 1948년	203

2. 한글 글씨본과 서예	205
2-1. 『언문테첩諺文體帖』(1917년)	205
2-2. 초등, 중등, 고등 글씨본과 서예(1948~1997년)	205
2-3. 초등, 중등 미술과美術科 글씨본과 서예 (1949~2023년)	206
2-4. 한글 글씨본과 서예(1948~2023년)	207
3.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書體本(2009~2011년)	210
3-1. 일중一中 김충현金忠顯 한글 서체본	210
3-2. 평보平步 서희환徐喜煥 한글 서체본	210
3-3. 원곡原谷 김기승金基昇 한글 서체본	211
3-4. 갈물 이철경李喆卿 한글 서체본	211
3-5. 꽃뜰 이미경李美卿 한글 서체본	211
3-6. 규당圭堂 조종숙趙琮淑 한글 서체본	211
3-7. 의당懿堂 이현종李賢鍾 한글 서체본	212
3-8. 아람 이한순李漢順 한글 서체본	212
3-9. 난정蘭汀 이지연李知妍 한글 서체본	212
3-10. 한곡 현병찬玄炳璨 한글 서체본	212
4. 최정호崔正浩, 한글글꼴의 원형을 만든 디자이너	213

제12장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1.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의 탄생	214
1-1.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1.0」	214
1-2.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2.0」	214
1-3.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	215
1-4.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4.0」	215
1-5.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5.0」	216

2.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디자인	216
2-1. 관공체官公體 107자, 33 날자,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 1908년	217
2-2.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와 궁체정자宮體正字 필체筆體 비교	218
2-3.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디자인 방향	220
2-4.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디자인 원칙	221
2-5.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폰트 제작 과정	222
3.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와 궁체정자宮體正字 비교	224
4.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4.0」 한글2,350자	226

제13장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결구법結構法

1.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와 궁체정자宮體正字 기본基本 자모음자子母音字	257
2.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와 궁체정자宮體正字 자모음자子母音字의 위치별 획형劃形	257
3.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와 궁체정자宮體正字의 획劃	258
4.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와 궁체정자宮體正字의 점點	260
5.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와 궁체정자宮體正字의 자음子音	262

맺음말	268
-----	-----

부록 附錄

부록 1. 도판圖版 목록目錄	270
부록 2. 표表 목록目錄	273
부록 3. 참고參考 문헌文獻	274
부록 4. 기증寄贈 받은 참고參考 문헌文獻	284
부록 4-1. 홍윤표洪允杓 기증 문헌	284
부록 4-2. 김동진金東珍 기증 문헌	285
부록 4-3. 김현일金賢鎰 기증 문헌	285
부록 4-4. 박병천朴炳千 기증 문헌	285
부록 4-5. 김한영金漢榮 기증 문헌	285
부록 4-6. 허유미許有美 기증 문헌	286
부록 5. 관공체官公體 88 날자	287
부록 6. 한글재민체 모본模本	288
부록 6-1. 「헌법憲法 제第 1~4조條」	288
부록 6-2. 「애국가愛國歌」	289
부록 7. 한글재민체 작품作品	290
부록 7-1. 「어제계주윤음御製戒酒綸音」	290
부록 7-2. 「어제유팔도사도기로인민등륜음 御製諭八道四都耆老人民等綸音」	291

제1장 개요概要

1. 관공체官公體

관공체官公體 Official Script

문헌이나 인터넷 검색에서 한문서체漢文書體를 지칭指稱하지 않으면서,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의 단아端雅하고 단정端正한 붓글씨 한글韓契 서체를 정의定義할 수 있는 새로운 서체명書體名을 찾고자 하였다.

필자는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의 서체를 『문관文官, 서사관書寫官, 사자관寫字官 등등이 공식公式 문서文書 등등에 자체字體가 바르게 또박또박 쓴 정자체正字體』라고 정의定義하였다. 이후 여러 학자(고인수高仁洙, 김응학金應鶴, 한재훈韓在燦 등)에게 의견을 들은 후, 「관공체官公體」라 명명하였다.

영어로는 Official Script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31쪽
관공체官公體: 문관文官, 서사관書寫官, 사자관寫字官 등등이 공식公式 문서文書 등등에 자체字體가 바르게 또박또박 쓴 정자체正字體, 상표출원(국제등록)번호: 4020220174282, 상표출원(국제등록)일자: 2022. 09. 22., 상표등록번호: 4021531520000, 상표등록일자: 2024. 02. 13.

그러나 누가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를 서사書寫하였다는 기록은 아직 찾을 수가 없다.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국가등록문화재 제449호, 2009년 10월 12일 지정)는 1908년 10월 24일 대한의원 개원일에 황제 순종이 내린 칙서勅書(임금이 훈계하거나 알릴 내용을 적은 글)로, 가로세로 11cm 크기의 『칙명지보勅命之寶』 국새國璽가 찍혀있다. 선왕인 고종 대부터 추진한 일을 매듭지은 것임을 밝히고 백성들에게 의료의 혜택이 미치도록 하라는 황제의 뜻이 담긴 이 칙서는 대한의원이 대한제국의 공식 기관임을 선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공식 문서로서 의학적·상징적 가치가 크다. 1906년 1월 설치된 통감부는 기존 대한제국의 의료기관인 광제원, 의학교, 대한국적십자병원을 병합하기로 하고 관제 제정 및 병원 신축을 통해 1908년 대한의원을 개원하였으며, 이후 대한의원은 한국 최고 수준의 서양의학을 시술하는 병원인 동시에 식민지 보건의료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였다.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kdcd=79&ccbbaAsno=04490000&ccbbaCtcd=11&pageNo=1_1_1_0



도판 1-1.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 1908년 10월 24일

원본 크기 : 43.0x59.0cm

자료 제공 : 김상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역사문화원

dept.snuh.org/dept/HHCC/index.do

2.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는 1908년 대한의원 개원일에 순종純宗이 내린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국가등록문화재 제 449호)에 담긴 격조格調높은 붓글씨 서체에 기반을 두고 박재갑과 김민 등이 중심이 되어 개발한 재해석 디지털 폰트이다.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라는 명칭名稱은, 김민金民이 박재갑朴在甲에게 이메일로 자료를 보낼 때 서로의 이름에서 재在와 민民을 따서 재민在民이라는 파일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서 영감靈感을 얻어, 우리가 개발하는 글꼴의 명칭名稱은 주권재민主權在民에 입각立脚하여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로 하자고 합의하여 탄생하였다.

오랜 기간 여러 서체에 관한 개발 경험이 있는 김민이 함께 하게 되어 한글재민체 개발은 날개를 단 셈이 되었다. 마침 시카고 미술대학교를 졸업하고 뉴욕의 활자 공방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규선(2022년 8월 박사학위 취득)이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한글재민체 개발에 참여하며 속도가 붙었다.

2020년 한글날에 발표한 「한글재민체1.0」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KS 표준한자를 추가한 「한글재민체2.0」, 2022년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고유固有 한자 203자와 대법원인명용한자大法院人名用漢字 8,279자 등을 추가하여 「한글재민체3.0」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23년 윤디자인그룹을 통해 배포한 「한글재민체4.0」은 중국인의 일상에서 활용되는 표준 간체자와 번체자, 일본 한자와 히라가나 및 가타카나 문자 등을 추가하였다. 이로써 한글과 로만 알파벳, 중국의 간체자와 번체자, 일본 문자까지 같은 디자인으로 구성하여 다국어 지원을 위한 디지털 폰트 한글재민체를 완성하였다.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9쪽
박재갑, 김민, 박윤정, 이규선,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1.0」, 공유마당 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10. 8.

이규선, 김민, 『구한말 사자관 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1.0까지』, 기초조형학연구, 2022;22: 319~330.

박재갑, 김민, 박윤정, 이규선,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2.0」, 공유마당 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11. 3.

이규선, 박윤정,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2)-KS X 1001 한자 4,888자를 포함한 한글재민2.0』, 기초조형학연구, 2021;23:369~380.

박재갑, 김민, 박윤정, 이규선,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 공유마당 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5. 25.

이규선,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디자인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3.0까지』,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서울, 2022.

진황가陳鳳嘉, 김민金民, 『韓契在民體-韓國字體設計界的新突破』, 상하이 방직(주)회사 上海紡織控股(集團)公司, 2023;456:74~76.

김지영, 김민, 『디지털 폰트 ‘한글재민체4.0’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일러스트레이션포럼, 2023;75:65~78.

박재갑, 김민, 이규선, 진황가, 김지영, 『한글재민체4.0』, 폰코font.co.kr/collection/sub?family_idx=10658, 2023. 5. 25.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37~40쪽

3. 한글서체韓契書體의 명칭名稱, 한글서체표韓契書體表와 한글서체도韓契書體圖

김병기金炳基의 주장主張*대로 서체書體와 자체字體 용어의 의미를 명료화하기 위하여, 필자들은 서체書體란 자체字體를 서사자書寫者가 서사書寫한 것으로 정의定義한다.

* 金炳基, 『書藝, 基本用語의 意味明瞭化試論-活劃(金翅翽海, 香象渡河), 字體, 書體, 筆體, 書風에 대한 辨釋』, 中國學論叢, 2010.

한글서체書體의 명칭名稱은 1단계 한글서체명칭통일 방안 모색의 시안 및 결론과 2단계 한글서체명칭통일방안에서 제시된 1안 및 2안,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韓國學中央研究院에서 세종대왕의 한글 반포 570돌이 되는 해를 기념하여 개최한 2016 장서각藏書閣 특별전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의 도록에서 제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1-1. 한글서체표韓契書體表, 도판 1-2. 한글서체도韓契書體圖).

- ① 정음체正音體 :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서체인 훈민정음 해례본체訓民正音解例本體를 정음체라 한다.
- ② 정자체正字體 : 훈민정음 언해본체를 정자체라 한다. 정자체에는 민체民體정자正字와 관공체官公體 및 궁체宮體정자正字가 있다.
- ③ 흘림체 : 흘림체에는 민체흘림과 궁체흘림이 있다.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32, 33쪽

민체民體는 궁체宮體에 대립對立시켜 만든 용어다. 백성이 정제되지 않은 자유로운 글씨를 썼다는 의미이다. 민체로 보이는 최초의 자료는 16세기의 언간諺簡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당수의 필자本筆寫本들이 이 민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홍윤표, 『한글 서예와 한글 서체』, 태학사, 파주, 2023년, 95~96쪽

이 책에서는 여러 학자(박병천 등)와 논의論議 후, 민중民衆 각자各自의 개성個性이 나타나는 서체書體를 민체民體라 정의定義하였다.

조선 시대에 궁녀들이 쓰던 한글 서체인 궁체宮體란 단어는 원래 서체書體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래는 문체文體의 한 종류로서 ‘궁체’는 이미 중국中國에서 널리 알려졌던 것이다. ‘궁체’란 한문漢文의 문체文體로부터 시작하여 서체書體로 발전하여 우리나라에 수입 되었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한글 서체의 명칭이 된 동기로 보인다. ‘궁체’ 필사가 대량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1750년대 이후로 보인다.

홍윤표, 『한글 서예와 한글 서체』, 태학사, 파주, 2023년, 189~194쪽

이 책에서는 여러 학자(한재영, 박병천 등)와 논의論議 후, 필획筆劃의 연결이 있는 흘려 쓴 서체書體를 흘림체라 정의定義하였다.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는 관공체官公體에 기반을 두고 탄생한 재해석再解釋 디지털 폰트이다.

그동안 한글 서예는 근엄謹嚴한 정음체正音體(고체古體, 판본체版本體)와 미려美麗한 궁체宮體, 그리고 민중民衆 각자各自의 개성個性이 나타나는 민체民體를 중심으로 많은 발전發展을 하였다.

이제는 관공체官公體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를 애용愛用하고 발전시킬 때가 되었다. 특히 정부의 훈포장勳章이나 공직자公職者의 인사발령장人事發令狀 등 격조格調 높고 단정端正한 서체書體를 필요로 하는 각종 공식公式 문서文書 등의 사자寫字 시時에는 관공체官公體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를 적극積極 활용活用하여야겠다.

이 책에서 언급하는 ‘한글서체韓契書體’는 한글 서예계에서 사용하는 내용과 한글폰트나 한글 디자인계에서 사용하는 ‘글꼴’의 개념이 다 포함되어있다.

홍윤표, 『한글 서예와 한글 서체』, 태학사, 파주, 2023년, 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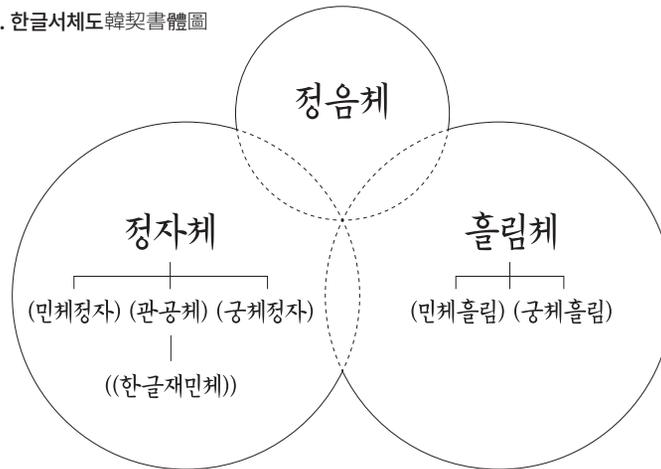
표 1-1. 한글서체표韓契書體表

2006년 11월10일	서체명칭통일추진위원회 1회 공청회	시안	정음해례본체	정음언해체	궁체	민체	-
		결론	고체	정자체	흘림체	-	-
2007년 4월28일	서체명칭통일추진위원회 2회 공청회	시안 1안	해례본체	언해본체	궁체	-	-
		시안 2안	곧은체	바름체	흘림체	진흘림체	-
2016년 6월28일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글서체표	-	정자체	흘림체	-	목판본 금속활자
2023년 5월5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한글서체표	정음체*	정자체 (민체정자) (관공체) (한글재민체) (궁체정자)	흘림체 (민체흘림) (궁체흘림)	-	-

정음체* : 훈민정음 해례본체
() : 중분류
(()) : 소분류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32쪽

도판 1-2. 한글서체도韓契書體圖



정음체 : 훈민정음 해례본체
() : 중분류
(()) : 소분류

『한글재민체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2023.5.5.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33쪽

4. 『한글서체 한글서에 관공체 한글재민체 韓契書體 韓契書藝 官公體 韓契在民體』의 내용

이 책에서는

- 1장. 관공체官公體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를 소개하고 한글서체韓契書體의 명칭名稱으로 정음체正音體, 정자체正字體, 흘림체, 민체民體, 궁체宮體에 대하여 민체와 흘림체를 정의定義한다.
 - 2장. 관공체官公體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등 한글서체를 이해하기 위하여 한글 연구자인 정광鄭光의 『한글의 발명』에 기술된 내용을 인용하고, 한글 명칭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국어학자 홍윤표의 『한글』에 기술된 내용을 인용한다. 그리고 한국어학자 이운재李允宰가 발표한 한글 발달發達의 시대時代 구분區分을 소개한다.
 - 3장. 국문시대國文時代(1894~1910년)를 연 국문國文의 새로운 용도用途 규정規定을 알아본다.
 - 4장. 국서國書, 주본奏本, 주의奏議, 의주議奏, 칙령勅令, 내부내거문內部來去文, 관급증서官給證書,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에 사용된 관공체官公體를 정리한다.
 - 5장. 관공체官公體가 사용된 국문시대國文時代와 같은 시기인 한국 개화기開化期の 국어 교과서를 인용하고, 주시경周時經의 『국어문법國語文法』 육필본肉筆本에서 개발된 주시경체周時經體를 소개한다.
 - 6장. 『국문연구의정안國文研究議定案』 보고서報告書와 함께 주시경周時經이 집필한 『국문연구國文研究』를 소개한다.
 - 7장. 한글시대에 발간된 한글 교과서를 소개하고 책에 사용된 한글서체를 인용한다.
 - 8장. 한글시대의 붓글씨 필체를 엿볼 수 있는 보통학교普通學校 습자첩習字帖과 쓰기방법견본집書法見本集을 인용한다.
 - 9장. 『고종실록高宗實錄』의 한글서체를 인용한다.
 - 10장. 건국建國 초기初期인 1945년 조선어학회에서 군정청을 통하여 발간한 『한글 첫 걸음』과 1949년 라우박이 미국 공보원을 통하여 발간한 『한글 첫 걸음-성인 교육 교재』의 한글서체를 소개한다.
 - 11장. 김충현金忠顯의 우리글씨 쓰는 법에 관한 글과 함께 1945년 이후 2023년까지 출판된 한글 글씨본과 서예 책을 조사하고,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열 명의 한글 서체본을 인용한다. 한글 글꼴의 원형을 만든 1세대 글꼴 디자이너 최정호崔正浩를 소개한다.
 - 12장. 「대한의원개원칙서」 관공체官公體의 재해석再解釋 폰트인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개발의 기본원칙을 소개한다.
 - 13장.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를 필사하고자 할 때 유의留意할 한글재민체 결구법結構法을 소개한다.
- 부록附錄에서 도판圖版과 표表의 목록目錄, 참고參考 문헌文獻, 기증받은 참고 문헌, 관공체官公體 날자, 한글재민체 모본模本 그리고 한글재민체 작품作品을 소개한다.

제2장 한글의 발명發明과 한글 변천變遷의 시대時代 구분區分

1. 한글의 발명

그동안 한글 또는 훈민정음 연구자들과는 매우 다른 주장을 하며 한글 연구의 차원을 바꾼 심도 깊은 역작力作 정광鄭光의 『한글의 발명』에 실린 내용을 인용引用한다.

한글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세종世宗의 생존 시에 이 문자는 여러 단계에 걸쳐 조금씩 문자사용의 범위를 넓혀간 것으로 보았다. 적어도 십여 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 문자는 실험을 거듭하여 세상에 나온 것으로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이 문자는 고대 인도의 음성학音聲學 이론理論에 근거하여 만든 글자임을 밝혀내었다. 불가佛家에서는 비가라론毘伽羅論 또는 성명기론聲明記論, 성명학聲明學이라고 부르는 고대 인도의 발달된 음성학音聲學이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을 통하여 이 땅에 소개되었고 당시 학생學僧들은 이에 대하여 깊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한글 발명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불경인 『월인석보』에 훈민정음의 『언해본』을 권두卷頭에 붙여 간행함으로써 신문자新文字 제정에 대한 명명나라의 감시監視를 벗어나려고 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 하나는 이 문자가 동아시아 여러 민족의 표음문자表音文字 제정制定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 본 것이다. 중국 한자문화권漢字文化圈의 주변에 있는 교착交着적 문법구조의 언어들인 한자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는지, 또 그들이 어떤 표음문자表音文字들을 제정制定하였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이러한 동아시아 여러 민족의 문자 연구의 전통이 한글 제정制定에 이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한글보다 불과 170여 년 전에 제정된 파스파 문자가 한글 발명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글 발명의 동기는 한자의 정음正音과 수정음修訂

음, 그리고 속음俗音과 동음東音의 표기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수정음이란 동국정운식으로 개정한 한자음을 말한다. 처음에는 앞에 말한 한자음을 표음하는 발음기호로서 제정되었다가 이 문자로 변음토착變音吐着的 난제難題를 해결하는 것을 보고 우리말의 표기로 확대되어 갔다고 주장하였다. 변음토착의 난제란 한문으로는 적을 수 없는 우리말의 어미語尾와 조사助詞를 구결口訣 토吐로 적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한자의 발음과 새김을 빌려 표기했던 형태부들을 표음문자인 새 문자로 적을 수 있는 것을 보고 우리말의 전면적인 표기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정음正音이나 훈민정음訓民正音 이라는 발음기호로부터 말을 표기하는 문자로 발전한 것이며 이때에 비로소 언문諺文, 언서諺書라는 문자 명칭을 얻게 된다.

정광, 『한글의 발명』, 김영사, 파주, 2022년, 42~44쪽

1-1. 고대古代 인도印度 음성학音聲學과의 연관성

고대 인도에서는 음성학이 매우 발달하였다. 오늘날에는 기원전 5세기 경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파니니Panini의 『팔장八章, Aṣṭādhyāyī』의 일부만이 남아 있을 뿐 아직도 전모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팔장』만으로 당시의 음성학이 얼마나 발달하였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다.

파니니는 리그 베다Rig Veda의 산스크리트어, 즉 범어梵語에 나타나는 제 현상을 규칙화하고 이를 공식으로 작성하여 『팔장』이란 범어의 문법서를 완성하였다. 그는 범어에 나타나는 문법규칙들을 모두 3,996개의 수다라修多羅sūtra로 축약하여 언어 공식

으로 제시하였다. 이 책은 세계 삼대三大 문법서의 하나로 고대 희랍의 알렉산더 시대에 드락스D.Thrax의 『희랍문법 Téchnē Grammatikē』, 로마시대에 프리스키아누스Priscianus의 『라틴 문법 Institutiones grammaticae』과 더불어 산스크리트 베다 시대의 『범어문법八章, Aṣṭādhyāyī』으로 알려졌다. 인류 고전古典의 삼대三大 문법서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이다.

파니니의 문법서에는 음성학에 관한 것이 들어 있다. 그는 음성의 조음기관調音器官을 입안의 내강內腔intra buccal과 외강外腔extra buccal으로 나누고 외강은 성문聲門glottis, 폐lungs, 비강鼻腔nasal cavity으로 나누었으며 이 세 기관으로부터 유성과 무성, 유기와 무기, 비음鼻音과 비비음非鼻音을 구별하였다. 또 내강에서의 조음기관은 前前, 後後와 혀끝, 협착의 4등급으로 구별하였다. 오늘날의 조음음성학과 대동소이하다.

고대 인도의 음성학은 불경에 포함되어 전해진다. 불가佛家에서는 원래 오명五명의 하나인 성명聲明 즉 십타필태攝拖瑟馱śahdavidya란 음성으로 의미를 전달하고 깨닫게 되는 인간 능력의 하나라고 말한다. 이에 대한 연구를 비가라론毘伽羅論 vyākaraṇa이라고 하고 번역하여 성명학聲明學, 또는 성명기론聲明記論이라고 한다. 파니니의 『팔장』을 비롯한 비가라론은 팔만대장경 속에 포함되어 고려에 들어왔고 여말麗末 선초鮮初에 많은 학승學僧들이 이를 배워 알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당대唐代에 성명학이 들어와 본래의 성운학聲韻學과 결부되어 운도韻圖를 발달시켰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당唐의 수온守溫이란 승려에 의하여 중국의 한자음을 한 음절로 규정하고 이를 성聲과 운韻으로 나누어 당대唐代 한자음의 자모字母, 즉 성聲을 36개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아설순치후牙舌脣齒喉의 조음위치와 전청全淸, 차청次淸, 전탁全濁, 불청불탁不淸不濁의 조음방식으로 나누어 배열하였다.* 운韻은 206운으로 나누었다.

* 고대 인도의 음성학에 입각하여 문자를 제정하는 경우 이와 같은 발음 위치의 순서대로 문자를 제정한다. 즉 650년경 토번吐蕃의 송찬감보 대왕 때에 만든 서장西藏 문자도 첫 글자가 아음牙音인 /k, kh, g, ng/ 의 순서로 되었다

한글에서도 아설순치후의 조음위치에 따라 아음牙音 /ㄱ/을 첫 자로 하고 훈민정음에서는 /ㄱ[k], ㅋ[kh], ㆁ[ŋ], ㅇ[ŋg]/의 순서로 제자制字하였다. 한글 발명이 고대 인도 음성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한글 발명에 승려들이 많이 참가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 한글의 공표가 『월인석보』라는 불서佛書의 간행에서 이루어진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정광, 『한글의 발명』, 김영사, 파주, 2022년, 48~50쪽

세종의 새 문자 제정에서 四聲과 七音, 그리고 字母의 수요는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였으며 가장 고민한 부분이다. 변별적 자질의 조음위치와 조음방식의 자질로 음운을 구별하여 분류한 것은 서양에서 20세기 후반의 生成音韻論에서 처음으로 논의되었다.

정광, 『최만리의 언문 반대 상소와 세종의 批答 -"四聲, 七音, 字母有幾乎?"를 중심으로』, 『譯學과 譯學書』, 2023;10~12:5~44.

한글은 고도로 발달한 음성학의 이론으로 제정된 사상史上 유례 없는 과학적인 문자다. 덮어놓고 독창적이고 과학적이고 유례가 없는 것이 아니며 매우 발전된 조음음성학 이론의 뒷받침을 받아 제정된 문자이기 때문이다.

정광, 『심약선생의 <혁신국어학사>로 본 한글 창제 -고대인도 음성학의 영향을 중심으로』, 『인문언어』, 2023;25:143~185.

1-2. 동아시아 민족의 문자 제정과 그 영향

한글은 동아시아 여러 민족의 문자 제정과 일맥상통한다. 기원후 650년경에 토번의 송찬감보 대왕 때에 툰미 아누이브Thon-mi Anu'ibu가 인도에 유학하여 음성학을 배우고 돌아와서 티베트어를 표기할 수 있는 서장西藏 문자를 제정하였다. 이 문자는 비교적

과학적으로 제정된 표음문자여서 티베트 문화권만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언어를 표기하는 데 매우 편리하여 여러 언어가 이를 빌려 자국의 언어를 표기하였다. 티베트에서는 지금도 이 문자를 사용한다.

이 서장문자 제정의 성공으로 중국의 북방 민족 사이에서는 새 국가가 건설되면 먼저 새 문자를 제정하는 전통이 생겨났다. 10세기 초엽에 거란의 요遼나라를 세운 태조太祖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는 나라를 세운 지 14년째인 신책神冊 5년(920)에 돌려불突呂不 등에게 거란契丹 대자大字를 만들게 하였다. 그리고 몇 년 후에 태조太祖의 동생인 질랄迭剌이 거란 소자小字를 만들었는데 이는 위구르 문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표음문자로 알려졌다.

거란의 요遼가 망하고 여진의 금금이 건국되자 역시 태조太祖 아구타阿骨打가 12세기 초에 여진문자를 만든다. 즉, 『금사金史』(권73) '완안희윤完顏希尹'조를 보면 천보天輔 3년(1119)에 여진자를 만들어 태조太祖가 이를 반포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이것이 여진女眞 대자大字이다. 역시 『금사金史』(권4)에 제3대 희종熙宗의 천권天眷 원년(元年, 1138)에 여진 소자小字가 제정되어 반포되었다는 기사가 있다.

금금을 멸망시키고 이 지역을 차지한 몽골의 칭기즈 칸은 위구르 문자를 빌려다가 몽골어를 적게 하였다. 칭기즈 칸이 나이만乃灣을 정복하고 태양칸의 신하인 타타통아塔塔統阿를 포로로 잡아 그로 하여금 몽고어를 적게 하였더니 그는 위구르 문자로 몽고어를 표기하였다고 한다. 칸이 아들들에게 이 문자를 교육하게 하고 제국帝國의 문자로 인정하였다. 오늘날에도 몽고에서는 이 문자를 사용한다.

이 문자는 1220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칭기즈 칸의 돌 Chinggis Khan stone에 새겨졌으므로 적어도 그 이전에 몽고어를 표기하도록 차용되었을 것이다. 남송南宋을 멸망시키고 중국의 전역을 정복하여 원나라를 건국한 쿠빌라이 칸, 즉 원원 세조世祖는 즉위 초에 파스파 문자를 제정하고 지원至元[1264년 8월 ~ 1294년]은 몽골 제국 세조世祖 쿠빌라이 세첸 칸의 두번째 연호] 6년, 1269년에 반포하여 제국帝國의 공용共用 국가國字로 삼았다.

한글 발명 이전에는 이와 같이 북방민족들 사이에 나라를 건국하면 새 문자를 제정하는 전통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새로 만든 문자로 관리의 임용시험을 보게 하여 이 문자를 보급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에게 이 문자를 가르치고 이들을 시험으로 뽑아 관리로 임명하여 통치계급의 물갈이를 기소하였던 것이다. 한글도 이를 공표하고 2개월 후에 이과吏科와 취재取才에 출제하여 인재를 선발함으로써 북방 민족의 전통을 이어받아 고려의 잔재를 척결하는 데 한글을 이용하였음이 실록의 여러 기사에서 확인된다.

정광, 『한글의 발명』, 김영사, 파주, 2022년, 50~52쪽

1-3. 발명의 동기動機

정광鄭光이 오래전부터 주장한 것은 한글이 처음에는 발음기호로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정음正音이니 훈민정음訓民正音이니 하는 명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자의 한어음漢語音을 표기하거나 우리 한자음을 수정하여 이를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필요한 발음기호로 창제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문을 어려서부터 배워온 당시의 유신儒士들에게 한어漢語는 바로 발음의 학습에서 시작된다. 한자는 표의문자이기 때문에 이 문자만으로는 발음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당연히 한자의 발음 학습에서 발음기호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원대元代 몽고인들은 중국을 다스리기 위하여 한어漢語를 학습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때의 한어 학습에서 발음기호의 역할을 한 것이 파스파 문자였고 이 문자도 처음에는 그런 필요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한글도 그런 역할을 기대하면서 만들어졌다. 즉, 처음에는 당연히 올바른 한자의 한어음, 즉 당시 중국의 표준음인 정음正音を 표음하는 기호로 만들어진 것이다. 훈민정음의 『언해본』에 한음漢音 표기를 위한 것이라면서 43개의 문자를 제정한 것도 한글이 발음 표기를 위한 것임을 말한다.

그러나 중국의 정음正音이 우리 한자음과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같은 한자이지만 서로 통하지 않는 것을 괴롭게 여긴 세종대왕은 이를 고치려고 한 것 같다.* 그것이 동국정운東國正韻식 한자음이라는 훈민정음이다.

고려 전기의 중국 북송北宋과는 한자의 발음이 유사하여 한문으로 서로 통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원元の 건국으로 연경燕京, 즉 지금의 북경北京이 수도가 되면서 그곳 언어가 공용어가 되었다. 이 언어는 일찍이 중종中宗 때에 최세진崔世珍이 한어언어漢兒言語라고 불렀던 원대元代的 북경 토박이말로서 북송이나 당대唐代的 통어通語와는 전혀 다른 언어였다. 따라서 같은 한자라도 발음이 달라서 한문으로 서로 통할 수가 없었다.

여기서 세종은 중국의 한어음漢語음을 고칠 수는 없으니 우리 한자음을 고치려고 한 것이다. 소위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라는 새로운 발음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조금이라도 한어음과 소통할 수 있자 노력한 것이다. 최만리의 반대 상소문에도 이 부분이 들어 있지만 제왕의 권력으로도 언어의 변화를 고칠 수는 없다. 따라서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처음부터 실패를 예견한 것이었다.

훈민정음訓民正音은 ‘세종어제훈민정음世宗御製訓民正音’의 첫 구절 협주에서 “訓民正音은 百姓 7르치시는 正音 소리라”로 풀이한 것처럼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올바른 한자음, 즉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한 문자이다. 마치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문자로 생각하는 연구자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싶은 것은 소리 음훈은 문자를 의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올바른 한자음을 적는 데 쓰는 문자라고 편의적으로 부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다가 연창延昌공주, 즉 정의공주가 ‘변음토착變音吐着’을 해결하면서 우리말 표기에 이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세종은 우리말 표기에 이 문자가 적합한가를 시험하기 위하여 수양대군 등에게 『석보상절』을 짓게 하고 스스로도 『월인천강지곡』을 지으면서 이를 확인한 다음 이 두 책을 합편하여 『월인석보』를 간행한다. 이것이 세종의 생존 시에 간행된 『월인석보』의 구권舊券

이며 이 책의 권두에 『훈민정음』이란 언해본을 붙여 한글을 공포한 것이다.

한자는 원래 고립어인 중국어를 표기하기 위하여 시작된 문자이며 이 언어는 의미부 중심의 어휘가 어순에 의하여 문법적 기능을 갖고 배열되는 언어이다. 반면에 중국 주변에 산재한 소수민족들의 언어는 어순보다는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다른 형태가 나타내는 교착적 문법 구조의 언어들이었다. 우리말도 같은 문법 구조여서 의미부와 더불어 어미와 조사가 매우 중요한 언어이다. 따라서 중국어를 한자로 쓴 한문을 읽을 때 우리는 조사와 어미를 첨가하여 읽게 되었다. 소위 구결口訣(입겂) 또는 토투, 이를 합하여 구결토口訣따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고립적인 중국어의 한문에서는 어순이나 문맥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교착적인 우리말로 읽을 때 어쩔 수 없이 삽입할 수밖에 없는 문법 형태였다.

예를 훈민정음의 세종의 어제서문에서 찾으면 『해례본』이나 『실록본』의 “국지어음國之語音, 이호중국異乎中國, 여문자불상유통與文字不相流通”보다는 『언해본』의 “국지어음國之語音의, 이호중국異乎中國^{호야}, 여문자與文字로 불상유통不相流通^{호씨}”(밀줄 鄭光)로 읽는 것이 보다 의미를 쉽게 이해하게 한다. 여기서 밀줄 친 ‘-이, -호야, -로, -호씨’들은 모두 우리말의 어미와 조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문에서는 어순이 그 역할을 한다.

한글 이전에는 이 구결口訣, 즉 입겂도 모두 한자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토를 달 때는 한자의 발음을 빌려 우리말의 어미와 조사를 기록하는 방법과 그 새김을 빌려 표기하는 방법을 썼다. 예를 들면 ‘-호고’를 ‘爲古’로 쓰거나 ‘-이라’를 ‘-是羅’라고 쓰는 경우를 말한다. ‘-古, -羅’는 발음을 빌렸으나 ‘爲, 是’는 뜻을 빌려서 소위 음독자音讀字와 석독자釋讀字가 섞여 있게 된 것이다.

후자의 ‘爲, 是’는 석독자이고 전자의 ‘-古, -羅’는 음독자로 토를 단 것이다. 여기서 ‘爲, 是’와 같이 석독자로 토를 다는 것을 변음토착變音吐着이라 하는데 이 말은 “발음을 바꿔서 토를 달다”라

* 훈민정음의 어제서문 첫 구절에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은 바로 이것을 말한다.

는 이두문吏讀文이다. ‘위爲, 시은’을 ‘ㅎ, 이’로 바꿔서 토를 달았다는 뜻이다.

변음토착은 한자를 상용하는 유신儒臣들에게 매우 거추장스럽고 우스운 표기 방법이었다. 세종은 이를 해결하라고 동궁東宮들과 대군大君들에게 지시하였으나 그들이 누님에게 부탁하여 정의공주가 이를 해결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부왕父王으로부터 상賞으로 노비와 전답을 받았다는 기록이 『죽산안씨대동보竹山安氏大同譜』에 전해진다.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제 서문을 “國之語音이, 異乎中國호야, 여문자與文字로 不相流通호씨”와 같이 석독, 음독의 한자가 아니라 한글로 토를 단 것이다.

정광은 단순한 변음토착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결토로 자주 쓰여서 서민들에게 친숙한 한자들로 새 문자를 설명한 언문자모諺文字母가 바로 공주公主의 고안考案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기역其役, 니은尼隱’과 같이 이두吏讀에서 친숙하게 쓰던 한자들로 새 문자의 음가를 설명한 것이다. 이것은 『훈민정음』의 “ㄱ 君字初發聲 - ㄱ은 군君자의 첫소리와 같다, ㅋ 虬字初發聲 - ㅋ은 규虬자 첫소리와 같다”라는 설명보다 훨씬 알기 쉽다.

언문자모는 한글을 보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오늘날의 한글 자모 순서가 ‘기역, 니은, 디귤,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과 같이 된 것은 언문자모의 순서에 따른 것이다. 한글의 일반화에 언문자모가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잘 말해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이것이 없었더라면 한글도 다른 북방 민족의 여러 표음문자처럼 일시적으로 사용하다가 버려진 문자가 되었을 지도 모른다.

정광, 『한글의 발명』, 김영사, 파주, 2022년, 52~56쪽

1-4. 한글 발명의 독창성獨創性

한글은 어디까지 독창적으로 발명되었을까?

『실록』등의 사서史書에는 한글의 발명에 대하여 항상 ‘창제創製’, ‘친제親制’, ‘창물운지경출천고創物運智隻出千古’, ‘무소조술無所祖述’ 등의 수식어가 붙는다. 모두가 새롭고 독창적으로 만들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파스파 문자 등의 영향을 받았고 그 이론적 근거도 불가의 성명학聲明學이나 성리학性理學, 역학易學 등에서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한글이 새롭고 독창적인 것임을 강조하였을까?

이것은 새 문자의 제정을 탐탁하지 않게 본 명명을 의식한 때문으로 본다. 혹시라도 원元の 문명文明을 이어가거나 모방模倣하려는 태도가 명명으로서의 몽고의 원元을 숭앙崇仰하고 한쪽의 명명을 배척排斥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명명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새로 제정한 문자를 창제創製, 친제親制, 무소조술無所祖述 이라 하여 파스파 문자와 관계가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본다.

또 실제로 한글의 글자 자형字形은 독창적이다. 기일성문도起一成文圖에 같은 글자 모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발음기관發音器官과 발성모양發聲模樣으로 설명한 것은 지금까지 누구도 시도試圖한 일이 없는 일이다. 더구나 한글의 자형字形도 파스파 문자, 티베트 문자로부터 왔다는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파스파 문자는 서장西藏 문자, 즉 티베트 문자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 두 문자는 자형도 유사하고 정서법正書法도 유사하다. 그러나 한글은 그 글자의 모습이나 종서縱書와 횡서橫書가 자유로워 오로지 횡서만 할 수 있는 티베트 문자는 물론 종서 위주로 제자制字한 파스파 문자보다 월등하게 우수하다.

한글의 일부 글자가 파스파 문자와 같은 것은 우연의 일치이며 한글의 제자원리制字原理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이 두 문자를 비교해야 할 것이다. 모음자의 유사성은 지금까지 누구도 그 독창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없으므로 초성, 즉 자음자의 유사

표 2-1. 한글과 파스파 문자의 자형字形* 비교比較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반설음	반치음
			순중음	순경음	치두음	정치음			
전청	ㄱ見 <small>기</small>	ㄷ端 <small>즈</small>	비幫 <small>리</small>	빙非 <small>즈</small>	ㅈ精 <small>외</small>	ㅊ照 <small>트</small>	ㅇ影 <small>기</small>	-	-
차청	ㅋ溪 <small>피</small>	ㅌ透 <small>지</small>	ㅍ滂 <small>리</small>	푹敷 <small>즈</small>	ㅊ淸 <small>외</small>	ㅊ穿 <small>피</small>	ㅎ曉 <small>즈</small>	-	-
전탁	ㄱ群 <small>기</small>	ㄷ定 <small>피</small>	비並 <small>리</small>	빙奉 <small>즈</small>	ㅈ從 <small>외</small>	ㅊ床 <small>기</small>	ㅎ匣 <small>피</small>	-	-
불청 불탁	ㅇ疑 <small>리</small>	ㄴ泥 <small>외</small> ㄴ娘 <small>피</small>	ㅁ明 <small>리</small>	ㅁ微 <small>피</small>	-	-	ㅇ喻 <small>외</small> ㅇ幺 <small>피</small>	ㄹ來 <small>피</small>	ㄷ日 <small>피</small>
전청	-	-	-	-	ㅅ心 <small>지</small>	ㅅ審 <small>외</small>	-	-	-
전탁	-	-	-	-	ㅈ邪 <small>크</small>	ㅈ禪 <small>외</small>	-	-	-

*파스파 문자의 자형字形은 「함초롱바탕」을 사용함

성을 다음 도표로 비교해보자.

표 2-1은 『훈민정음 언해본』에서 제시한 정음 32자모와 『몽고자운』의 런던 초본鈔本の 권두卷頭に 소재한 ‘자모字母’의 파스파 문자 33개를 비교한 것이다.

이 비교로부터 한글과 파스파자 사이에 “ㄷ端즈, ㄱ見기, ㄹ來피” 등에서 유사성이 보이지만 나머지는 전혀 다르다. 특히 한글은 이 글자들이 모두 발음기관이나 발성모습을 본뜬 것이어서 설사 유사하더라도 그 제자원리制字原理는 서로 다르다. 훈민정음의 『해례본』 ‘제자해制字解’에서 이러한 사실을 명기明記하였다.

반면에 파스파 문자는 티베트 문자의 영향을 받아 많은 글자들이 서로 유사하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이 문자의 제정자인 세종의 생전에 간행된 것이며 제정자 자신이 이러한 제자 원리를 밝힌 것이다. 따라서 한글의 글자를 다른 문자로부터 가져왔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고 한글의 독창성은 그 자형의 독특함에 있다고 하겠다.

정광, 『한글의 발명』, 김영사, 파주, 2022년, 476~479쪽

2. 한글 명칭의 변화

오늘날 우리가 ‘한글’이라고 하는 명칭은 ‘훈민정음’에서 곧바로 ‘한글’로 변화한 것이 아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한글’로 정착된 것이다. 창제 당시의 이름은 ‘훈민정음’이었다. 그렇다면 이 문자의 이름은 어떠한 변천 과정을 겪었을까?

① 훈민정음訓民正音과 정음正音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우리 문자를 전체적으로 지칭한 표현은 ‘훈민정음訓民正音’과 ‘정음正音’이었다.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諺文 28자字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篆字를 모방하고, 초성初聲·중성中聲·종성終聲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文字에 관한 것과 어어俚語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마는 전환轉換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고 일렀다.

이 기록에는 임금이 친히 ‘언문’을 지었으니 이를 ‘훈민정음’이라고 하였고 하였다. 이것으로서 우리 문자의 고유한 이름이 ‘훈민정음’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언문’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중국의 한자에 대해서 그 이외의 문자를 지칭하는 보통명사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훈민정음은 언문에 속하지만, 언문이 곧 훈민정음은 아닌 것이다.

② 언문諺文

‘언문’이란 원래 ‘한글’에만 쓰이었던 것이 아니다. ‘언문’은 중국 문자에 대해 주변 국가의 문자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③ 언자諺字

‘언자’는 ‘언문자諺文字’의 약자일 것이다. 가끔 사용되었던 명칭이지만 일반화되지는 않았다.

④ 반절反切

반절이란 원래 한자의 음을 표시하던 방법 중 하나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예컨대 한자‘東’의 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德紅反切(주로 ‘德紅反’로 표시하였다) 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德’에서 성모聲母인 [t]를 취하고 ‘紅’에서 운모韻母인 [u ŋ]을 취하여 ‘東’의 음을 [tu ŋ]으로 표시하는 방식이었다. 훈민정음이 초성과 중성과 종성을 합쳐서 한 음절을 구성하는 방식을 마치 성모와 운모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여 훈민정음을 반절이라고도 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반절도 한글에만 썼던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⑤ 국문國文

19세기 말엽末葉에 와서야 우리의 고유문자固有文字가 국가國家 문자로 인정認定받게 되고, 그 명칭이 국문國文으로 변화하게 된다.

⑥ 조선문朝鮮文, 선문鮮文

1910년 일본의 강제병합 이후 ‘조선문朝鮮文’ 혹은 ‘선문鮮文’으로 추락하고 국문國文의 자리를 일본 문자에 내주게 되었다. 일본어를 ‘국어’라 하고 우리말을 ‘조선어朝鮮語’로 하여 조선어를 외국어처럼 인식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⑦ 한글

‘한글’이란 명칭은 주시경周時經 선생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글’이란 용어가 처음 나타나는 자료는 1913년 3월 23일에 창립한 배달말글문음(조선언문회) 창립총회의 전말을 기록한 『한글모 죽보기』이다.

‘한글’은 『아이들보이』, 1913년 9월의 ‘한글풀이’란에 처음 실용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윤표, 『한글』, 세창출판사, 서울, 2016년, 63~68쪽

3. 한글운동과 한글의 변천變遷

한글학자 이윤재李允宰*는 1932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4회에 걸쳐 『동아일보東亞日報』의 지면紙面을 통해 한글의 변천變遷을 네 개의 시대로 구분하였다.

대성大聖 세종世宗께서 조선朝鮮의 문자훈민정음文字訓民正音을 발표發布하신지 이에 사백팔십육기四百八十六書를 당하였도다. 이에 광휘光輝잇는 업적業績이 조선朝鮮 문화사상文化史上에 영원永遠히 남아있어 우리가 두고두고 이것을 기념記念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 찌르지 아니한 반천년半千年의 역사歷史를 가진 이 한글의 소장성쇠消長盛衰의 지년간 자취를 회고回顧하며 미상불 감개感慨를 금禁치 못하겠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에 이것을 한번 생각하는 것이 결코 무의미無意味한 일이 아님을 안다. 내가 이제 우리 글의 발생發生으로부터 여러번 변천變遷을 지나 오늘까지에 이르는 기간期間을 아래와 같이

- 一, 정음시대正音時代(창정기創定期), 세종世宗 28년부터 성종成宗 대代까지 50년간(1446~1494년)
 - 二, 언문시대諺文時代(침체기沈滯期), 연산군燕山君 대代부터 고종高宗 30년까지 약 400년간(1495~1893년)
 - 三, 국문시대國文時代(부흥기復興期), 고종高宗 31년 갑오개혁甲午改革 때부터 경술년庚戌年까지 17년간(1894~1910년)
 - 四, 한글시대韓契時代(정리기整理期), 주시경周時經의 한글운동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1911~1932년)
- 등등 사기四期로 나누어 그 개요概要를 간단히 말하고자 한다.

이윤재, 『한글운동運動의 회고回顧【一】』, 『동아일보』, 1932. 10. 29.

* 환산桓山 이윤재李允宰(1888~1943) : 일제시기의 대표적인 한글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이다. 그는 1992년 문화관광부 주관 10월의 문화인물로, 1998년에는 국가보훈처 주관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어 업적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에 그는 국어학자인 주시경의 주장을 계승하여 우리말과 한글을 연구하고 보급한 최현배·이극로·신명균·이희승·장지영 등과 함께 조선어연구회, 조선어학회에 참여하여 언어독립운동인 한글 운동을 전개하였다. 조선어학회의 한글운동은 일제의 언어동화정책에 대한 반역이었기에, 일제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조선어학회 사건이 그것이다. 이때 조선어학회의 증인이었던 이윤재도 일제의 치안 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는데 함흥감옥에서 복역하다가 일제의 고문 후유증으로 1943년 옥사하였다. 일생을 민족혼의 보급을 위해 활동하다가 침략자들에게 희생되었던 것이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 역사의 연구와 보급을 통해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활동도 하였다. 박용규, 『우리말·우리역사 보급의 거목 이윤재』, 역사공간, 서울, 2023년, 4쪽

3-1. 정음시대正音時代(창정기創定期)

세종世宗 28년부터 성종成宗 대代까지 50년간(1446~1494년)

조선글이 처음으로 할정割定되어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일컬어 시행한 세종世宗 이십팔년二十八年으로 비롯하여 성종世宗成宗朝까지 이르는 오십년간五十年間(1446~1494)을 정음시대正音時代라 이른다. 곧 우리글이 창정創定된 시기時期다. 이것을 지은 경과經過에 대하여 넷적의 기록을 상고하면 세종世宗 이십오년二十五年 계해癸亥(1443)겨울에 임근께서 제국諸國은 각기 문자文字를 지어서 그나라의 방언方言을 적거늘 홀로 우리나라에 만 없다 하시고 드디어 자모字母 이십팔자二十八字를 만드사 이름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하시고 국局을 금중禁中에 여사 정인지鄭麟趾, 신숙주申叔舟, 성삼문成三問, 최항崔恒 등등을 시기어 자세히 해석解釋을 달라 하시었으며 삼년三年을 지나, 이십팔년二十八年 병인丙寅(1446) 구월이십구일九月二十九日(음력陰曆)에 이것을 중외中外에 반포頒布하시었다 한다. 세종世宗께서 정음正音을 창제創製하심에 얼마나한 노력努力과 용심用心이 있는 것은 여기에 장항히 말하지 않기로 하며, 다만 그 문자文字의 구조構造에 대하여 개괄적概括的으로 보면,

【초성初聲 및 종성終聲】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ㅂ ㅃ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ㅎ △ ㄷ ㄷ

【중성中聲】 ㆍ 一 | ㅊ ㅌ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ㅎ △ ㄷ ㄷ

【병서자並書字】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ㅎ △ ㄷ ㄷ

【순경음脣輕音】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ㅎ △ ㄷ ㄷ

【치두음齒頭音】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ㅎ △ ㄷ ㄷ } 한음용漢音用

【정치음正齒音】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ㅎ △ ㄷ ㄷ

【상거성上去聲】 좌左에 일점一點을 가加하면 거성去聲, 이점二點

이면 상성上聲, 이리케 되었다. 이것이 완성完成되매, 세종世宗께서 먼저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정인지鄭麟趾, 권제權躋, 안지安止 등등 撰), 동국정운東國正韻(최항崔恒 撰), 사성통고四聲通攷(신숙주申叔舟 撰) 찬술撰述하사 실용實用의 예례를 보이시고, 이전취재吏典取才(문관시험文官試驗)에 정음正音을 한 과목科目으로 넣으사 일반一般 공용문公用文에도 널리 쓰게 하시었다. 이로써 문학文學, 종교宗教, 윤리倫理, 정치政治에 관한 서적書籍이 많이 우리말로 쓰게 되어 조선문학朝鮮文學 독립獨立의 일기축一機軸을 지었다. 그리고 이 시기期에 정음正音으로 쓴 많은 저역著譯이 있었으니, 그중 重要한 것 몇만 들면,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세종이십구년世宗二十九年), 묘법연화경언해妙法蓮華經諺解(세조팔년世祖八年), 원각경언해圓覺經諺解(세조십년世祖十年), 금강경언해金剛經諺解(세조십년世祖十年), 능엄경언해楞嚴經諺解(세조조世祖朝), 두시언해杜詩諺解(성종십이년成宗十二年), 황산곡언해黃山谷諺解(성종십사년成宗十四年) 등은 다 명문名文 거편巨篇으로 오늘날 우리 조선어문朝鮮語文 연구研究에 막대莫大한 공헌貢獻이 되는 것이다.

이윤재, 『한글운동運動의 회고回顧【-】』, 『동아일보』, 1932. 10. 29.

3-2. 언문시대諺文時代(침체기沈滯期)

연산군燕山君 代부터 고종高宗 30년까지 약 400년간 (1495~1893년)

이때 조선朝鮮은 문화文化의 꽃이 한창 난만爛漫함과 함께 이러듯 국학國學이 벼적 늘어갔다. 그러나 사대주의事大主義를 밥벌이로 삼는 완명물각頑冥沒覺 한학배漢學輩는 저사抵死코 이를 꺾어버리려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글은 문자文字로 승인承認하지 아니하므로 그리 좋은 정음正音이란 이름까지 언문諺文이란 비속卑俗한 명칭名稱으로 바꾸어 버리었다. (한자漢字에는 진서眞書란 존호尊號를 올리었다) 이때를 언문시대諺文時代라 하야, 연산조燕山朝부터 고종高宗 삼십년三十年까지 사백년간四百年間

(1495~1893)을 이름이니, 이가 한글사상史上에 가장 장구長久한 기간期間으로, 몹슬 박해迫害와 갖은 능멸凌蔑을 받든 때였다. 연산군燕山君 같은 폭군暴君은 언문諺文 사용하는 자에게 제서폐기율制書廢棄律을 써서 사형死刑에 처處하야 이를 박멸撲滅코저 하였으니, 문자文字의 화액禍厄이 이에서 더 심함함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역경逆境에 들어있는 우리글은 다행이 멸절滅絕함에 이르지 아니하고 잔명殘命을 겨우 보전하였을 뿐이러니, 중종中宗朝에 이르러 최세진崔世珍의 손에서 한번 수정修正함을 받으니, 이것이 도리어 큰 병病의 뿌리를 깊이 박은 것이 되었다. 소위 수정修正이란 것은 그의 저著 훈몽자회訓蒙字會(1527)의 범례凡例 가운데 “언문자모諺文字母(속소위반절이십칠자俗所謂反切二十七字)”란 난하欄下에 이리케 적히었다.

초성중성동용팔자初聲終聲通用八字 기기역其役 니은尼隱 디지池(말末) 르리을梨乙 미음眉音 비비음非非 시시時(의衣) 이이異= 초성初聲에 씬, 응癡=중성終聲에 씬

초성독용팔자初聲獨用八字 기(기箕) 티치治 표피皮 지지之 치치齒 이이而 이이伊 히시중성독용팔자屎中聲獨用八字 아아 아야하 아어於 여여 오오 요요 우우 유유 —(응應) | (이伊) · (사思)이하以下 畧略.

이를 보면, 훈민정음訓民正音에 정定한 초성初聲 중성中聲의 배열排列을 바꾸어 놓았고 중성終聲(바침)에는 기니디르비시○의 팔자八字만 쓰고 지치티표히들은 바침으로 쓰는것을 철폐撤廢하였으니, 이것이 세종世宗께서 “초성부용중성初聲復用終聲”하라는 뜻에 크게 어그러질뿐 아니라, 오늘날 문법文法의 체계體系를 세움에 크게 마장魔障이 되는 것이다.

이러듯 우리글이 연산군燕山君에게 된서리를 맞고, 최세진崔世珍이란 용의庸醫에게 서툰은 수술手術을 받아, 글자로의 본질本質을 잃고 진가眞價를 떠러트리어 아무 규칙規則이 없고 통일統一이 없이 혼란무상混亂無狀하게 쓰는 글자가 되고 말은 것이다. 그나마 상하上下 전반全般이 다 쓰는것이 아니라, 일부一部 부녀婦女와 하류계급下流階級에 한限하야 약간 행용行用함에 그치었다. 그리고 좀 고급高級이래야 경서언해經書諺解와 한어漢語, 만

주어滿洲語, 몽고어蒙古語, 일본어日本語 등등의 역어譯語와 계몽啓蒙에 關關한 책들이 잇었을 뿐이다.

이렇게 우리글이 머리를 들수 없고 여지없이 눌러서 오랜 세월歲月을 지내어왔다. 이때에 조선朝鮮에는 미상물 흥유석학鴻儒碩學이 많지 아님이 아니언마는 모두 우리글엔 도외시度外視하였다. 이리구러 우리글은 침체沈滯에서 쇠퇴衰退로 尙向하여 갈뿐이었다. 그러나 여암旅菴 신경준申景濬의 『훈민정음도해訓民正音圖解』(영조英祖 이십륙年二十六年=1750)와 방편자方便子 유희柳僖의 『언문지諺文志』(순조純祖 이십사年二十四年=1824)와 추금秋琴 강위姜瑋의 『국문자모본해國文字母分解』(고종高宗 육년六年=1869)는 다 이 시대時代에 난 것으로, 이것이 한글연구研究의 보옥寶玉이며, 한글 부흥復興의 새 빛을 비치어줌이 되는 것이다. 이윤재, 『한글운동運動의 회고回顧(二)』, 『동아일보』, 1932. 10. 30.

3-3. 국문시대國文時代(부흥기復興期)

고종高宗 31년 갑오개혁甲午改革 때부터 경술년庚戌年까지 17년간(1894~1910년)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以後 조선사회朝鮮社會에는 세계世界의 신풍조新風潮가 물려들어와 국민國民의 사상思想을 일변一變케 되매, 국호國號를 대한大韓이라 고치고 모든 제도制度를 개혁改革하였다. 이로써 조선인朝鮮人은 오백년五百年의 미몽迷夢을 각성覺醒하여, 지나학支那學에 심취心醉한 자아물각自我沒覺의 정신精神을 벗어버리고 조선心朝鮮心의 발발勃發하는 일전기一轉機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우리글에 대한 자각自覺이 생기므로, 여태까지 불려오던 언문諺文이라는 비속鄙俗한 명칭名稱을 국문國文이라 고치어 시행施行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대時代를 국문시대國文時代라 하니, 이는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부터 경술庚戌까지 십칠년간十七年間(1894~1910)을 이룸이다.

이로부터 공문사서公文私書며 교과독본教科讀本이며 신문잡지新聞雜誌 등류等類가 모두 우리글을 교용交用하게 되어 전사회全社

會에 보편화普遍化하였으며, 이능화李能和 씨는 자전字典, 사전辭典의 편찬編纂에 관한 의견서意見書를 학부學部に 제출提出하여 문자文字의 사상思想을 고조高調하였으며 주시경周時經 씨는 국문학교國文學校를 새로 설립設立하여 敎育教育에 진력盡力하였다. 또 지석영池錫永 씨(당시當時 의학교교장醫學校校長)는 신정국문新訂國文을 편성編成하여 황제皇帝께 상소上疏하여 학부學부의 심의審議를 지나, 광무九年 七月 신정국문실시新訂國文實施件을 공포公布하니, 그 개요概要를 들면,

일, 신정국문오음상형변新訂國文五音象形辨 이는 우리글의 자모字母가 아牙, 설舌, 순唇, 치齒, 후喉등의 발음기관發音器官의 형상形象에 依依하였다는 것.

이, 신정국문초중삼변新訂國文初中終三聲辨 이는 초성初聲, 중성中聲, 종성終聲의 용법用法이 최세진崔世珍의 설說을 좇은 것.

삼, 신정국문합자변新訂國文合字辨 이는 초중중初中終 삼성三聲을 합용合用하는 예例를 든 것.

사, 신정국문고저변新訂國文高低辨 이는 상성上聲 거성去聲은 각기 우가일점右加一點으로 하는 것.

오, 신정국문첩음산정변新訂國文疊音刪正辨 이는 중성中聲·를 폐지廢止하는 것.

육, 신정국문중성이정변新訂國文重聲釐正辨 이는 중성中聲을 ㄱㅈㅊㅅㅌㅍ로 쓰는 것이 옳으나, 편의便宜를 좇아 ㄱㅈㅊㅅㅌㅍ로 쓰는 것.

이것이 우리글 철법綴法 정리整理의 일면一面으로 완성完善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 시기時期에 있어서 첫 번째 정리整理의 손을 내민 것이다. 이 『신정국문新訂國文』이 동기動機로, 광무십一年 七月에는 국문연구소國文研究所를 학부學部안에 설치設置하고, 위원장委員長 윤치오尹致昨, 당시當時 학무국장學務局長, 이하以下 십수인十數人의 위원委員이 있어, 약約 삼年三年間 십삼회十三回の 회의會議를 거듭하여, 여러가지 문제問題에 대하여 연구研究를 쌓았는데,

일, 국문國文의 연원淵源 및 자체字體, 발음發音의 연혁沿革.

이二, 초성初聲 ㅇ ㅎ △ ◇ 뎡 뎡 뎡 팔자八字 복용復用的 당부當否.

삼三, 초성初聲에서 ㄱ ㄷ ㅂ ㅅ ㅈ ㅎ ㅊ 자字 병서並書의 서법일정書法一定.

사四, 중성中聲 이자二字 를 창처創處하야·자字 폐지廢止함을 당부當否.

오五, 종성終聲 ㄷ ㅅ 이자二字의 용법用法 및 ㅈ ㅊ ㅋ ㅌ ㅍ ㅎ 육자六字를 종성終聲에도 통용通用함의 당부當否.

육六, 자모字母의 칠음七音과 청탁淸濁과의 구별區別 여하如何.

칠七, 자모字母의 음운音韻의 일정一定.

팔八, 자순字順 행순行順의 일정一定.

십十, 철자법綴字法.

이같이 의견意見이 작성作成되어, 내각內閣에 제출提出되었으나, 그때 마침 정계政界의 파란波瀾으로 말미암아, 그만 이 문제問題가 유야무야중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우리 조선사람은 워낙 오래동안 한문漢文에 중독中毒되어 있으므로 하야, 우리글의 정리整理와 통일統一이 이렇게 순조順調로 되어 가기 어려우나, 수백년數百年 오므로 굴욕屈辱中에 신음呻吟하든 우리글이 이제야 재생再生의 영광을 얻게된 것은 진실로 기뻐하지아니할 수 없다.

이운재, 『한글운동運動의 회고回顧【三】』, 『동아일보』, 1932. 11. 1.

3-4. 한글시대韓契時代(정리기整理期)

주시경周時經의 한글운동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1911~1932년)

“공든 탑이 문어지라”하는 속담이 있다. 과연 세종世宗께서 머처럼 애써서 만들어 놓으신 한글이 십생구사十生九死의 파란波瀾 많은 역사歷史를 지나, 이렇게 부흥復興함에 이르렀고, 한글 연구研究의 선구자先驅者 주시경周時經같은 큰 학자學者가 일어나서, 희생적犧牲의 노력努力을 다하야 우리글 바루잡는 첫 길을 열어 세종世宗의 끼치신 뜻을 이어가려 하니, 이로서 깊이 묻히었

든 보배가 파냄을 얻어 광휘光輝를 다시 발휘發揮하게 되었다. 종래從來의 한문중독漢文中毒을 깨뜨려 버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조선말을 많이 쓰자는 동기動機에서 우리글의 명칭名稱을 한글이라 하였다. 주시경周時經 씨의 한글운동運動으로부터 지금까지 한 이십여년간二十餘年間(1911~1932)을 한글시대時代라한다.

전기前期에 있는 국문연구소國文研究所는 단순히 정부政府의 기관機關으로 된 것이며, 그 전에도 그러하였지마는, 이 시기時期부터는 한글운동運動이 민중民衆으로 돌아왔다. 주시경周時經 씨의 『조선어문법朝鮮語文法』(1913)과 『말의소리』(1914)가 출간出刊되자, 이것이 오로지 한글 연구研究에 토대土臺가 되었다. 세종世宗의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원칙原則에 의지하야 초성初聲 전부全部를 종성終聲으로 쓰며 된시옷을 병서並書로 고쳐쓰는것과, 역사적어음歷史的語音을 표음식表音式으로 고쳐쓰는 것은 우리글의 공전空前의 대혁명大革命을 일으킨 것이다. 김두봉金斗奉, 이규영李奎永, 권덕규權惠奎, 장지영張志暎, 최현배崔鉉培, 이규방李奎昉, 신명균申明均, 정렬모鄭烈模, 이병기李秉岐, 김윤경金允經, 이상춘李常春, 제씨諸氏가 그 뒤를 이어 분투노력奮鬥努力하야 오늘까지 이른다.

최남선崔南善 씨 경영經營의 신문관新文館과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 이중건씨李重乾氏 경영經營의 신소년사新少年社는 다수多數한 서적書籍과 잡지雜誌를 간행刊行하는 중 우리 어문語文에 더욱이 많은 공헌貢獻이 있었으며 『동아일보東亞日報』가 창간創刊되면서부터 가장 간이화簡易化한 철자綴字를 사용使用하야, 전반全般에 전형典型이 되었다. 조선어문朝鮮語文 연구研究의 유일唯一한 기관機關으로 경성京城 수표정교육협회내水標町教育協會內에 있는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는 십여년前十餘年前에 창립創立된 한글연구대가研究大家의 총망라總網羅한 단체團體로, 매월每月 월간잡지月刊雜誌 『한글』을 발행發行하고 있다.

사전辭典 편찬編纂에 대하여는, 김두봉金斗奉 씨의 『말모이』와 이상춘李常春 씨의 사전辭典이 다 여러해로 고심苦心함이 적지 아니하였으나 완성完成함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정인보鄭寅普, 최남선崔南善 제씨諸氏의 발기로 계명구락부내啓明俱樂部內에서

사전辭典 편찬編纂을 시작하였으나 역시 완공完工을 못하여 버려 두었는데, 지금 몇몇 분이 그것을 계속繼續 정리중이라 하며, 재작년再昨年부터 전조선全朝鮮의 유지有志 백여인百餘人的 발기發起로 조선어사전편찬회朝鮮語辭典編纂會를 조직組織하고, 지금까지 편찬編纂에 열중熱中하고 있다.

당국當國에서는 이 시기중時期中에 전후이회前後二회에 공표하여 철자안綴字案을 작성作成하여 조선어독본朝鮮語讀本에 사용使用하였다. 지금 사용使用하는 철자개정안綴字改正案은 삼년전三年前(1929)부터 시행施行하는 것으로 지금 현저顯著的 효과效果를 주奏한다.

일반一般 민중民衆에게 교양教養하는것으로는,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 주최主催로 전조선오륙십처全朝鮮五六十處에 하기夏期 한글강습회講習會를 열어 작금昨今 양회兩회에 성적成績이 자못 양호良好하였으며, 계몽운동啓蒙運動으로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 주최主催의 문자보급반文字普及班과,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 주최主催의 브나로드*는 놀랄만한 효과效果를 거두었다.

한글 운동運動을 말함에 야소교耶蘇教는 내놓을수 없다. 사십만 교도四十萬教徒의 일일송독日日誦讀하는 성경聖經이 우리글로 번역翻譯되어, 각종서적중各種書籍中 발행부수發行部數로 으뜸될 것이다. 일자무식一字無識의 사람이라도 교회教會에 기주간幾週間만 다니면 성경聖經을 능히 독파讀破할수 있다. 한글 보급普及의 속도速度는 야소耶蘇에서 지날 것이 없을 것이다.

이상以上은 이 시기중時期中 한글 발달發達의 개요概要를 말한 것이다. 이 앞으로 더욱 우리의 노력努力 쉬지아니하여, 한글이 완전完全히 정리整理되고 통일統一함에 이를 것을 믿는다.(끝)

이운재, 『한글운동運動의 회고回顧【四】』, 『동아일보』, 1932. 11. 2.

연세학풍사업단·김도형 편, 『한미 이운재 글모음』, 도서출판 선인, 서울, 2016년, 554~557쪽

* 브나로드운동 Vnarod運動: 『동아일보사』가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저항하기 위해 일으킨 농촌 계몽운동의 하나이다. 『동아일보사』는 1931년부터 1934년까지 4회에 걸쳐 전국 규모의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제3회까지 이 운동을 ‘브나로드’로 부르다가 민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름이라 하여 제4회부터 ‘계몽운동’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금지 조치로 계속하지 못하였다. 원래 ‘브나로드’는 제정帝政 러시아 말기에 소련의 지식인들이,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민중을 깨우쳐야 한다는 취지로 만든 ‘민중 속으로 가자.’는 뜻의 러시아말 구호이다. 이 구호를 내세우고 1874년 수백 명의 러시아 청년 학생들이 농촌으로 들어가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25066

4. 일제 강점기 조선어朝鮮語 말살정책抹殺政策

일제日帝는 임오군란壬午軍亂(1882), 갑신정변甲申政變(1884)과 같은 정변政變을 통해 한국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확실히 다지고, 그 여세를 몰아 주변 국가의 침략에 광분하여 청일전쟁淸日戰爭과 러일전쟁을 도발, 승리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지배장치를 강화해 나가다가 드디어 을사늑약乙巳勒約·일한병합日韓併合을 단행하는 불법적 침략을 서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불행하게 식민지국으로 전락한 조선에서는 일어日語가 도리어 국어로 둔갑하여 조선어를 제외한 모든 학과목에 일어 교과서를 사용하고, 또 일어로 교수하게 하는 위세를 떨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어와 일어의 지위는 완전히 역전되어 일어는 지배자의 언어로서 ‘일어=내지어=국어’로 상승하고, 조선어는 피지배자의 언어로서 ‘조선어=외지어(반도어)=언문(방언)’이라는 등식으로 고착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조선어의 불행한 가치전락價值顛落의 근저에는 ‘일어는 조선어보다 훨씬 우수하다.’라는 정치적 지배자의 언어 차별 이데올로기가 깔려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다시 말하면 일제는 조선어를 종주국宗主國의 언어에 대한 식민지의 언어, 내지어에 대한 외지어, 국가 공용어에 대한 지방적 방언이라는 차별의식을 강렬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조선어의 입지立地를 비참하게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조선과 일본의 두 민족은 엄연히 다른 종족이었으나 일본이 좀 더 아량이 있고 전향적前向的인 여유가 있는 민족이었다면, 유럽의 몇 나라의 경우처럼 가급적 이중언어주의체제二重言語主義體制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보다 유연悠然한 식민지 통치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제는 처음부터 조선 민족의 언어동화와 황국신민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책상 보통교육의 교과과정에 정식으로 「朝鮮語及漢文」이란 교과목을 설정하여 비록 제한적이긴 했으나 조선어교육을 실시하였다. 즉 1912년 4월에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1921년 3월에 「보통학교용언문철자법대요」, 1930년에는 「보통학교용 철자법」이라는 이른바

‘총독부철자법’을 연달아 만들어 공포하였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한때 조선어교육을 공식으로 허용하는 이언어주의二言語主義를 지향해 갔던 것은 사실이였으나, 이는 한낱 허울 좋은 정치적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총독부는 조선교육령을 통해 처음부터 각급 학교의 조선어와 일본어의 수업시수에 현저한 차별 정책을 실시하여 교육령 개정 때마다 조선어 시수를 축소해 나가며 조선어 말살抹殺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한편 제2차 교육령 하의 1934년 7월에 이르러 우가키 총독이 매년 성대하게 실시해온 學生夏季農村文字普及運動(브나로드운동)을 금지한 제1차 조선어 말살 단계에 이어서, 1938년 3월에 미나미次郎 총독이 제3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함에 이르러서는 조선어를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규정, 금지로 정책을 바꾸어 교묘한 술책을 써서 「朝鮮語及漢文」과목에서 먼저 조선식 한문을 없애고, 조선어는 일단 수의과목隨意科目이라는 명목을 붙였다가 다음 해 4월에 결국 각급 학교의 조선어교육을 폐지하고 말았다. 이는 조선어 말살의 제2차 단계로서 크게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조선어교육 폐지의 연장선상에서 1940년 8월 10일 자에는 언문으로 발행되던 민족지 『동아일보』·『조선일보』를 강제로 폐간시킨 것은 조선어 말살의 제3차 단계로서 암흑정치적의 표본적인 악법惡法을 강요한 것이었다. 미나미 총독은 또한 걸음 더 나아가 1941년 3월 전체주의적 성격이 강한 「國民學校規定」을 공포하여 소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개정, 이곳에서 조선어의 냄새마저 완전히 말소해 버리려고 그 교과과정에서 조선어 과목명을 삭제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다음 고이소 총독 때인 1943년 1월 제4차 교육령 하에서는 중학교·사범학교의 교과과정에서도 이를 또 삭제하는 횡포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다. 조선어 말살의 제4차 단계였다.

그리하여 일제는 1941년 12월 8일에 발발한 태평양전쟁太平洋戰爭에서 차츰 전황이 불리해지며 전국이 급박해가자, 1943년 8월 군대 소모를 충당하기 위한 징병제의 강행 실시와 맞물려 국민총력조선연맹國民總力朝鮮聯盟의 주도하에 학교는 물론 가정·사

회에 이르기까지 일어전해日語全解 및 일어상용운동日語常用運動이 본격적으로 강행되고, 조선어는 온갖 핍박 아래 사실상 사용이 금지하다시피 되었다. 그리고 이는 1940년 2월 창씨개명創氏改名의 강제 실시와 함께 조선어와 민족말살정책의 병행을 의미하는 반역사적 폭정의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조선어 말살의 제5·6차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더욱이 1942년 10월에는 조선어의 진작振作을 뿌리째 뽑아 버리기 위한 극단적 조치로서 조선어학회의 『조선어사전』 편찬을 민족운동으로 규정, 이른바 조선어학회사건을 일으켜 최현배 등 많은 인사를 투옥하고 ‘조선어큰사전원고’를 모두 몰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윤재·한징이 옥사獄死하는 큰 불행이 일어났다. 이 무자비하고 냉엄한 탄압 조치는 마지막인 조선어 말살의 제7차 단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으로 광복을 맞게 됨에 따라, 조선어는 오랜 고난의 수렁에서 벗어나 다시 국어의 자리를 회복하여 조선어·한국어 또는 언문·한글이라고 자유롭게 호칭할 수 있게 된 것은 천우신조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鄭百秀, 『한국근대의 植民地體験과 二重言語文學』, 아시아문화사, 2000년, 16, 17쪽

金成俊, 『일제강점기 조선어 교육과 조선어 말살정책 연구』, 景仁文化社, 2010년, 109~112쪽

5. 한글시대韓契時代(확산기擴散期)

언어학자 노마 히데키のまひでき, 野間秀樹, Noma Hideki는 그의 저서 『한글의 탄생』에서 현재 한반도의 에크리튀르(집단 특유의 언어습관)는 기본적으로 한글이 압도壓倒하고 있어 1945년 이후를 한글시대時代(제압기制壓期)로 덧붙일 수 있다 하였다.

野間秀樹, 『ハングルの誕生』, 新版, 平凡社, 東京, 2021년, p308

노마 히데키, 『한글의 탄생』, 돌베게, 파주, 2020년, 334쪽

그러나 필자들은 21세기 들어 한글韓契이 한류韓流의 중심에서 서서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擴散되고 있으므로, 한글의 제압기制壓期라는 생소한 표현보다는 한글의 확산기擴散期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다.

한국어 세계화는 최근 2, 30년 동안에 일어난 획기적인 일이며 적어도 한국어는 세계 10대 언어 중 하나이다.

세계 대학 약 1,400개와 약 1,200개의 초중고에서 교육되는 언어이고, 세계적으로 60개국 180여 개의 세종학당과, 2,000여 개의 한글학교 등을 포함하여 총 4,400여 개 외국 기관에서 한국어가 교육되고 있다.

1989년부터 세계에서 문맹 퇴치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 이름이 ‘세종대왕 문해상’(King Sejong Literacy Prize)으로서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과학적이며, 학습이 용이한 문자라는 것이 인정되었다.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는 한류에 힘입어 한국어 노래, 드라마, 영화, 음식, 한복, 한글디자인 등과 함께 한국어 학습 붐이 일어나고 있다.

박영순, 『한국어 세계화, 그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고려대학교 한국어문 교육연구소 학술발표논문집, 2020;2020:1~8.

인도네시아 한쪽 부톤섬의 바우바우시에는 약 8만 명의 짜아짜아족이 살고 있으며 이들이 사용하는 짜아짜아어에는 고유 문자文字가 없었다. 이 때문에 짜아짜아어는 주로 구어口語로 전해졌다. 한글이 짜아짜아족 전통 언어를 보존하기 위한 특별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한글로 부족어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한글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고, 2009년 『바하사 짜아짜아1』이라는 이름의 한글로 표기된 짜아짜아어 교과서가 도입됐다.

(훈민정음학회)이호영, 황효성, 아비딘, 『바하사 짜아짜아』, 한국학술정보, 파주, 2009.

박의래, 『한글 도입 15년 인니 짜아짜아족...“전통언어 보존위한 특별도구”』, 『연합뉴스』, 2023. 12. 20.

제3장 국문國文의 새로운 용도用途 규정規定(1894년, 1895년)

국한문國漢文 사용

갑오개혁 이전 국문國文은 문자 생활에서 보완적補完的 위치에 머무르고 있었다. 국문을 제정하면서 표방한 원래 목적 역시 한문 서적의 국역國譯과 행정 실무의 수요를 맞추기 위한 정도였다. 『세종실록』 세종 26년 2월 20일 조선시대 법전에서도 언문으로 작성된 사문서는 소송에 접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다.

‘사재의 문기가 언문諺文이거나 증인이나 필자가 없는 경우에는 송사를 들어주지 않는다. 私債成文, 諺文及無證筆者, 勿聽.’

『大典通編>戶典>徵債>[私債成文諺文]』, 대전통편大典通編 - 조선시대법령자료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사편찬위원회

국문의 새로운 용도가 규정된 것은 1894년 7월 8일 「의안」에서였다.

‘무릇 국내외의 공사문자公私文字는 구문歐文으로 상용되는 외국의 국명·지명·인명이 있는 경우 모두 국문國文으로 번역하여 실행할 것’

모든 문서와 기록물에 외국어 표기를 국문으로 번역하라는 이 규정은 당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였다. 개항 이후 서구와 각종 조약이 체결되자, 서구의 서적들이 대거 수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교관, 고문관, 군인, 사업가 등 외국인들의 방문이 또한 빈번하였다. 따라서 의사전달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구의 용어를 국문으로 가차假借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갑오개혁기 공문서의 변화 양상에 있어서 대표적인 법령인 『공문식公文式』은 일본의 『공문식』을 전적으로 모방하였다. 그런데 일본 『공문식』에는 없는 조항이 갑오개혁기 『공문식』에 하나가 있다. 바로 공문서 작성에 있어 사용한 문자에 대한 규정, 즉 국문國文을 근본으로 하고 국한문 혼용을 허용한 조항이다.

1894년 7월 12일 「명령반포식」에는 국문을 사용 문자로 규정한 조항이 없다가 몇 개월 뒤인 1894년 11월 21일 『공문식』 제14조

에 ‘법률·칙령은 모두 국문으로써 근본을 삼고 한문을 부역附譯하거나 혹은 한문을 혼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1894년 11월 『공문식公文式』이 순한문純漢文으로 작성되었지만, 법률과 칙령에 국문을 사용하도록 천명하였다. 그 뒤 국한문혼용체로 쓰인 1895년 5월 8일 『공문식』 제9조에 재천명함으로써 드디어 한글 창제 이후 국문이 우리나라 대표 문자로서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후 국문은 외래어 표기, 관원 시험 국문 규정, 법률 및 명령, 『관보』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어 드디어 대표 문자로 공인되었다.

김건우, 『근대 공문서의 탄생』, 소와당, 서울, 2008년, 37~42쪽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미국 유학생으로서 당대 대표적인 개화開化 지식인知識人 유길준兪吉濬(1856~1914)은 개화기에 대표적인 저작물인 『서유견문西遊見聞』을 집필한 개화사상가이며, 또한 갑오개혁甲午改革 당시 군국기무처의원軍國機務處議員, 의정부도헌議政府都憲, 내각총서內閣總書, 내부협판內部協辦 등을 거치며 개혁을 추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정치가이다.

尹炳喜, 『兪吉濬研究』, 國學資料院, 서울, 1998년, 2015년, 7쪽

최덕수 외, 『근대 한국의 개혁 구상과 유길준』,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 2015년, 17쪽

황위주黃渭周는 『공문식公文式』에서의 국문사용國文使用 기획企劃 주체主體를 정치적, 외교적, 학술적 측면에서 검증檢證해 보고자 하는 논문論文中에서 『공문식公文式』에서의 국문國文 사용使用 선포宣布는 유길준兪吉濬의 기획企劃이 분명分明하다고 하였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공문식』이 갑오경장甲午更張의 일환이었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그래서 갑오경장의 핵심적 추진 기관이었던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와 그 구성원들을 점검해 본 결과, 이 기관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 약 10명, 그중에서도 유길준의 활동

이 가장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문식』 또한 유길준이 기획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외교적 측면에서는 『공문식』이 일본 『공문식』을 변용한 것이란 점이 주목되었다. 이것은 『공문식』을 기획한 주체가 일본 사정에 정통하였음을 말해 주는데, 여기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인물 또한 유길준이었다. 그는 군국기무처 설립 이전부터 일본과의 외교 문제 해결에 앞장섰고, 『공문식』 발표 직전까지 일본을 오가며 내정개혁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공문식』의 국문 사용 선포를 연상시키는 글을 짓기도 하였다.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공문식』 제14조가 일본 『공문식』에 없는 것을 별도로 추가한 것이란 점이 주목되었다. 이렇듯 중요한 조항을 전격적電擊적으로 추가하기 위해서는 국문國文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학문적 성찰이 필요했을 터인데, 군국기무처 구성원 가운데 이런 성찰이 있었던 인물은 유길준이 유일하였다. 유길준은 군국기무처 구성원으로 참여하기 이전에 이미 분명한 국문관國文觀을 정립하였고, 이런 생각을 각종 저서著書 논설論說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진開陳하였으며, 『공문식』에서의 ‘국문 사용’ 또한 이런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기획한 것이었다. 따라서 『공문식』에서의 국문國文 사용使用 선포는 유길준의 기획이 분명하며, 이런 점에서 유길준은 국·한문의 대전환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할 만하였다.

황위주黃渭周, 『公文式』에서의 ‘國文使用’ 企劃 主體, 嶺南學, 2023;85: 285~321.

유길준俞吉濬(1856~1914)의 1894년 관직官職 이력履歷

1894년 5월 20일(양력 6월 23일)

- 外衙門(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主事に 임명됨

1894년 6월 21일(양력 7월 23일)

- 軍國機務處 설치

- 총리대신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

내무대신內務大臣 박정양朴定陽,

외무대신外務大臣 김윤식金允植,

탁지부대신度支部大臣 어윤중魚允中,

유길준은 外務參議로 임명되어 內閣 書記官長 겸직 (김홍집의 비서 2명 중 1명)

1894년 7월 15일(양력 8월 15일)

- 俞吉濬이 朴容大, 李重夏, 李泰容, 曹寅承과 함께 議政府 都憲*에 임명됨

* 도헌은 사헌부를 계승한 감찰기관, 관리들 비행 규찰糾察하는 감찰위원

1894년 9월 11일(양력 10월 10일) 報聘大使의 일원으로 일본 방문

정사 義和君(10월 3일 최종 확정)

수행원 6명 高永喜(학무아문 참의), 李準榮(기기국 위원),

田峻基(궁내부 주사),

張淳奎(前 訓練僉正), 金洛駿(前 主事),

金演泰(司勇)

시찰원 9명 俞吉濬(議政府 都憲), 李秉武(壯衛營 領官),

金思濬(前 縣監), 金觀濟(外務衙門 主事),

趙重應(議政府 主事), 尹致昨(議政府 主事),

韓善會(前 主事), 魚允迪(度支衙門 主事),

金昌浩(심부름???)

하인 4명 李熙容, 申聲求, 韓景履, 李浩爽

1894년 11월 16일(양력 12월 12일) 귀국, 17일 복명復命

1894년 11월 21일(양력 12월 17일)

- 칙령 제1호로 公文式 (한문漢文으로 작성) 발표

- 같은 날. 새로운 내각 인사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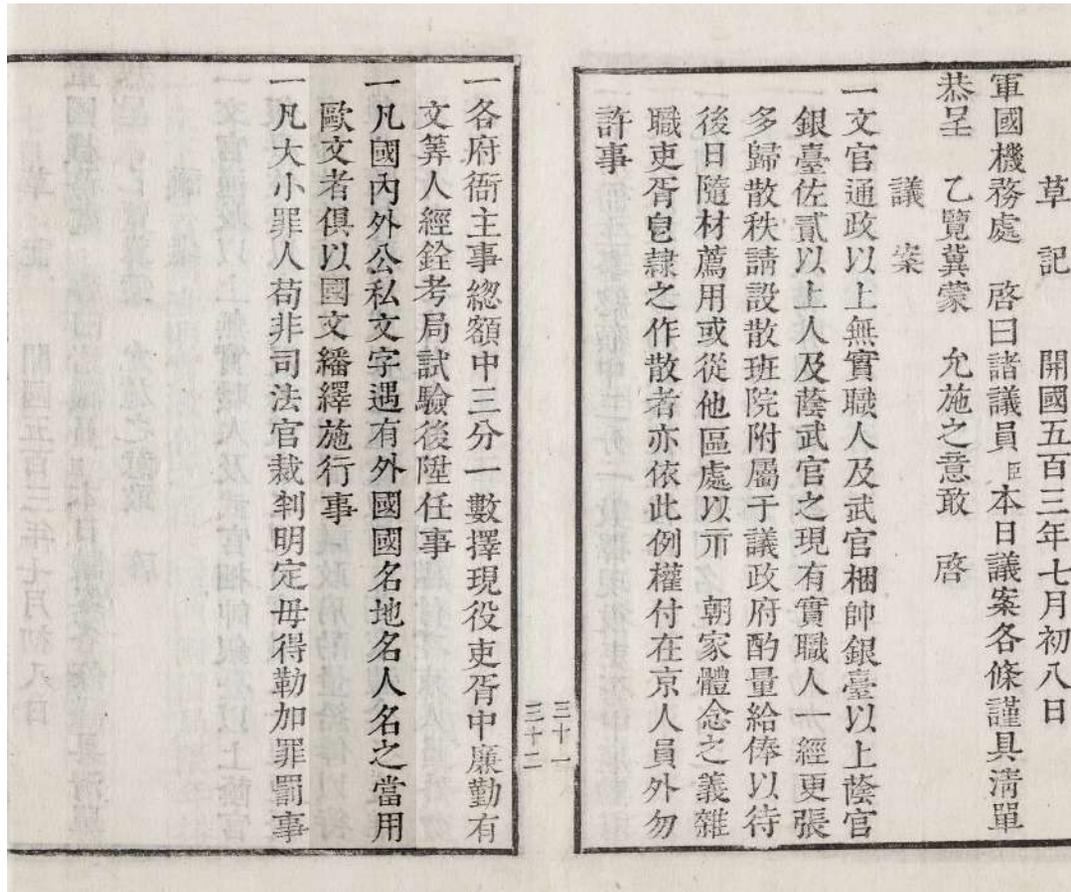
- 제2차 金弘集 내각 (金弘集, 朴泳孝 聯立內閣) 출범

- 이때 1894년 11월 21일(양력 12월 17일) 유길준은 內閣總書, 즉 내각서기장으로 임명된 듯하나, 정식으로 임명된 것은 5개월 뒤인 1895년 4월 25일이었다.

- 明治 27년(1894) 12월 19일 자 時事新報의 기사, 尹致昊日記 권4 1895년 12월 14일 자 등에 그를 內閣 書記長으로 지칭한 기록이 있다.

황위주黃渭周, 개인 교신, 2024. 1. 24.

1. 「군국기무처*의안軍國機務處議案, 일체 국내의 공적인 문서와 사적인 문서에 외국의 국명, 지명, 인명이 구라과 글로 쓰여 있으면 모두 국문으로 번역해서 시행한다.」, 1894년 7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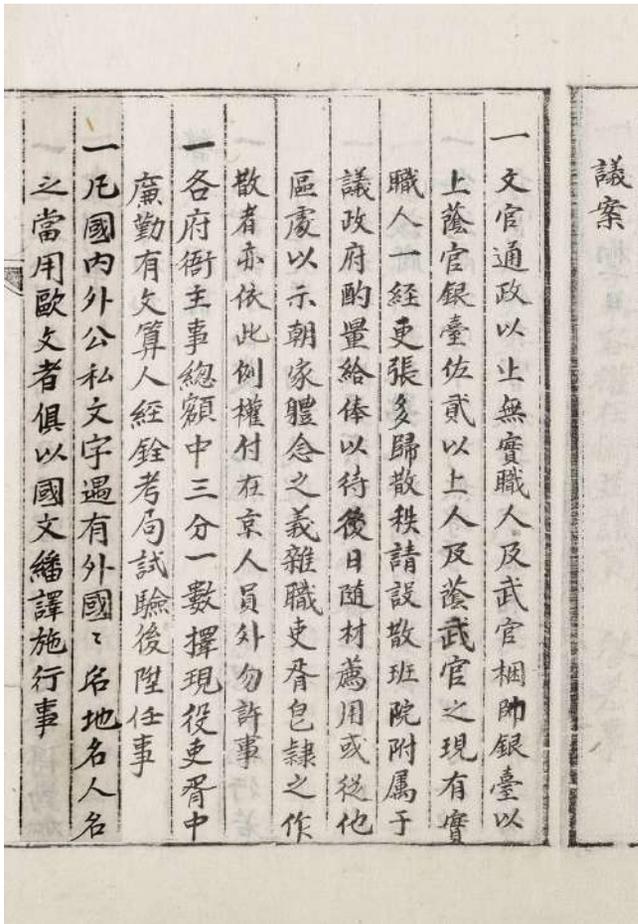
도판 3-1. 「군국기무처의안軍國機務處議案」, 1894년 7월 8일, 31쪽, 32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5248_00

*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 군국기무처는 조선 말기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던 최고 정책 결정 기관이다. 1894년 6월 21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친일파 정권이 수립되자 제도개혁과 신정권 탄생에 따른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합의체 형식으로 구성된 초정부적 입법·정책 결정 기구로서 최고 집권자의 회의체 기능을 수행했다. 7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실질적인 활동을 하며 210건의 의안을 심의·통과시켰다. 12월 17일 칙령으로 폐지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terms.naver.com/entry.naver?docId=525469&cid=46623&categoryId=46623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올린 의안議案에



도판 3-2. 「의안議案」, 1894년 7월 8일

『議案·勅令(上)』, 서울대학교圖書館, 1991년, 46~47쪽

“1. 통정대부通政大夫이상의 문관文官으로서 실직이 없는 사람과 병사兵使, 수사水使, 승지承旨 이상의 무관武官과 승지, 참의參議, 참판參判 이상의 음관蔭官과 현재 실직을 가지고 있는 음관 출신인 무관들이 한 번 경장更張을 겪은 뒤로 대부분 산질散秩이 되었으니 산반원散班院을 설치하여 의정부議政府에 소속시키고 헤아려서 봉급을 주고 뒷날에 재능에 따라 추천하여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조처하여 조정에서 깊이 생각하는 뜻을 보이며 잡직雜職, 이서吏胥, 조예阜隸로서 직임이 없게 된 사람들도 이 규례대로 임시로 붙여 두되 중앙에 있는 인원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1. 각 부府와 아문衙門의 주사主事 총인원 중 3분의 1은 현역 이서吏胥 중에서 청렴하고 근면하며 문서 처리와 계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전고국銓考局의 시험을 거친 후에 승진시켜 임용한다.

1. 일체 국내외 공적인 문서와 사적인 문서에 외국의 국명, 지명, 인명이 구라과 글로 쓰여 있으면 모두 국문으로 번역해서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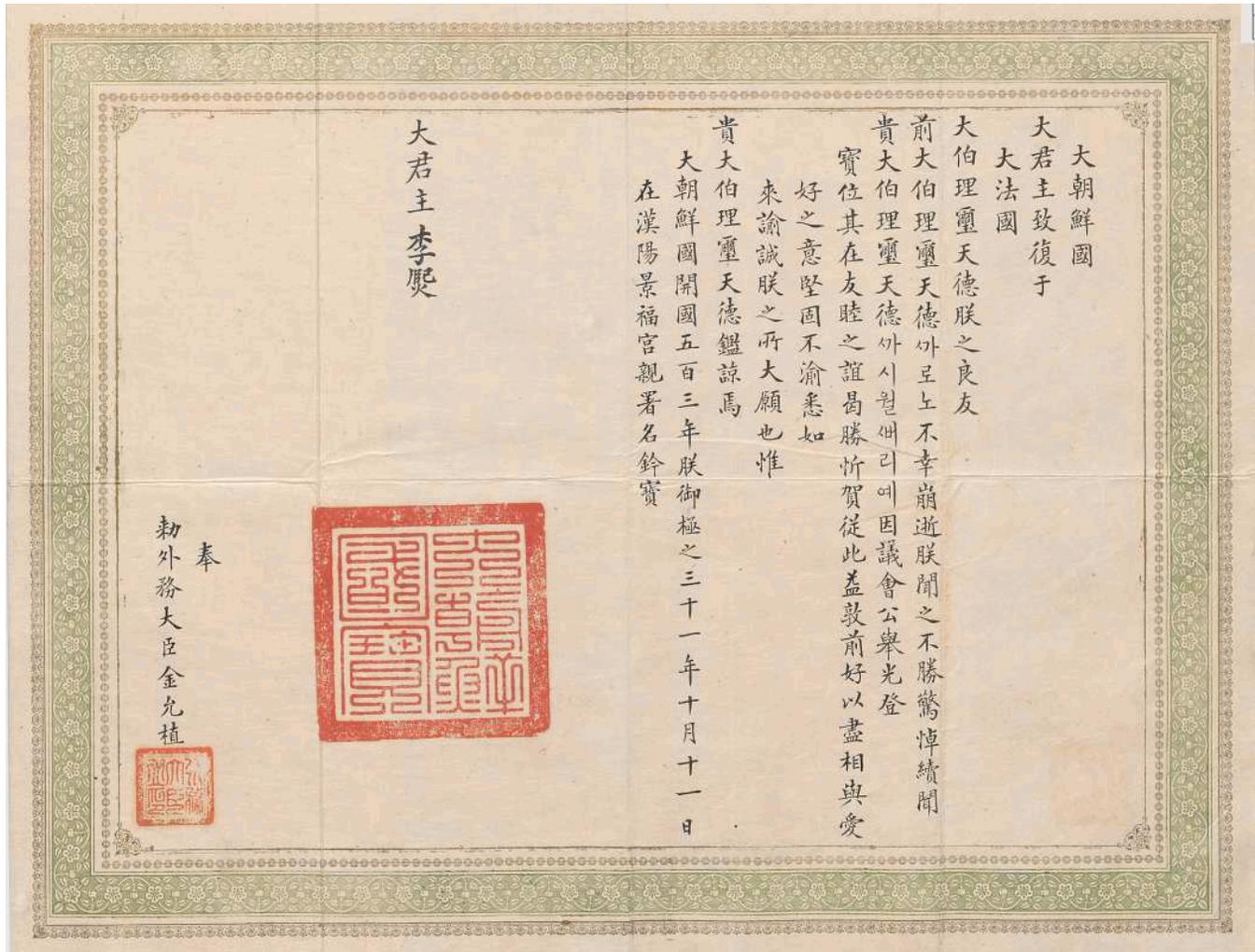
1. 대소 죄인에 대하여 사법관司法官이 재판하여 명확히 형량을 정하지 않으면 강제로 처벌할 수 없게 한다.”

하니, 모두 윤택하였다.

【원본】 36책 32권 3장 B면 【국편영인본】 2책 499면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신분-중인中人 / 사법-재판裁判

1-1. 적용 사례 :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1894년 10월 11일



도판 3-3.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왕실고문서 622, 1894년 10월 11일

원본 크기 : 40.7x51.5cm

자료 출처 : 왕실고문서 622 / 開國 50년(1894년) 10월 11일 / 40.7x51.5cm

자료 제공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大朝鮮國
大君主致復于
大法國
大伯理璽天德朕之良友
前大伯理璽天德外로는 不幸崩逝朕聞之不勝驚悼續聞
貴大伯理璽天德外시월씨리에 因議會公舉光登
寶位其在友睦之誼曷勝忻賀從此益敦前好以盡相與愛
好之意堅固不渝悉如
來諭誠朕之所大願也惟
貴大伯理璽天德鑑諒焉
大朝鮮國開國五百年朕御極之三十二年十月十一日
在漢陽景福宮親署名鈴寶

大君主李熙

奉
勅外務大臣金允植



프랑스 대통령 사로노 Sadi Carnot가 서거하고 쟈시일빠리에 Jean Casimir-Perier가 즉위하자 고종이 즉위 축하와 더불어 양국 간에 우호를 지속하자는 내용으로 보내기 위해 작성한 국서. 1894년 (고종 31) 10월 11일에 작성하였고, 고종의 친필 서명과 「大朝鮮國寶」라고 새긴 국새가 찍혀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2020. 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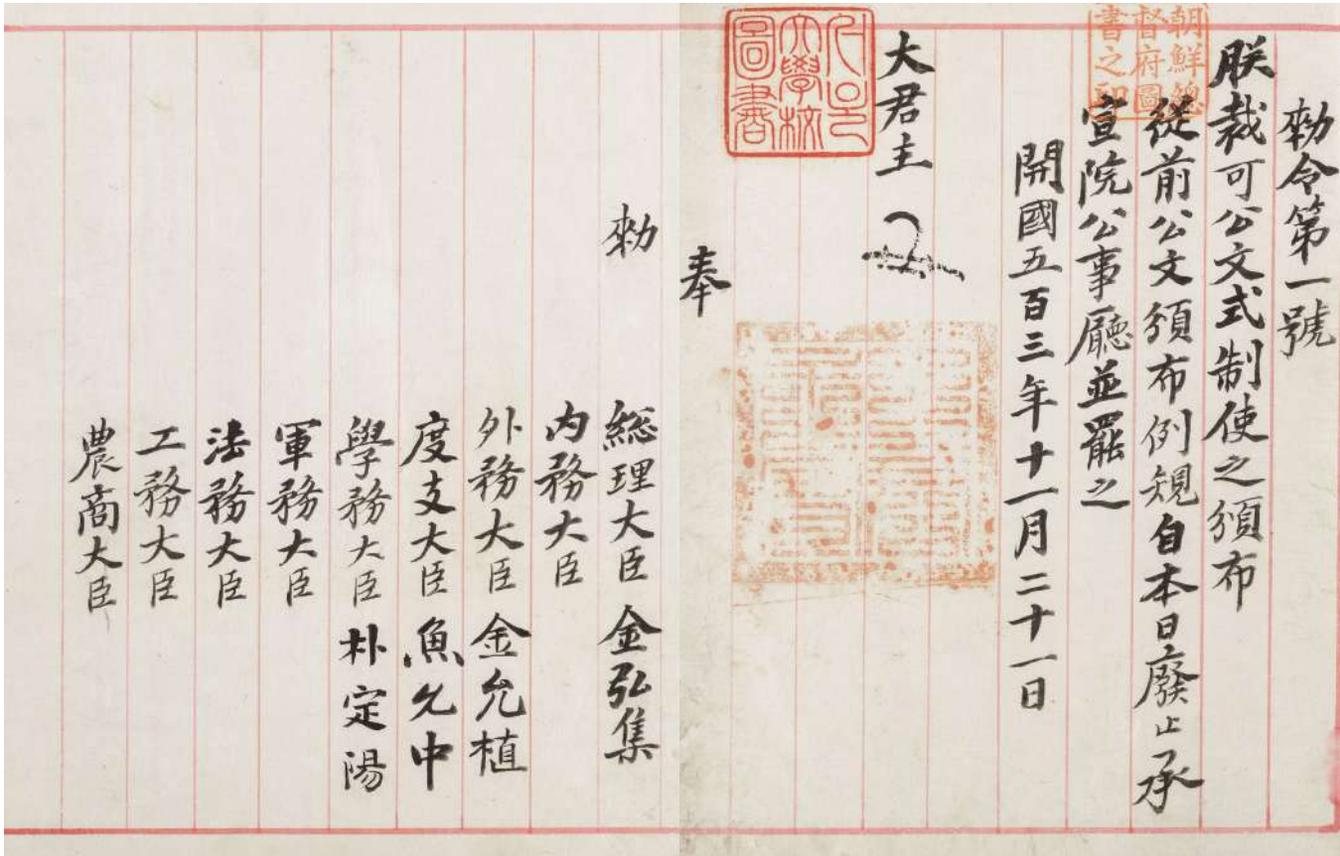
- ①大朝鮮國大君主致復于大法國大伯爵璽天德朕之良友
 ②前大伯爵璽天德사로노不幸崩逝朕聞之不勝驚悼
 ③續聞貴大伯爵璽天德사시일썌리에 因議會公舉光登寶位 其在友睦之誼曷勝忻賀
 ④從此益敦前好以盡相與愛好之意堅固不渝悉如來諭誠朕之所大願也 惟貴大伯爵璽天德鑑諒焉
 ⑤大朝鮮國 開國五百三年 朕御極之三十二年 十月 十一日 在漢陽 景福宮 親署名鈐寶
 ⑥大君主 李熙「大朝鮮國寶」
 ⑦奉勅外務大臣 金允植「外務大臣之印」

- ①대조선국 대군주는 짐의 훌륭한 친구인 대법국大法國(프랑스) 대통령大伯爵璽天德께 답장을 보냅니다.
 ②전 대통령 사로노Carnot께서 불행하게 서거하셨다는 소식을 짐이 듣고 놀람과 슬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③이어서 귀 대통령 사시일썌리에Jean Casimir-Perier께서 의회의 추대를 받아 대통령에 취임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의와 친목의 입장에서 어찌 기쁨과 축하를 가눌 수 있겠습니까.
 ④이를 계기로 기존의 친선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 서로 간의 우호의 뜻을 변함없이 다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보내주신 편지의 내용과 같으며, 진실로 짐이 크게 바라는 바입니다. 귀 대통령께서 살펴 헤아려주시시오.
 ⑤대조선국 개국 503년, 짐의 등극 31년(1894) 10월 11일 한양 경복궁에서 친히 서명署名하고 검보鈐寶하다.
 ⑥대군주 이희「대조선국보」
 ⑦칙령을 받든 이 외무대신 김윤식「외무대신지인」

한재훈, 원문 입력 및 국역

2. 「칙령勅令 제1호第一號, 공문식제公文式制 반포頒布,

공문식公文式 제14조: 법률法律·칙령勅令은 모두 국문國文을 기본으로 하고 한문漢文으로 번역을 붙이거나 혹은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한다.」, 1894년 11월 21일



도판 3-4.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1, 「칙령勅令 제1호第一號, 공문식제公文式制 반포頒布」, 1894년 11월 21일, 001a, b쪽

議案·勅令(上), 서울대학교圖書館, 1991년, 19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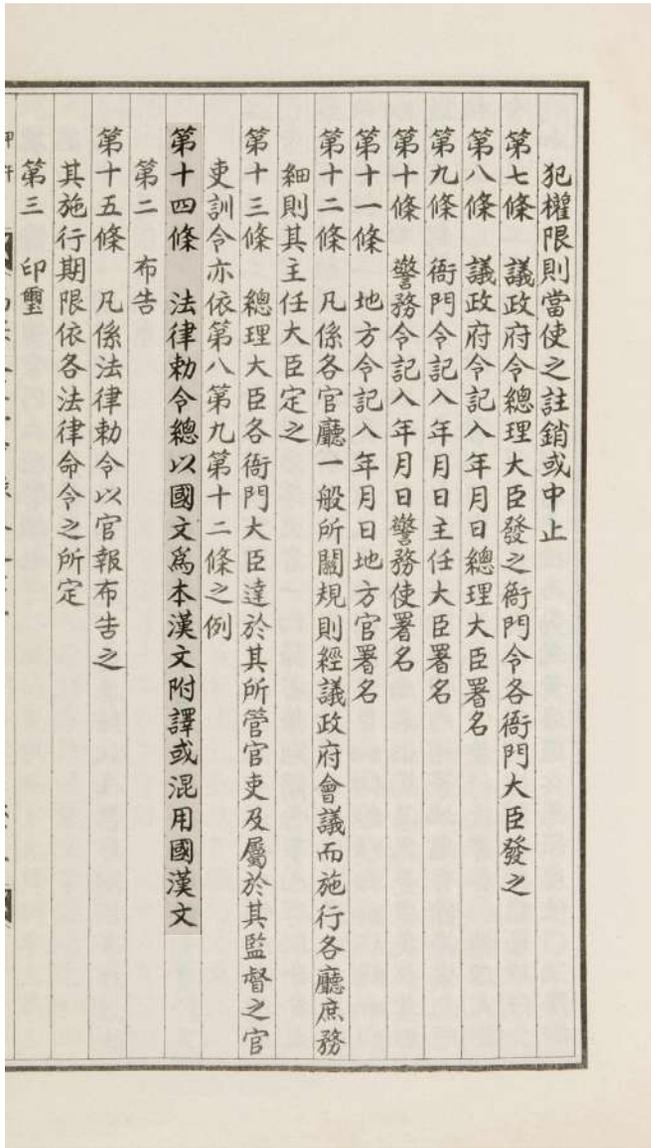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6_00&vol_no=0001

칙령勅令 제1호第一號
짐朕이 재가裁可한 공문식제公文式制를 반포頒布하게 하고
종전從前의 공문 반포 규례公文頒布例規는 오늘부터自本日 폐지廢止하며
승선원承宣院 공사청公事廳도 아울러 없애도록竝罷之 한다
개국 503년 11월 21일 開國 五百三年 十一月 二十一日

대군주大君主

봉축

칙勅	총리대신 總理大臣	김홍집 金弘集
	내무대신 內務大臣	
	외무대신 外務大臣	김윤식 金允植
	탁지대신 度支大臣	어윤중 魚允中
	학무대신 學務大臣	박정양 朴定陽
	군무대신 軍務大臣	
	법무대신 法務大臣	
	공무대신 工務大臣	
	농상대신 農商大臣	



도판 3-6. 『고종실록』, 032권, 1894년 11월 21일, 065a면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za_13111021_002&type=view&reSearchWords=&reSearchWords_ime=#



도판 3-5. 『고종실록』, 032권, 1894년 11월 21일, 064a면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za_13111021_002&type=view&reSearchWords=&reSearchWords_ime=#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11월 21일 계사 2번째 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칙령勅令 제1호第一號, 내가 재가裁可한 공문식제公文式制를 반포하게 하고 종전의 공문 반포 규례는 오늘부터 폐지하며 승선원承宣院 공사청公事廳도 아울러 없애도록 한다.

제2호, 내가 정전正殿에 나가서 정사를 보겠으니 너희들 모든 관리들은 정사에 힘써라. 조례條例는 의정부議政府에서 의정議定하여 들이도록 하라.

제3호, 내가 동지冬至날에 백관百官들을 거느리고 태묘太廟에 나가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모든 제도를 이정釐正한 사유를 고하고 다음 날에는 태사太社에 나아 가겠다.【이상은 총리대신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 외무 대신外務大臣 김윤식金允植, 탁지 대신度支大臣 어윤중魚允中, 학부 대신學務大臣 박정양朴定陽이 칙령勅令을 받았다.】

제4호, 박영효朴泳孝를 내무 대신內務大臣으로, 조희연趙羲淵을 군무 대신軍務大臣으로, 서광범徐光範을 법무 대신法務大臣으로 신기선申箕善을 공무 대신工務大臣으로, 엄세영嚴世永을 농상 대신農商大臣으로, 이중하李重夏를 내무 협판內務協辦으로, 이완용李完用을 외무 협판外務協辦으로, 안경수安駟壽를 탁지 협판度支協辦으로, 고영희高永禧를 학부 협판學務協辦으로, 권재형權在衡을 군무 협판軍務協辦으로, 정경원鄭敬源을 법무 협판法務協辦으로, 김가진金嘉鎭을 공무 협판工務協辦으로, 이채연李采淵을 농상 협판農商協辦으로, 윤웅렬尹雄烈을 경무사警務使로 삼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중략)

제8호, 원임 의정 대신原任議政大臣 김병시金炳始를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으로, 조병세趙秉世를 좌의장左議長으로, 정범조鄭範朝를 우의장右議長으로 삼도록 하라고 명하였다.【이상은 총리대신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이 칙령勅令을 받았다.】

공문식公文式
제1, 공문식

제1조, 법률法律·칙령勅令은 임금의 칙유勅諭로 공포한다.

(중략)

제13조, 총리대신과 각 아문의 대신이 관할하는 관리나 자기 감독에 속하는 관리들에게 내리는 훈령訓諭도 제8조·제9조·제12조 규례대로 한다.

제14조, 법률·칙령은 모두 국문國文을 기본으로 하고 한문漢文으로 번역을 붙이거나 혹은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한다.

제2, 포고布告

제15조, 일체 법률이나 칙령은 관보官報로 포고한다. 그 시행기한은 법률이나 명령으로 정한 대로 한다.

제3, 인쇄印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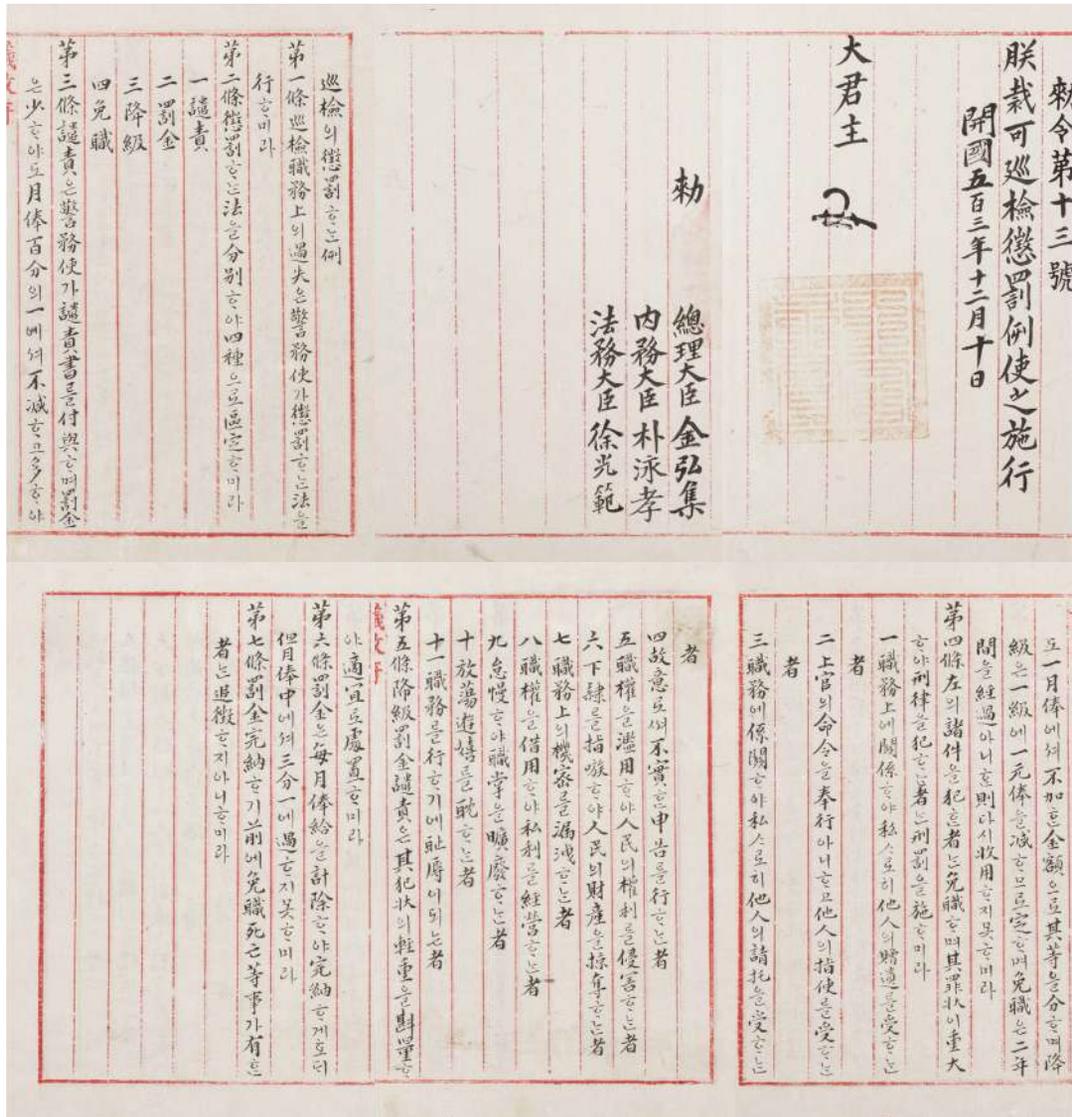
(중략)

제19조, 칙임관勅任官을 임명할 때에는 사령서辭令書에 옥새를 찍고 주임관奏任官을 임명할 때에는 그 주천서奏薦書에 옥새를 찍는다.

【원본】 36책 32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29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중앙군中央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2-1. 적용사례: 「칙령勅令 제13호第十三號, 순검巡檢 징벌 규례를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1894년 12월 10일



도판 3-7.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1, 「칙령勅令 제13호第一三號」, 1894년 12월 10일, 014a, b / 015a, b / 016a, b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6_00&vol_no=0001

勅令第十三號
朕裁可巡檢懲罰例使之施行
開國五百三年十二月十日
大君主〔手決〕

勅 總理大臣 金弘集
內務大臣 朴泳孝
法務大臣 徐光範

巡檢의懲罰의例

第一條巡檢職務上의過失은警務使가懲罰하는法을
行함미라

第二條懲罰하는法을分別하여四種으로區定함미라

一 譴責

二 罰金

三 降級

四 免職

第三條譴責은警務使가譴責書를付與하며罰金
은少하여도月俸百分之一에서不減하고多하여
도一月俸에서不加한金額으로其等を分하며降
級은一級에一元俸을減하므로定하며免職은二年
間을經過아니함則다시收用하지못함미라

第四條左의諸件을犯함者는免職하며其罪狀이重大
하여刑律을犯함者는刑罰을施함미라

一 職務上에關係하여私스르히他人의贈遺를受함
者

二 上官의命命을奉行아니하고他人의指使를受함
者

三 職務에係關하여私스르히他人의請托을受함
者

四 故意로써不實한申告를行함者

五 職權을濫用하여人民의權利를侵害함者

六 下隸를指罵하여人民의財産을掠奪함者

七 職務上의機密를漏洩함者

八 職權을借用하여私利를經營함者

九 怠慢하여職掌을曠廢함者

十 放蕩遊嬉를耽함者

十一 職務를行함에恥辱이되는者

第五條降級罰金譴責은其犯狀의輕重을斟量하
야適宜로處置함미라

第六條罰金은每月俸給을計除하여完納하게호디
但月俸中에서三分之一에過하지못함미라

第七條罰金完納하기前에免職死亡等事가有함
者는追徵하지아니함미라

3. 「칙령勅令 제86호第八十六號, 공문식公文식의 개정改正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케 하노라,
공문식公文式 제9조: 법률法律, 명령命令은 다 국문國文으로 기본基本을 삼고 한문漢文 번역翻譯을 첨부添附하며 혹은 국한문
國漢文을 섞어서 쓴다」, 1895년 5월 8일



도판 3-8.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3, 「칙령勅令 제86호第八十六號」, 1895년 5월 8일, 001a, b쪽

議案·勅令(上), 서울대학교圖書館, 1991년, 244쪽

규장각한글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6_00&vol_no=0003

칙령勅令 제86호 第八十六號

짐朕이 공문식公文式의 개정改正을 재가裁可 하야 반포頒布케
하노라

대군주大君主

개국 504년 5월 8일 開國 五百四年 五月 八日

내각총리대신	서리	내부대신	내각總理大臣	署理	內部大臣	박영호	朴泳孝
내부대신	內部大臣	박영호	朴泳孝				
학부대신	學部大臣	박정양	朴定陽				
외부대신	外部大臣	김운식	金允植				
탁지부대신	度支部大臣						
법부대신	法部大臣	서광범	徐光範				
농상공부대신	農商工部大臣	김가진	金嘉鎭				
군부대신	軍部大臣	권재형	權在衡	署理			

遇有當進之湯劑隨時稟承製入○布達第二號宮內府特進官十六人以
 下置官三件頒布王宣典禮儀式事項奉對諮詢具上所見○正一品沈舜澤正一品金炳始正一
 品趙秉世從一品閔泳煥從一品李憲植從一品李載完從一品閔泳奎正二
 品尹用求正二品趙東冕正二品尹容善正二品李憲永從二品李容植從二
 品趙秉弼從二品李根命從二品李建昌從二品韓耆東任宮內府特進官敕
 勅任官○初二日○初三日○初四日○初五日內閣總理大臣金弘集陳疏
 辭職賜批勉副○初六日○初七日○初八日學部大臣朴定陽任內閣總理
 大臣敕勅任官一等○召見總理大臣朴定陽內務大臣朴泳孝○大君主陞
 下川旨引新任地方官安東府使金奭中東萊府使池錫永聞慶府使申喆熙
 青松府使南惟熙珍島府使李瑛平壤庶尹徐九淳水原判官鄭喬春判官
 李台珽江華判官洪鍾瑩公州判官韓澤履海州判官南孝源原州判官李宗
 植禮安縣監安世中言特別引見言시고敕荒斗兵亂言經言地方言人民
 言疾苦言爲言事懇切言戒訓言시다○勅令第八十六號公文式裁可頒布
 公文式
 第一章頒布式

도판 3-9. 『고종실록』, 033권, 1895년 5월 8일, 057b면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za_13205008_004&type=view&reSearchWords=&reSearchWords_ime=#

第八條內閣總理大臣及各部大臣之로되其所管官吏及其監督에屬言
 是官吏에게達言는訓令도亦第七條의例에依言
 第九條法律命令은다國文으로州本을삼고漢譯을附言며或國漢文을
 混用言
 第二章布告
 第十條凡法律命令은官報로州頒布言니其頒布日로吳디滿三十日을
 經過言는時는遵守言이可言者로喜各部大臣의發言는部令은官報
 로州頒布言는同時에舊慣을從言야適當言處所에揭示言이亦可喜
 第十一條法律命令中施行期日을持揭言者玆規定事項의性質上頒布
 當日로吳디施行言이可言者의施行期日은前條第一項의例에在치
 아니喜
 第三章印璽
 第十二條國璽及御璽는宮內大臣이管藏言
 第十三條法律勅令은親署言신後御璽를鈐言
 第十四條國書條約批准書外國派遣官吏委任狀王國在雷各國領事證

도판 3-10. 『고종실록』, 033권, 1895년 5월 8일, 058b면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za_13205008_004&type=view&reSearchWords=&reSearchWords_ime=#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5월 8일 무인 4번째 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칙령勅令 제86호第八十六號, 『공문식公文式』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공문식公文式』

제1장 : 반포식頒布式

제1조, 법률法律, 칙령은 임금의 명령으로써 반포한다.

제2조, 법률, 칙령은 내각內閣에서 초안을 잡으며 혹은 각부各部의 대신大臣이 안案을 갖추어 내각에 제출하여 내각 회의에서 결정 후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과 주임 대신主任大臣이 아뢰어 재가裁可할 것을 청한다.

제3조, 법률, 칙령은 결재할 것을 주청하기 전에 내각에서 중추원中樞院에 문의하여야 하는데 단지 일이 급히 시행할 것을 요하여 문의할 겨를이 없는 것은 이 범위 안에 들지 않는다.

제4조, 법률, 칙령은 친서親署한 후 어새御璽를 누르고 내각 총리대신이 연월일을 기입하여 관계되는 대신과 함께 다음 자리에 수결한다.

(중략)

제7조, 각령에는 연월일을 기입하고 내각 총리대신이 서명하며 부령에는 연월일을 기입하고 주임 대신이 서명한다.

제8조, 내각 총리대신과 각부 대신으로서 그 관할하는 관리官吏와 감독에 속하는 관리에게 내리는 훈령訓令도 제7조의 규례대로 한다.

제9조, 법률, 명령은 다 국문으로 기본을 삼고 한문 번역을 첨부하며 혹은 국한문國漢文을 섞어서 쓴다.

제2장 : 포고布告

제10조, 모든 법률, 명령은 관보官報로 반포하는데 그것을 반포한 날부터 만 30일이 지났을 때는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한다.

각 부 대신이 내리는 부령은 관보로 반포하는 동시에 옛 관례대로 적당한 곳에 게시揭示할 수도 있다.

제11조, 법률, 명령 중 시행 기일을 특별히 밝힌 것과 규정 사항의 성질상 반포 당일부터 시행해야 할 것의 시행 기일은 앞 조항 제1항의 규례에 들지 않는다.

제3장 : 인쇄印璽

제12조, 국새國璽와 어새御璽는 궁내 대신宮內大臣이 보관한다.

(중략)

제15조, 직임관勅任官의 임면任免은 관고官誥에 어새를 찍고, 주임관奏任官을 임면할 때는 어새御璽를 그 주청서奏請書에 찍는다.

부칙附則

(생략)

【원본】 37책 33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3면

【분류】 군사-통신通信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제4장 국문시대國文時代 국서國書, 주본奏本, 주의奏議, 의주議奏, 칙령勅令, 내부내거문內部來去文, 관급증서官給證書,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의 관공체官公體 (1894~1909년)

1446년 『훈민정음 해례본』에 사용된 필체인 정음체로부터 문자는 필사의 편리성을 좇아서 형태가 변모하고 발전하였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10여 년이 지난 후 발간된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에서는 이미 한글의 자형이 전서체에서 벗어나 해서체楷書體의 자형으로 변모하고 있다. 세종이 추구하였던 고전체의 자형은 실용성에 의해 아주 빠른 시간에 무너져갔다.

박준호, 「조선중기 전서篆書의 유행과 그 의미」, 『조선 왕실의 한글 편지』, 숙명신한첩淑明宸翰帖, 국립청주박물관, 청주, 2011년, 43~55쪽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음체로부터 꾸준히 자형이 변모하여 한글의 부흥기인 국문시대에 꽃을 피워 관공체가 되는 과정過程을 조망하고자 필자 박재갑은 2019년 기해년己亥年부터 2022년 임인년壬寅年, 2023년 계묘년癸卯年까지 아래와 같은 한글정자체韓契正字體 작품 총 32종류를 임서臨書하고 2023년 5월 5일 출간출판한 『한글재민체 소고 韓契在民體 小考』에 게재掲載한 바 있다.

언해류諺解類 관련하여 7 작품

- 임서 1.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 1455년
- 임서 2. 훈민정음 언해본訓民正音諺解本, 1459년
- 임서 4. 삼강행실도언해三綱行實圖諺解, 1481년?
- 임서 14. 어제자성편언해御製自省編諺解, 1746년
- 임서 15. 천의소감언해關義昭鑑諺解, 1755년
- 임서 16. 고문진보언해古文眞寶諺解, 영조년간
- 임서 20. 학석집(익종)鶴石集, 19세기

어서류御書類 관련하여 7 작품

- 임서 6. 선조宣祖가 숙의淑儀에게, 1597년, 선조30년
- 임서 7. 선조어필宣祖御筆, 1603년, 선조 36년 11월 19일
- 임서 8. 선조대왕어필언간宣祖大王御筆諺簡, 1603년, 선조 36년 동짓달
- 임서 9. 효종대왕어서孝宗大王御書, 1652~1659년
- 임서 10. 숙종대왕언찰어필肅宗大王諺札御筆, 1685년, 숙종 11년 6월
- 임서 11. 숙종어필간찰 명안공주방肅宗大王御筆, 明安公主房, 17세기
- 임서 12. 숙종대왕언찰어필 숙명공주방肅宗大王諺札御筆, 淑明公主房, 숙종 25년, 1699년

육성六聖 즉 효종, 현종, 숙종, 인선왕후, 명성왕후, 인현왕후의 편지와 장렬왕후의 편지를 장정裝幀하면서 신한첩宸翰帖 곤坤의 첫 장에 정진석이 직접 써넣은 1 작품

- 임서 18. 언서첩諺書帖, 1802년

옥책문玉冊文, 홀기笏記, 제문祭文, 애책문哀冊文 관련하여 6 작품

- 임서 13. 소훈이씨제문昭訓李氏祭文, 1721년
- 임서 19. 유빈박씨애책문綏嬪朴氏哀冊文, 1823년
- 임서 21. 대전중궁전상존호시왕세자자내친상책보진치사전문표리행례홀기大殿中宮殿上尊號時王世子自內親上冊寶進致詞箋文表裏行禮笏記, 1827년
- 임서 24. 명성황후상존호옥책문明成皇后加上尊號玉冊文, 1890년
- 임서 28. 외진연시무동각정재무도홀기外進宴時舞童各呈才舞圖笏記, 1901년
- 임서 29. 책황귀비홀기冊皇貴妃笏記, 1903년

유서諭書, 국서國書, 밀서密書, 칙서勅書 관련하여 8 작품

- 임서 5. 선조국문유서宣祖國文諭書, 1593년
- 임서 22. 대조선국대군주국서大朝鮮國大君主國書, 1883년 6월 12일
- 임서 23. 국서제정사國書提呈辭, 1883년 9월 18일
- 임서 25.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왕실고문서 622, 1894년
- 임서 26.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왕실고문서 613, 1895년
- 임서 27.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왕실고문서 617, 1899년
- 임서 30. 고종황제의 밀서高宗皇帝密書, 1906년 1월 29일
- 임서 31.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 1908년 10월 24일

권선문勸善文, 예지법豫知法,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관련하여 3 작품

- 임서 3. 상원사중창권선문上院寺重創勸善文, 1464년
 - 임서 17. 임산예지법(18세기)臨産豫知法
 - 임서 32.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1909년 1월 27일~2월 3일
-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65~140쪽

한글의 부흥기인 국문시대國文時代(1894~1910년)에 작성된 국서國書, 주본奏本, 주의奏議, 의주議奏, 칙령勅令, 내부내거문內部來去文, 관급증서官給證書,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등의 관공체官公體를 정리하였다.

1. 1894년 10월 11일, 1895년 5월 3일, 1899년 10월 30일에 작성된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에 사용된 관공체官公體 26자, 18 낱자들을 정리하였다.
2. 1895년 1월 29일에 작성된 주본奏本 제91호, 제92호, 제93호를 인용하였다. 1896년 11월 4일에 작성된 주의奏議 청의서請議書 제2호를 인용하였다. 1895년 3월 21일에 작성된 의주議奏 제1호와 첨부문서 칙령안勅令案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인용한 주본奏本, 주의奏議, 의주議奏에 사용된 관공체

官公體 441자, 56 낱자들을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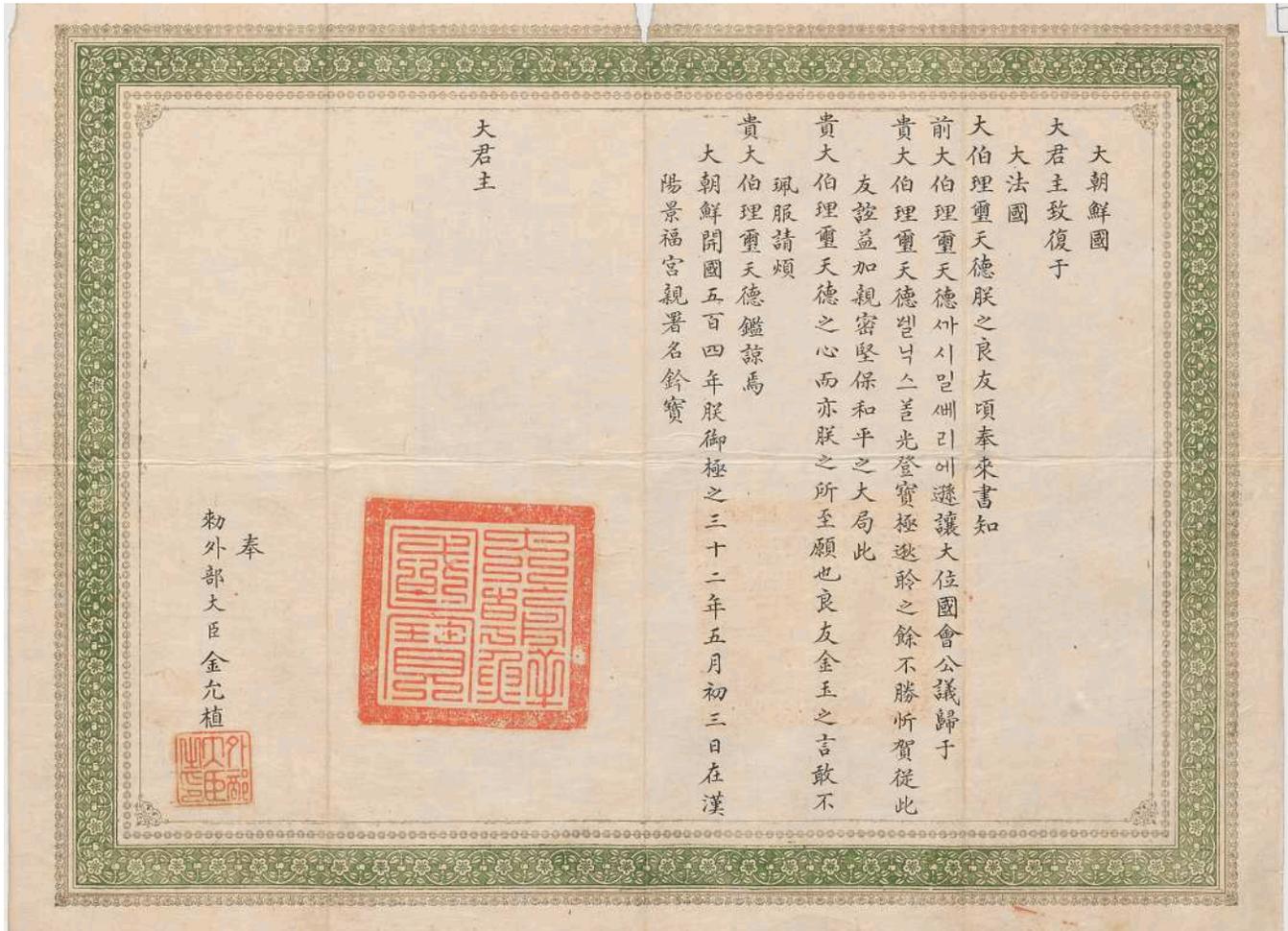
3. 1894년 12월 10일에 작성된 칙령勅令 제13호, 순검巡檢 징벌규례를 재가裁可하여 반포하라, 1895년 5월 8일에 작성된 칙령勅令 제86호, 공문식公文式的 개정改正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케 하라, 1895년 1월 29일에 작성된 칙령勅令 제32호, 개성부경력開城府經歷을 판관判官으로 개칭改稱하고 기직권其職權은 사도례四都例를 의依하라를 인용하였다. 1895년 3월 25일에 작성된 칙령勅令 제38호, 내각관제內閣官制, 1899년 3월 24일에 작성된 칙령勅令 제7호, 의학교관제醫學學校官制, 1899년 4월 24일에 작성된 칙령勅令 제14호, 병원관제病院官制, 1907년 3월 10일에 작성된 칙령勅令 제9호, 대한의원관제大韓醫院官制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인용한 칙령勅令에 사용된 관공체官公體 631자, 49 낱자들을 정리하였다.
4. 1895년 4월 22일에 작성된 내부내거문內部來去文, 조회照會 제1호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인용한 내부내거문內部來去文에 사용된 관공체官公體 65자, 23 낱자들을 정리하였다.
5. 1907년 7월 30일에 작성된 윤병학尹秉學의 대한의원大韓醫院 졸업증서卒業證書를 인용하였다. 1907년 8월 27일에 작성된 대한국기념장증서大韓國紀念章證書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인용한 윤병학尹秉學의 대한의원大韓醫院 졸업증서卒業證書, 대한국기념장증서大韓國紀念章證書에 사용된 관공체官公體 19자, 14 낱자들을 정리하였다.
6. 1909년 1월 27일~2월 3일 사이에 이루어진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에 사용된 관공체官公體 74자, 33 낱자들을 정리하였다.

인용된 관공체官公體는 총 1,256자이며 낱자는 총 88자(287쪽 참조)이다.

1.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의 관공체官公體

1-1.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1-1-1.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1895년 5월 3일



도판 4-1.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왕실고문서 613, 1895년 5월 3일

원본 크기: 40.7x51.5cm

자료 출처: 왕실고문서 613 / 開國 504년(1895년) 5월 3일 / 42x53.5cm

자료 제공: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프랑스 대통령 사시밀페리에Jean Casimir-Perier가 물러나고 펠릭스폴 Felix Faure이 즉위하자 고종이 즉위 축하와 더불어 양국 간에 우의가 더욱 친밀해지고 화평한 관계가 견고하게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국서. 1895년(고종 32) 5월 3일에 작성하였고, 「大朝鮮國寶」라고 새긴 국새가 찍혀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2020. 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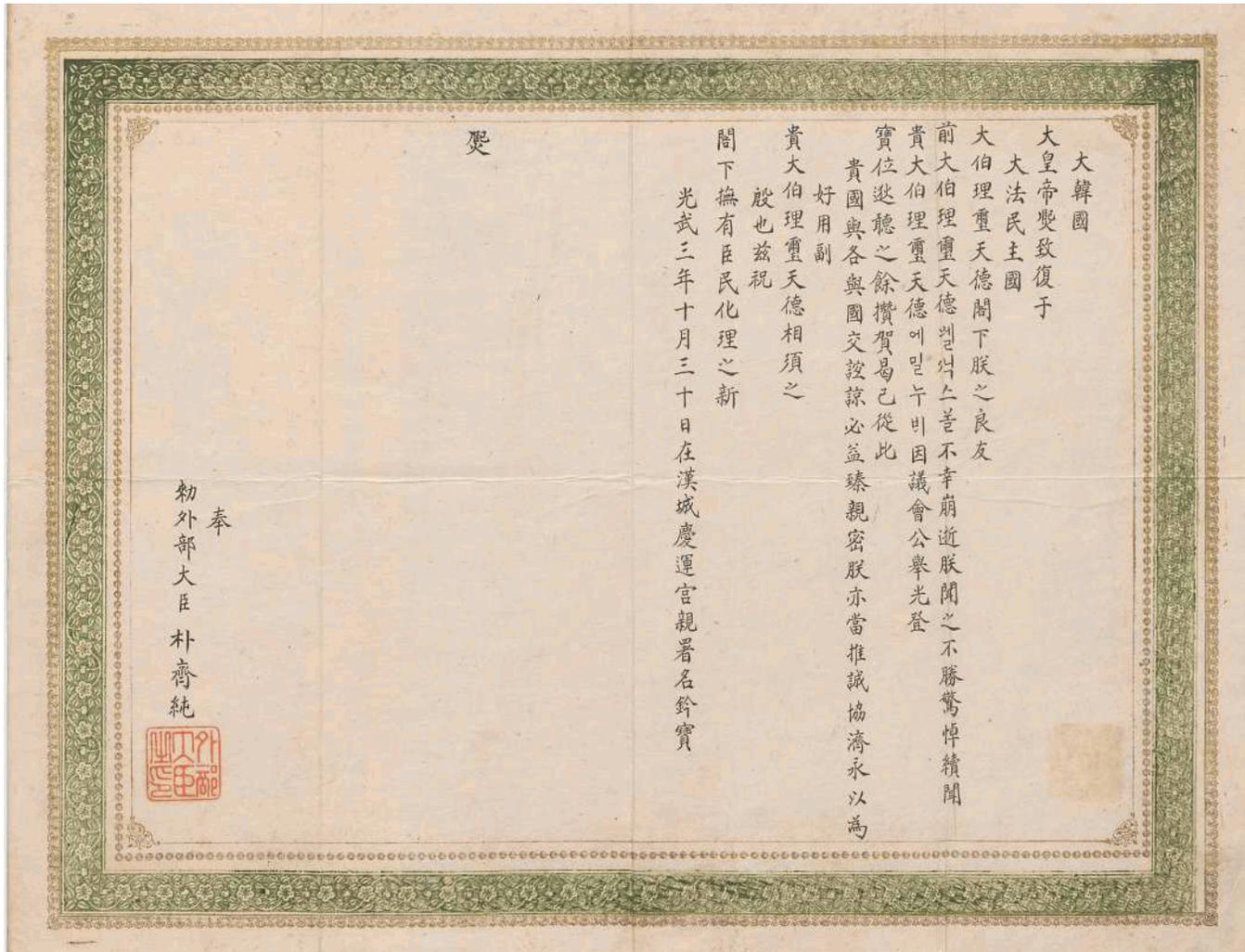
-
- ①大朝鮮國大君主致復于大法國大伯理璽天德朕之良友
 - ②頃奉來書知前大伯理璽天德^썬사시밀^썬쎄리에^썬遜讓大位 國會公議歸于
貴大伯理璽天德 벨닉스플^썬光登寶極 遜聆之餘不勝忻賀
 - ③從此友誼益加親密 堅保和平之大局 此貴大伯理璽天德之心而亦朕
之所至願也
 - ④良友金玉之言敢不珮服 請煩貴大伯理璽天德鑑諒焉
 - ⑤大朝鮮開國五百四年 朕御極之三十二年 五月初三日 在漢陽景福宮
親署名鈴寶
 - ⑥大君主「大朝鮮國寶」
 - ⑦奉勅外部大臣 金允植「外部大臣之印」

- ①대조선국 대군주는 짐의 훌륭한 친구인 대법국^{프랑스}大法國(프랑스) 대통령^{대통령}大伯理璽天德^{대통령}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 ②얼마 전 보내온 편지를 받고서, 전 대통령 썬사시밀쎄리에^{Jean Casimir-Perier}가 대통령 직위에서 물러났고, 국회의 공의가 귀 대통령 벨닉스플^{Felix Faure}에게 돌아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이 소식을 듣고 기쁨과 축하를 가눌 길이 없습니다.
- ③이를 계기로 우의가 더욱더 친밀해져서 평화의 큰 장이 굳건하게 보전될 것입니다. 이는 귀 대통령의 생각이요, 또한 짐의 지극한 소원입니다.
- ④훌륭한 친구의 금옥^{金玉} 같은 말씀을 감히 명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디 귀 대통령께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 ⑤대조선 개국 504년, 짐의 등극 32년(1895) 5월 초3일 한양 경복궁에서 친히 서명^{署名}하고 검보^{鈴寶}하다.
- ⑥대군주「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
- ⑦칙령을 받든 이 외부대신 김윤식「외부대신지인」

한재훈, 원문 입력 및 국역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127~128쪽

1-1-2.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1899년 10월 30일



도판 4-2.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왕실고문서 617, 1899년 10월 30일

원본 크기 : 40.7x51.5cm

자료 출처 : 왕실고문서 617 / 光武 3년(1899년) 10월 30일 / 41.5x51.8cm

자료 제공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프랑스 대통령 펠릭스폴Felix Faure이 서거하고 에밀 누비Emile Loubet가 의회의 추대를 받아 대통령직에 오르자, 고종 황제가 즉위 축하와 더불어 우의가 더욱 친밀해지고 협조적인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국서. 1899년(광무 3) 10월 30일에 작성하였고, 말미에 고종의 어휘御諱가 써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2020. 3. 2.

- ①大韓國大皇帝熈致復于大法民主國大總理璽天德閣下朕之良友
 ②前大總理璽天德 벨식스플不幸崩逝 朕聞之不勝驚悼
 ③續聞貴大總理璽天德에밀누비因議會公舉光登寶位 逖聽之餘 攢賀曷已
 ④從此貴國與各與國交誼諒必益臻親密 朕亦當推誠協濟 永以爲好 用副貴大總理璽天德相須之殷也
 ⑤茲祝閣下撫有臣民化理之新
 ⑥光武三年 十月三十日在漢城 慶運宮 親署名鈐寶
 ⑦熈
 ⑧奉勅外部大臣 朴齊純「外部大臣之印」

- ①대한국 대항제 희는 짐의 훌륭한 친구인 대법민주국(大法民主國: 프랑스) 대통령(大總理璽天德) 각하께 답장을 보냅니다.
 ②전 대통령 벨식스플 Felix Faure께서 불행히도 서거하셨다는 소식을 짐이 듣고 놀람과 슬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③이어서 귀 대통령 에밀 누비Emile Loubet께서 의회의 추대를 받아 대통령에 취임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멀리서 이 소식을 듣고 축하를 금할 수 없습니다.
 ④이를 계기로 귀국은 여러 우방[與國]과 우의가 더욱 친밀해질 것입니다. 짐 역시 당연히 정성껏 협력하여 영원히 우호를 다질 것이며, 이로써 귀 대통령의 성대한 우정에 부응할 것입니다.
 ⑤이에 각하께서 새롭게 신민臣民을 잘 다스려나가지길 축원합니다.
 ⑥광무 3년(1899) 10월 30일 한성 경운궁에서 친히 서명署名하고 검보鈐寶하다.
 ⑦희熈
 ⑧칙령을 받든 이 외부대신 박제순「외부대신지인」

한재훈, 원문 입력 및 국역

조선이 대한으로 바뀐것은 1897년 10월 국제가 대한제국으로 바뀐 때문이다.

김인걸, 개인 교신, 2022. 11. 18.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129~130쪽

1-2. 관공체官公體 26자, 18 날자,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1894년, 1895년, 1899년

노	누	낙	로	리	리	밀	밀	비
스	스	시	시	싸	싸	싸	씩	써
새	에	에	예	월	셀	켈	볼	

2. 주본奏本, 주의奏議, 의주議奏의 관공체官公體

2-1. 주본奏本

임금에게 올리는 글월을 뜻한다.

議政府(朝鮮) 編, 奎17702-v.1-4, [19世紀 末(高宗31-32年:1894-1895)], 책 권수: 4冊, 筆寫本

주본奏本 중에서 한글이 포함된 제91호第九十一號, 제92호第九十二號, 제93호第九十三號(1895년 1월 29일)를 인용한다.

2-2. 주의奏議

임금에게 아뢰어 의논함. 또는 그런 의견서를 뜻한다.

議政府(朝鮮) 編, 奎17703-v.1-165, [19世紀 末-20世紀 初(建陽1年-隆熙4年:1896-1910)], 책 권수: 165冊, 筆寫本

주의奏議 중에서 한글이 포함된 청의서 제2호第貳號 (1896년 11월 4일)를 인용한다.

2-3. 의주議奏

어떤 문제를 토의하고 그 의견을 임금에게 글로 써서 내던 일을 뜻한다.

內閣編錄課(朝鮮) 編, 奎17705-v.1-69, [19世紀 末(高宗32-33年:1895-1896)], 책 권수: 69冊, 筆寫本

의주議奏 중에서 한글이 포함된 의주議奏 제1호第一號와 첨부문서 勅令案(1895년 3월 21일)을 인용한다.

2-4. 관공체官公體 441자, 56 날자, 주본奏本, 주의奏議, 의주議奏, 1895년 1896년

2-4-1. 관공체官公體 133자, 33 날자,

「주본奏本 제91호第九十一號」, 1895년 1월 29일

2-4-2. 관공체官公體 25자, 12 날자,

「주본奏本 제92호第九十二號」, 1895년 1월 29일

2-4-3. 관공체官公體 23자, 13 날자,

「주본奏本 제93호第九十三號」, 1895년 1월 29일

2-4-4. 관공체官公體 36자, 19 날자,

「주의奏議, 청의서請議書 제2호第貳號」, 1896년 11월 4일

2-4-5. 관공체官公體 34자, 23 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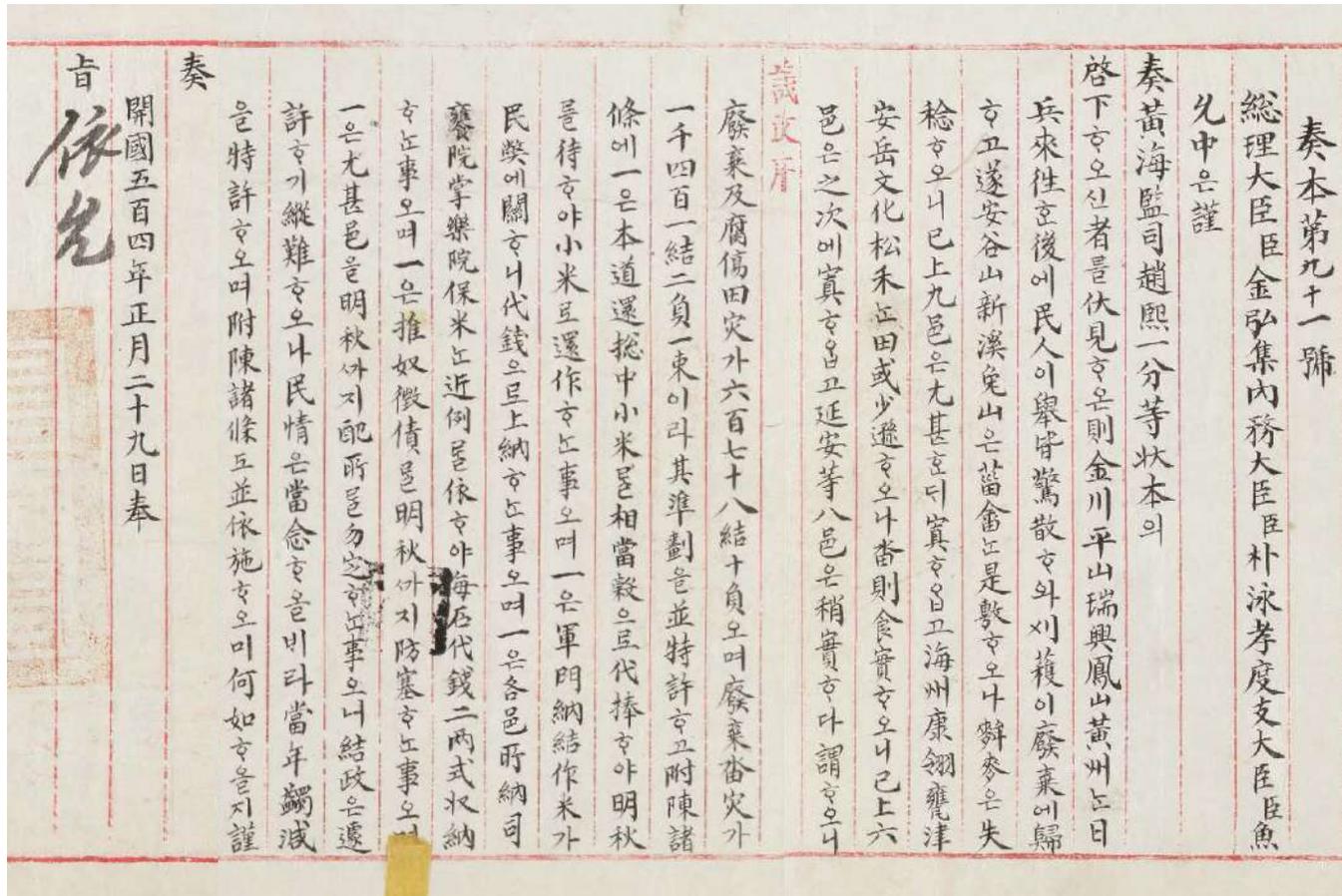
「의주議奏 제1호第一號, 內閣官制」, 1895년 3월 21일

2-4-6. 관공체官公體 190자, 38 날자,

「의주議奏 제1호第一號, 첨부문서 勅令案, 內閣官制」, 1895년 3월 21일

2-1. 주본奏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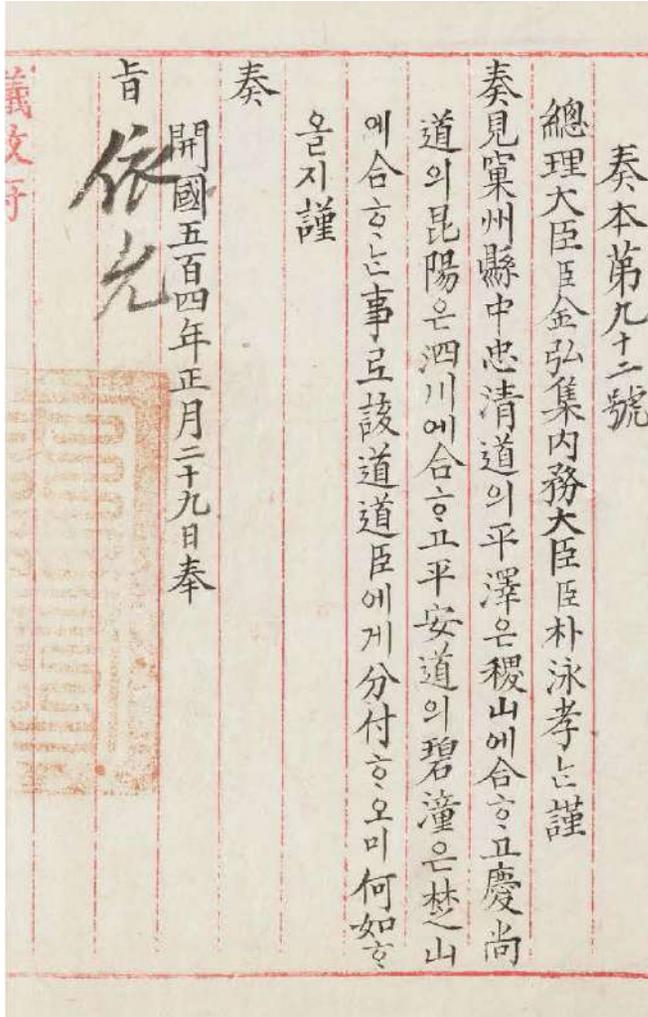
2-1-1. 「주본奏本 제91호第九十一號, 黃海監司 趙熙一의 관하 군읍에 대한 分等狀本의 措置」, 발신자 總理大臣 金弘集, 內務大臣 朴泳孝, 度支大臣 魚允中, 1895년 1월 29일



도판 4-3. 議政府(朝鮮) 編, 奎17702-v.2, 「주본奏本 제91호第九十一號」, 1895년 1월 29일, 032a, 032b_01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2_00&vol_no=0002

2-1-2. 「주본奏本 제92호第九十二號, 忠淸道 平澤은 稷山, 慶尙道 昆陽은 泗川, 平安道 碧潼은 楚山에 합하는 건件」,
발신자 總理大臣 金弘集, 內務大臣 朴泳孝, 1895년 1월 29일



奏本第九十二號

總理大臣臣金弘集內務大臣臣朴泳孝는 謹

奏見 窠州縣中忠淸道の平澤은 稷山에 合 ㅎ고 慶尙
道の 昆陽은 泗川에 合 ㅎ고 平安道の 碧潼은 楚山
에 合 ㅎ는 事로 該道道臣에게 分付 ㅎ오미 何如 ㅎ
을지 謹

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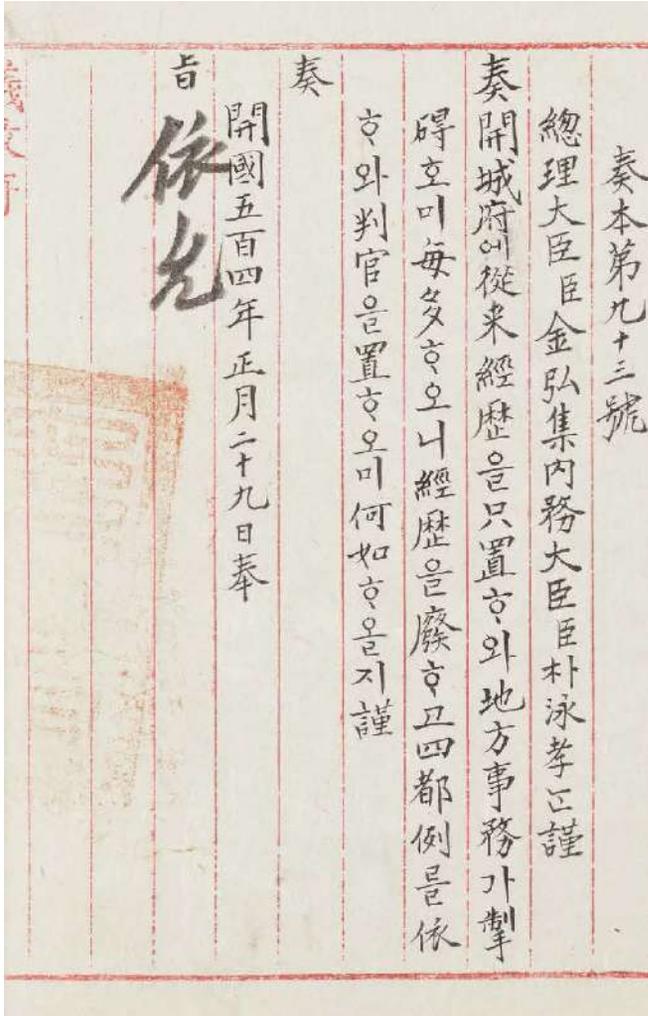
開國五百四年正月二十九日奉

旨 依允

도판 4-4. 議政府(朝鮮) 編, 奎17702-v.2, 「주본奏本 제92호第九十二號」,
1895년 1월 29일, 034a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
text.do?book_cd=GK17702_00&vol_no=0002

2-1-3. 「주본奏本 제93호第九十三號, 開城府의 經歷을 폐하고 判官을 설치하는 件件」, 發신자 總理大臣 金弘集, 內務大臣 朴泳孝, 1895년 1월 29일



奏本第九十三號

總理大臣臣金弘集內務大臣臣朴泳孝謹

奏開城府에從來經歷을只置하외地方事務가掣
碍호미每多호오니經歷을廢하고四都例를依
하외判官을置호오미何如호을지謹

奏

開國五百四年正月二十九日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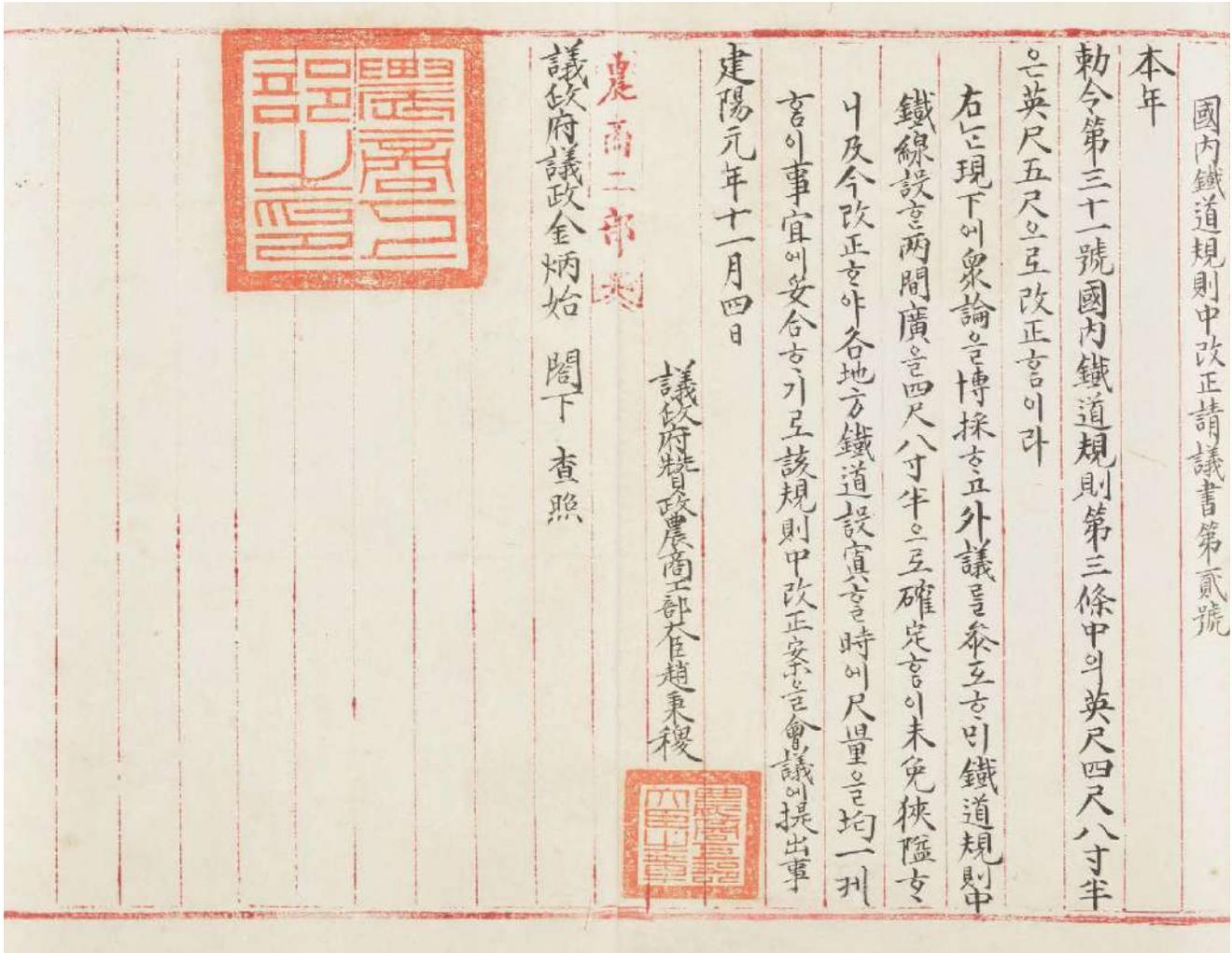
旨 依允

도판 4-5. 議政府(朝鮮) 編, 奎17702-v.2, 「주본奏本 제93호第九十三號」, 1895년 1월 29일, 035a쪽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
text.do?book_cd=GK17702_00&vol_no=0002

2-2. 주의奏議

2-2-1. 「청의서請議書 제2호第貳號, 國內鐵道規則 중 제3조의 내용을 改正하는 勅令案」, 발신자 議政府贊政農商工部大臣 趙秉稷, 1896년 11월 4일



도판 4-6. 議政府(朝鮮) 編, 奎17703-v.1, 「청의서請議書 제2호第貳號」, 1896년 11월 4일, 013a, b쪽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3_00&vol_no=0001

國內鐵道規則中改正請議書第貳號

本年

勅令第三十一號國內鐵道規則第三條中の英尺四尺八寸半
은英尺五尺으로改正함이라

右는現下에衆論을博採하고外議를參互함인鐵道規則中
鐵線設함兩間廣을四尺八寸半으로確定함이未免狹隘함
니及今改正함야各地方鐵道設寔할時에尺量을均一케
함이事宜에妥함함기로該規則中改正案을會議에提出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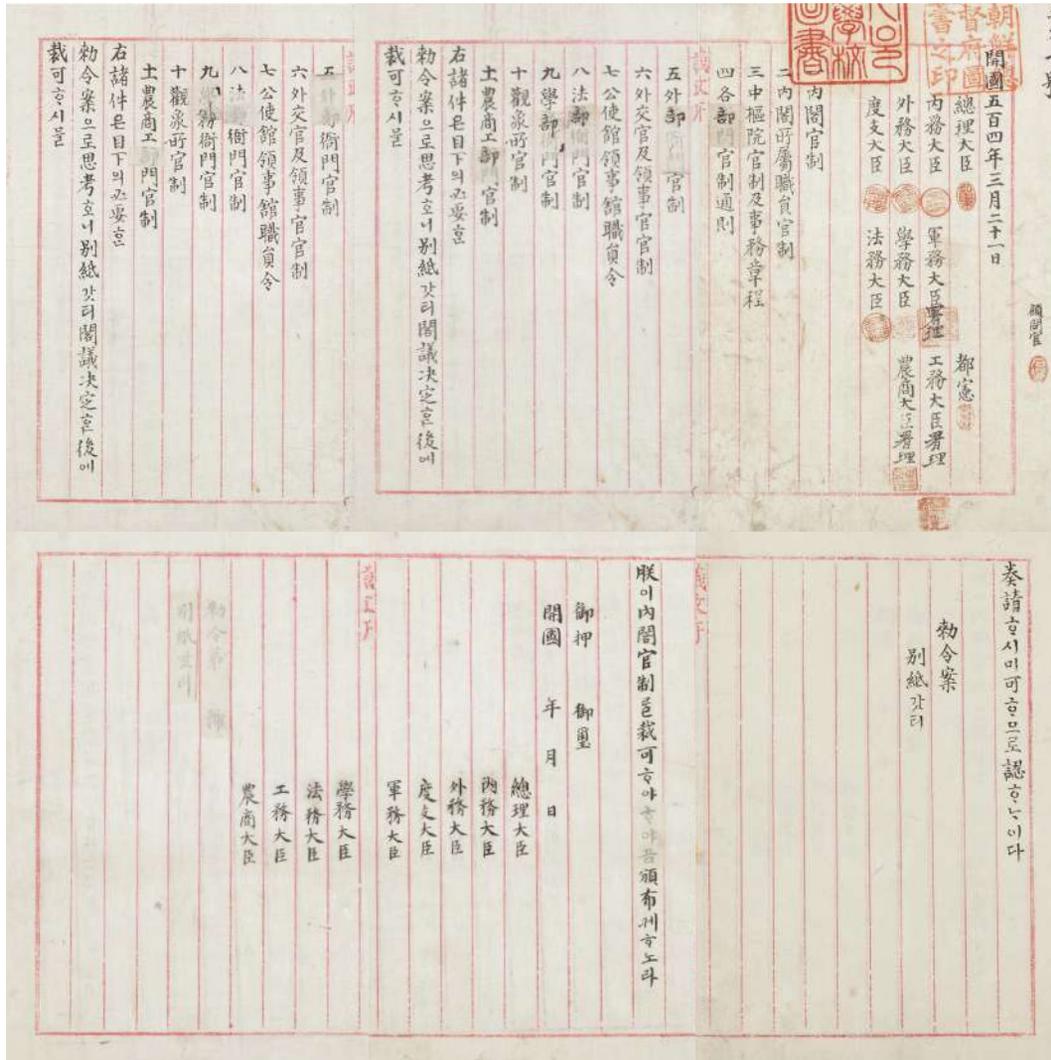
建陽元年十一月四日

議政府贊政農商工部大臣趙秉稷

議政府議政金炳始 閣下 查照

2-3. 의주議奏

2-3-1. 「제1호第一號, 內閣官制, 內閣所屬職員官制, 中樞院官制 및 事務章程, 各部 官制通則, 外部官制, 外交官 및 領事官官制, 公使館領事館職員令, 法部官制, 學部官制, 觀象所官制, 農商工部官制에 대한 內閣決定書」, 1895년 3월 21일



도판 4-7. 內閣編錄課(朝鮮) 編, 奎17705-v.1, 「의주議奏 제1호第一號, 內閣官制」, 1895년 3월 21일, 001a, b / 001b_001 / 002a / 003a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5_00&vol_no=0001

第一號

朕이內閣官制를裁可하야頒布케하노라

顧問官

開國五百四年三月二十一日

御押 御璽

開國 年 月 日

總理大臣

都憲

總理大臣

內務大臣

軍務大臣署理

工務大臣署理

內務大臣

外務大臣

學務大臣

農商大臣署理

外務大臣

度支大臣

法務大臣

度支大臣

一 內閣官制

軍務大臣

二 內閣所屬職員官制

學務大臣

三 中樞院官制及事務章程

法務大臣

四 各部官制通則

工務大臣

五 外部官制

五 外務衙門官制

農商大臣

六 外交官及領事官官制

六 外交官及領事官官制

七 公使館領事館職員令

七 公使館領事館職員令

八 法部官制

八 法務衙門官制

九 學部官制

九 學務衙門官制

十 觀象所官制

十 觀象所官制

十一 農商工部官制

十一 農商工衙門官制

右諸件은目下의必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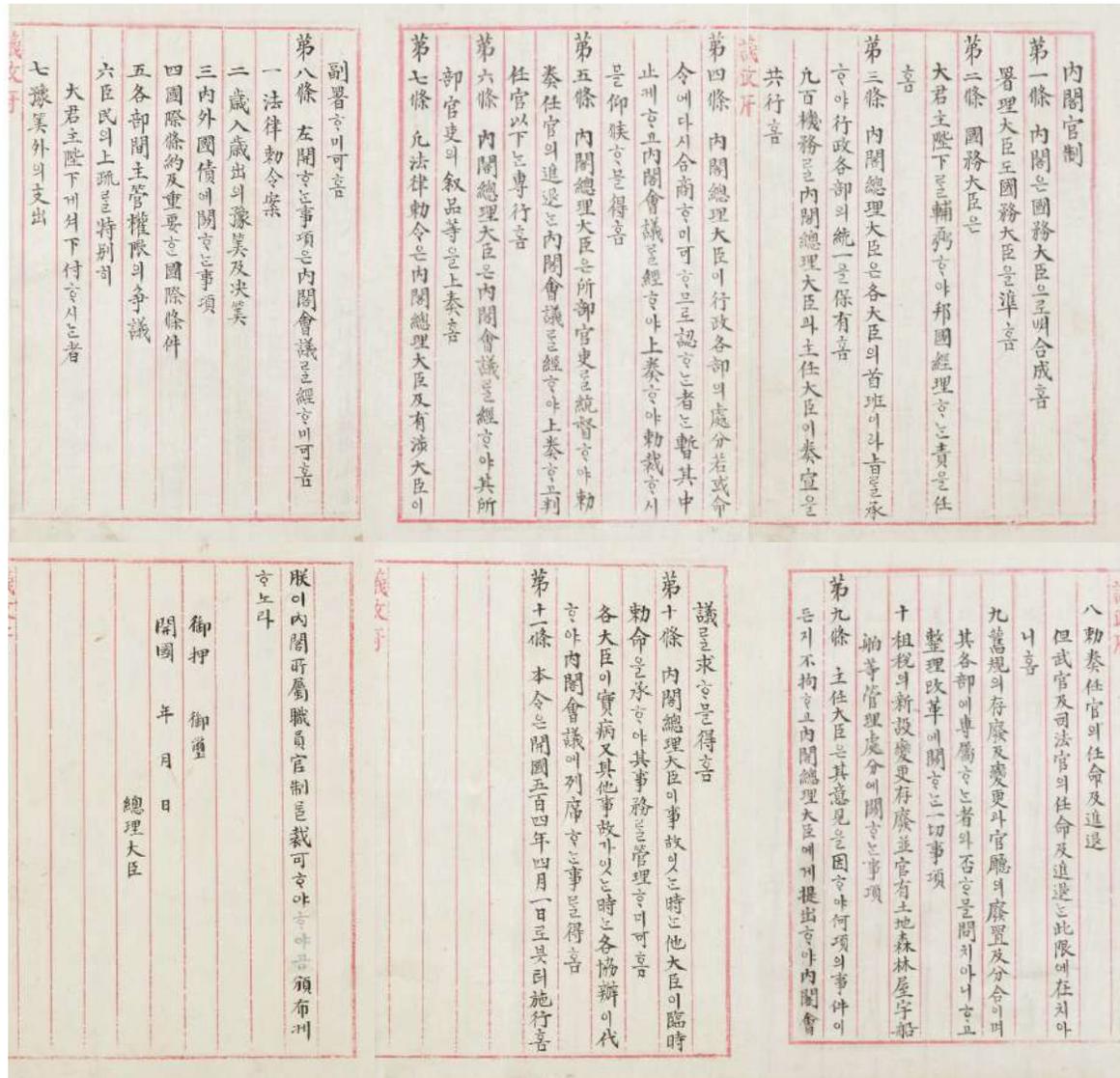
勅令案으로思考호니別紙갓티閣議決호는後에

裁可하시믈

奏請하시미可하므로認하노이다

勅令案

別紙갓티



도판 4-8. 內閣編錄課(朝鮮) 編, 奎17705-v.1. 「의주議奏제 1호第一號, 첨부문서 勅令案(內閣官制)」, 1895년 3월 21일, 004a, b / 005a, b / 006a / 007a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5_00&vol_no=0001

內閣官制

第一條 內閣은國務大臣으로써合成함

署理大臣도國務大臣을準함

第二條 國務大臣은

大君主陛下를輔弼함이야邦國經理하는責을任함

第三條 內閣總理大臣은各大臣의首班이라늘承함이야行政各部의統一을保有함

凡百機務를內閣總理大臣과主任大臣이奏宣을共行함

第四條 內閣總理大臣이行政各部의處分若或命令에다시商量함이可함으므로認하는者는暫其中止케하고內閣會議를經함이야上奏함이야勅裁함시물仰候함을得함

第五條 內閣總理大臣은所部官吏를統督함이야勅奏任官의進退는內閣會議를經함이야上奏함고判任官以下는專行함

第六條 內閣總理大臣은內閣會議를經함이야其所部官吏의叙品等을上奏함

第七條 凡法律勅令은內閣總理大臣及有涉大臣이副署함이可함

第八條 左開하는事項은內閣會議를經함이可함

一 法律勅令案

二 歲入歲出의豫算及決算

三 内外國債에關하는事項

四 國際條約及重要한國際條件

五 各部間主管權限의爭議

六 臣民의上疏를特別히

大君主陛下게서下付함시는者

七 豫算外의支出

八 勅奏任官의任命及進退

但武官及司法官의任命及進退는此限에在치아니함

九 舊規의存廢及變更과官廳의廢置及分合이며其各部에專屬하는者와否함을問치아니함고整理改革에關하는一切事項

十 租稅의新設變更存廢並官有土地森林屋宇船舶等管理處分判關하는事項

第九條 主任大臣은其意見을因함이야何項의事件이든지不拘함고內閣總理大臣에게提出함이야內閣會議를求함을得함

第十條 內閣總理大臣이事故잇는時는他大臣이臨時勅命을承함이야其事務를管理함이可함

各大臣이實病及其他事故가잇는時는各協辦이代함이야內閣會議에列席하는事를得함

第十一條 本令은開國五百四年四月一日로부터施行함

朕이內閣所屬職員官制를裁可함이야頒布케함노라

御押 御璽

開國 年月日

總理大臣

2-4. 관공체官公體 441자, 56 날자, 주본奏本, 주의奏議, 의주議奏, 1895, 1896년

2-4-1 (1). 관공체官公體 133자, 33 날자, 「주본奏本 제91호第九十一號」, 1895년 1월 29일

가	가	가	고	고	고	고	기	나
나	나	니	니	니	니	니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다	디
도	리	라	로	로	로	를	를	를
를	를	를	며	며	며	며	며	미
비	신	싸	싸	야	야	야	에	에
에	에	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2-4-1 (2). 관공체官公體 133자, 33 날자, 「주본奏本 제91호第九十一號」, 1895년 1월 29일

은	을	을	외	으	으	은	유	은
은	은	은	은	은	유	은	은	은
은	을	을	을	의	이	이	이	읍
읍	지	지	지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호	호		

2-4-2. 관공체官公體 25자, 12 낱자, 「주본奏本 제92호第九十二號」, 1895년 1월 29일



2-4-3. 관공체官公體 23자, 13 낱자, 「주본奏本 제93호第九十三號」, 1895년 1월 29일



2-4-4. 관공체 官公體 36자, 19 날자, 「주의奏議, 청의서請議書 제2호第貳號」, 1896년 11월 4일

표	기	니	라	로	로	로	를	미
야	에	에	에	에	으	으	은	을
을	을	을	의	이	이	이	케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2-4-5. 관공체官公體 34자, 23 날자, 「의주議奏 제1호第一號, 內閣官制」, 1895년 3월 21일

갓	갓	늑	노	너	다	타	로	로
툼	므	믄	미	시	시	야	예	으
은	의	이	이	세	티	티	호	흥
후	후	후	후	후	후	후		

2-4-6 (1). 관공체官公體 190자, 38 날자, 「의주議奏 제1호第一號, 첨부문서 勅令案, 內閣官制」, 1895년 3월 21일

가	게	계	고	고	고	고	과	과
노	니	니	느	느	느	느	느	느
느	느	느	느	느	느	느	느	느
느	다	도	든	라	라	로	로	로
를	를	를	를	를	를	를	를	를
를	를	를	를	며	미	미	미	미
므	물	불	물	물	붓	셔	시	시
시	아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예	예	예
외	외	외	외	외	외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잇	잇	지	치	치
찌	찌	터	흙	흙	흙	흙	흙	흙

2-4-6 (3). 관공체官公體 190자, 38 날자, 「의주議奏 제1호第一號, 첨부문서 勅令案, 內閣官制」, 1895년 3월 21일



3. 칙령勅令의 관공체官公體

3-1. 칙령勅令

임금이 관부官府에 내리는 명령의 일종이다.

칙령은 그 자체만으로 법의 효력이 있었다. 칙령들을 모아서 법전 法典을 편찬하였다. 조선에서는 고종高宗이 황제皇帝로 즉위한 이후에 쓰여 법으로 구실을 하였다. 그 이전에는 중국의 임금이 조선의 임금에게 보내는 외교 문서 가운데 한 종류[勅]를 가리켰다.

칙령勅令, 한국고전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1-26, [19世紀末-20世紀初(高宗31年-隆熙4年:1894-1910)], 책 권수: 26冊, 圖, 筆寫本

한글이 포함된 순검巡檢 징벌 규례를 재가裁可하여 반포하는 칙령勅令 제13호(1894년 12월 10일)는 42, 43쪽에 인용하였고, 공문식公文式的 개정改正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케 하는 칙령勅令 제86호(1895년 5월 8일)는 44, 45쪽에 인용하였으며,

3-1-1. 개성부경력開城府經歷을 판관判官으로 개칭改稱하고 기직권其職權은 사도례四都例를 의依호라는 칙령勅令 제32호(1895년 1월 29일),

3-1-2. 짐朕이 내각관제內閣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는 칙령勅令 제38호(1895년 3월 25일),

3-1-3. 의학교관제醫學校官制인 칙령勅令 제7호(1899년 3월 24일),

3-1-4. 병원관제病院官制인 칙령勅令 제14호(1899년 4월 24일),

3-1-5. 대한의원관제大韓醫院官制인 칙령勅令 제9호(1907년 3월 10일)를 인용한다.

3-2. 관공체官公體 631자, 49 낱자, 칙령勅令, 1894년, 1895년, 1899년, 1907년

3-2-1. 관공체官公體 198자, 34 낱자,

「칙령勅令 제13호第十三號」, 1894년 12월 10일

3-2-2. 관공체官公體 9자, 8 낱자,

「칙령勅令 제86호第八十六號」, 1895년 5월 8일

3-2-3. 관공체官公體 9자, 8 낱자,

「칙령勅令 제32호第三十二號」, 1895년 1월 29일

3-2-4. 관공체官公體 7자, 6 낱자,

「칙령勅令 제38호第三十八號」, 1895년 3월 25일

3-2-5. 관공체官公體 137자, 27 낱자,

「칙령勅令 제7호第七號, 醫學校官制」, 1899년 3월 24일

3-2-6. 관공체官公體 126자, 25 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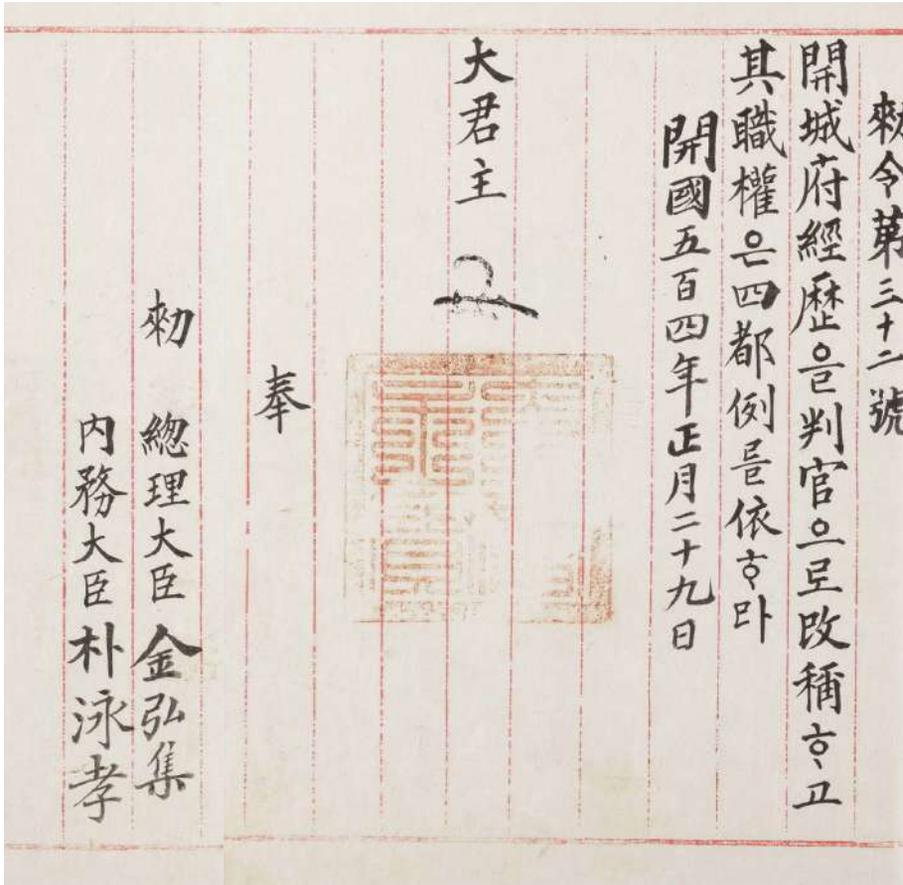
「칙령勅令 제14호第十四號, 病院官制」, 1899년 4월 24일

3-2-7. 관공체官公體 145자, 21 낱자,

「칙령勅令 제9호第九號, 大韓醫院官制」, 1907년 3월 10일

3-1. 칙령勅令

3-1-1. 「칙령勅令 제32호第三十二號, 개성부경력開城府經歷을 관판判官으로 개칭改稱하고 기직권其職權은 사도례四都例를 의依하라」,
1895년 1월 29일



勅令第三十二號

開城府經歷을判官으로改稱하고
其職權은四都例를依하라

開國五百四年正月二十九日

大君主[手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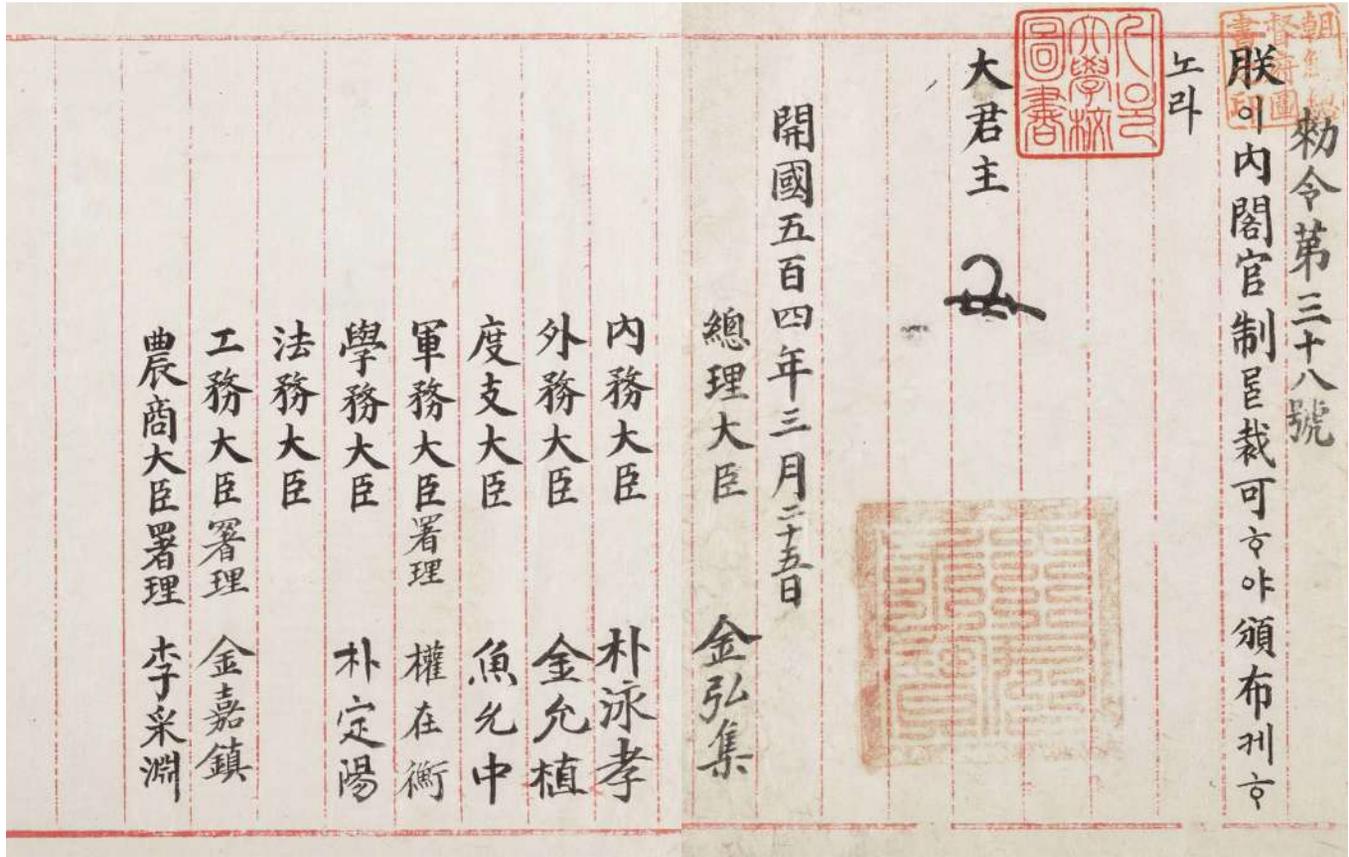
奉

勅 總理大臣金弘集
內務大臣朴泳孝

도판 4-9.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1, 「칙령勅令 제32호第三十二號」, 1895년 1월 29일, 035a, b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6_00&vol_no=0001

3-1-2. 「칙령勅令 제38호第三十八號, 朕이內閣官制를裁可하야頒布케하노라」, 1895년 3월 25일



도판 4-10.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2, 「칙령勅令 제38호第三十八號」, 1895년 3월 25일, 001a, b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6_00&vol_no=0002

勅令第三十八號

朕이內閣官制를裁可하야頒布케하노라

大君主[手決]

開國五百四年三月二十五日

總理大臣 金弘集

內務大臣 朴泳孝

外務大臣 金允植

度支大臣 魚允中

軍務大臣署理 權在衡

學務大臣 朴定陽

法務大臣

工務大臣署理 金嘉鎮

農商大臣署理 李采淵

3-1-3. 「칙령勅令 제7호第七號, 醫學校官制」, 1899년 3월 24일



도판 4-11.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7, 「칙령勅令 제7호第七號, 醫學校官制」, 1899년 3월 24일, 016a, b / 017a, b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6_00&vol_no=0007

勅令第七號

醫學校官制

第一條 醫學校는 國民에게 內外各種醫術을 專門으로 教授하는 處로 定함이라

第二條 醫學校에 修業年限은 三箇年으로 定함이라

第三條 醫學校는 學部の 直轄이니 經費는 國庫로 支辦함이라

第四條 醫學校에 學科及程度와 其他規則은 學部大臣이 定함이라

第五條 醫學校에 左開한 職員을 置함이라

學校長 一人 奏任

教 官 三人以下 奏任或判任

書 記 一人 判任

第六條 學校長은 醫學에 熟鍊한 人으로 任命하여 一切校務를 掌理하며 所屬職員과 學徒를 監督함이라

第七條 教官은 學徒의 教授를 掌하며 學徒를 監督함이라

第八條 書記는 上官의 命을 承하여 庶務會計에 從

事함이라

第九條 時宜를 因하여 學校長을 學部 奏任官이 兼任도 하며 教官을 學校長이 兼任함도 得함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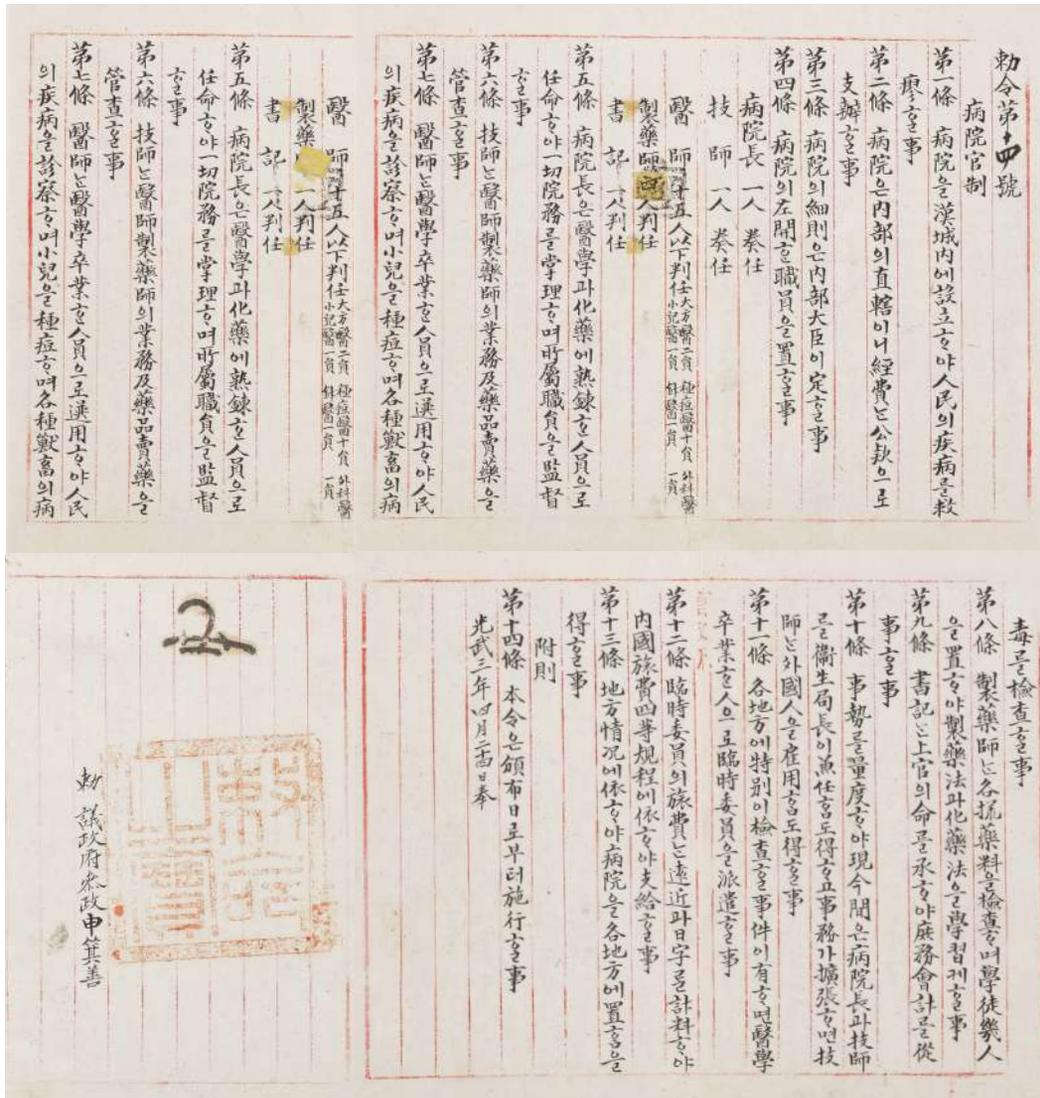
第十條 教官은 或外國人을 雇用하여 充함도 得하나 其員數는 學部大臣이 必要한 處에 應하여 從宜妥定함이라

第十一條 教官을 外國人으로 以하여 充할 時에 是教授 掌管함이라

第十二條 地方情況에 依하여 醫學校를 地方에 도置함을 得함이라

第十三條 本令은 頒布日로부터 施行함이라

光武三年三月二十四日奉



도판 4-12.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7, 「칙령勅令 제14호第十四號, 病院官制」, 1899년 4월 24일, 033a, b / 034a, b / 035a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6_00&vol_no=0007

勅令第十四號

病院官制

第一條 病院을漢城內에設立하야人民의疾病를救
瘳할事

第二條 病院은內部の直轄이니經費는公款으로
支辦할事

第三條 病院의細則은內部大臣이定할事

第四條 病院의左開한職員을置할事

病院長 一人 奏任

技 師 一人 奏任

醫 師 十五人以下判任 大方醫二員 種痘醫十員 外科醫一員
小兒醫一員 針醫一員

製藥師 四人判任

書 記 一人判任

第五條 病院長은醫學과化藥에熟鍊한人員으로
任命하야一切院務를掌理하며所屬職員을監督
할事

第六條 技師는醫師製藥師의業務及藥品賣藥을
管査할事

第七條 醫師는醫學卒業한人員으로選用하야人民
의疾病을診察하며小兒을種痘하며各種獸畜의病

毒를檢査할事

第八條 製藥師는各樣藥料을檢査하며學徒幾人
을置하야製藥法과化藥法을學習케할事

第九條 書記는上官의命를承하야庶務會計를從
事할事

第十條 事勢를量度하야現今間은病院長과技師
를衛生局長이兼任함도得하고事務가擴張하면技
師는外國人을雇用함도得할事

第十一條 各地方에特別이檢査할事件이有하면醫學
卒業한人으로서臨時委員을派遣할事

第十二條 臨時委員의旅費는遠近과日字를計料하야
內國旅費四等規程에依하야支給할事

第十三條 地方情況에依하야病院을各地方에置함을
得할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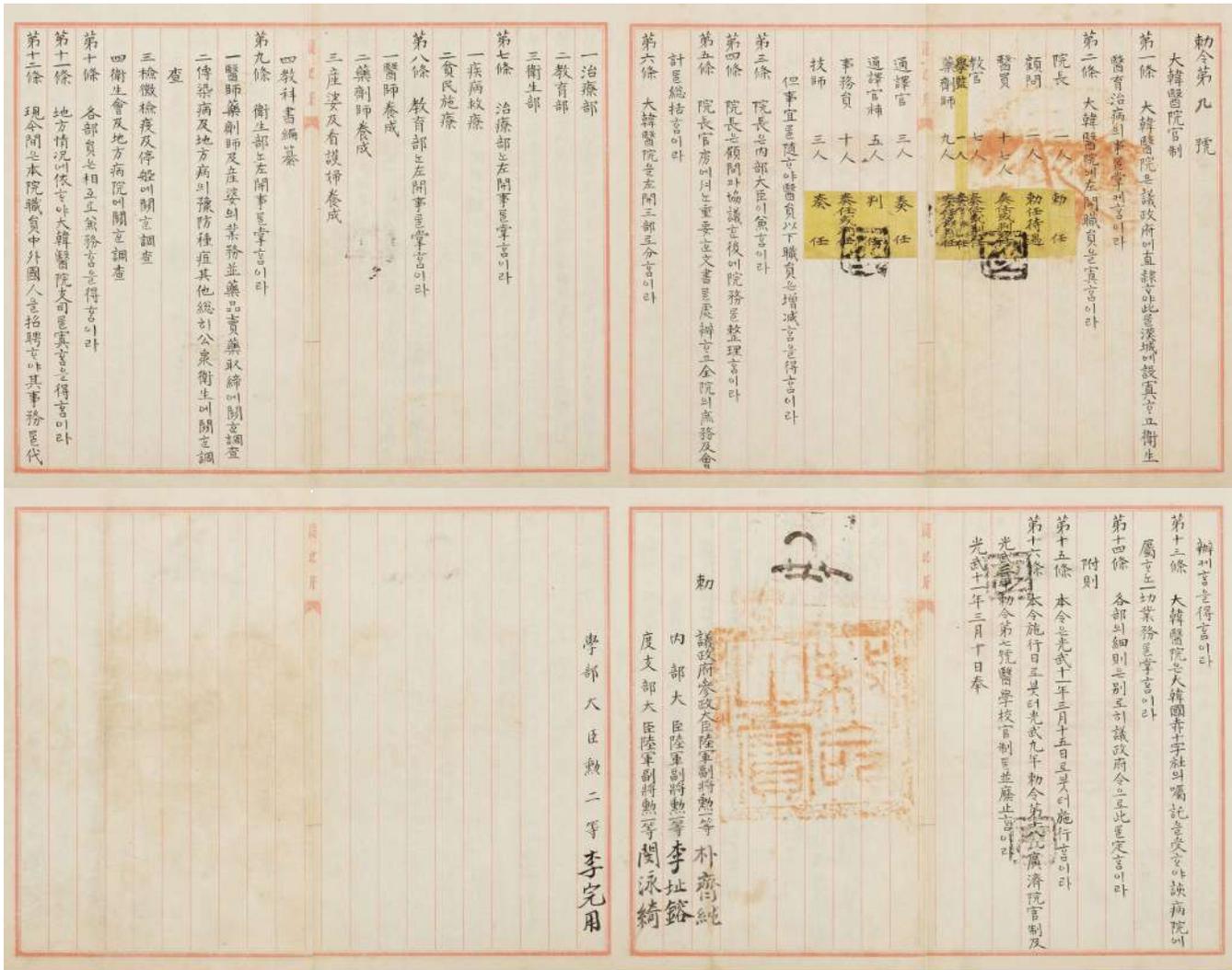
附則

第十四條 本令은頒布日로부터施行할事

光武三年四月二十四日奉

勅 議政府參政申箕善

3-1-5. 「칙령勅令 제9호 第九號, 大韓醫院官制」, 1907년 3월 10일



도판 4-13.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19, 「칙령勅令 제9호 第九號, 大韓醫院官制」, 1907년 3월 10일, 014a, b / 015a, b / 016a, b / 017a, b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6_00&vol_no=0019

勅令第九號

大韓醫院官制

第一條 大韓醫院은 議政府에 直隸하야 此를 漢城에 設寔하 且 衛生醫育治病의 事를 掌케 함이라

第二條 大韓醫院에 左開 職員을 寔함이라

院長 一人 勅任
顧問 一人 勅任待遇
醫員 十七人 奏任或判任
教官 七人 奏任或判任
學監 一人 奏任
藥劑師 九人 奏任或判任
通譯官 三人 奏任
通譯官補 五人 判任
事務員 十人 奏任或判任
技師 三人 奏任

但 事宜를 隨하야 醫員以下 職員은 增減함을 得함이라

第三條 院長은 內部大臣이 兼함이라

第四條 院長은 顧問과 協議하 後에 院務를 整理함이라

第五條 院長官房에서 重要한 文書를 處辦하 且 全院의 庶務及會計를 總括함이라

第六條 大韓醫院을 左開 三部로 分함이라

一 治療部
二 教育部
三 衛生部

第七條 治療部는 左開 事를 掌함이라

一 疾病救療
二 貧民施療

第八條 教育部는 左開 事를 掌함이라

一 醫師養成
二 藥劑師養成
三 產婆及看護婦養成
四 教科書編纂

第九條 衛生部는 左開 事를 掌함이라

一 醫師藥劑師及產婆의 業務並 藥品賣藥取締에 關한 調査
二 傳染病及地方病의 豫防種痘其他 總히 公衆衛生에 關한 調査
三 檢徽檢疫及停船에 關한 調査
四 衛生會及地方病院에 關한 調査

第十條 各部員은 相互로 兼務함을 得함이라

第十一條 地方情況에 依하야 大韓醫院 支司를 寔함을 得함이라

第十二條 現今間은 本院 職員中 外國人을 招聘하야 其事務를 代辦케 함을 得함이라

第十三條 大韓醫院은 大韓國 赤十字社의 囑託을 受하야 該病院에 屬하 且 一切業務를 掌함이라

第十四條 各部의 細則은 別로 議政府 令으로 此를 定함이라

附則

第十五條 本令은 光武十一年三月十五日로부터 施行함이라

第十六條 本令 施行日로부터 光武九年 勅令第十八號 廣濟院官制及光武三年 勅令第七號 醫學校官制를 廢止함이라
光武十一年三月十日奉

勅 議政府參政大臣陸軍副將勳一等 朴齊純
內 部 大 臣 陸 軍 副 將 勳 一 等 李 址 鎔
度 支 部 大 臣 陸 軍 副 將 勳 一 等 閔 泳 綺
學 部 大 臣 勳 二 等 李 完 用

3-2. 관공체官公體 631자, 49 날자, 칙령勅令, 1894년, 1895년, 1899년, 1907년

3-2-1 (1). 관공체官公體 198자, 34 날자, 「칙령勅令 제13호第十三號」, 1894년 12월 10일

가	가	가	게	고	고	기	기	느
니	니	니	느	느	느	느	느	느
느	느	느	느	느	느	느	느	느
느	느	다	디	도	도	되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를	를	를	를	를	를
를	를	를	를	못	못	며	며	며
며	브	미	미	미	미	미	미	미

3-2-1 (2). 관공체官公體 198자, 34 날자, 「칙령勅令 제13호第十三號」, 1894년 12월 10일

켜	켜	켜	시	스	스	써	아	아
야	야	야	야	야	야	햐	야	햐
야	야	야	야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으	으	은	은	은
은	은	은	은	을	을	을	을	을
을	을	을	을	을	을	을	을	을
을	을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이	이	지	지

3-2-1 (3). 관공체官公體 198자, 34 날자, 「칙령勅令 제13호第十三號」, 1894년 12월 10일

지	히	히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3-2-2. 관공체官公體 9자, 8 날자, 「칙령勅令 제86호第八十六號」, 1895년 5월 8일

노 라 야 을 의 이 게 흥 흥

3-2-3. 관공체官公體 9자, 8 날자, 「칙령勅令 제32호第三十二號」, 1895년 1월 29일

고 으 은 을 타 로 를 흥 흥

3-2-4. 관공체官公體 7자, 6 날자, 「칙령勅令 제38호第三十八號」, 1895년 3월 25일

노 라 야 이 게 흥 흥

3-2-5 (1). 관공체官公體 137자, 27 날자, 「칙령勅令 제7호第七號, 醫學校官制」, 1899년 3월 24일

게	나	니	느	느	느	느	느	느
느	테	도	도	도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를
를	를	를	를	를	만	씨	씨	씨
부	석	소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와	으	으	으	으	은	은	은

3-2-5 (2). 관공체官公體 137자, 27 낱자, 「칙령勅令 제7호第七號, 醫學校官制」, 1899년 3월 24일

은	은	은	을	을	을	을	을	을
을	을	의	의	의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러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가	고	과	파	과	과	니	느	느
느	느	느	느	도	도	로	로	로
로	로	를	를	를	를	를	를	를
를	며	며	며	며	면	면	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에
에	에	에	에	에	으	으	으	으
은	은	은	은	은	을	을	을	을
을	을	을	을	을	을	을	을	을

3-2-6 (2). 관공체官公體 126자, 25 날자, 「칙령勅令 제14호第十四號, 病院官制」, 1899년 4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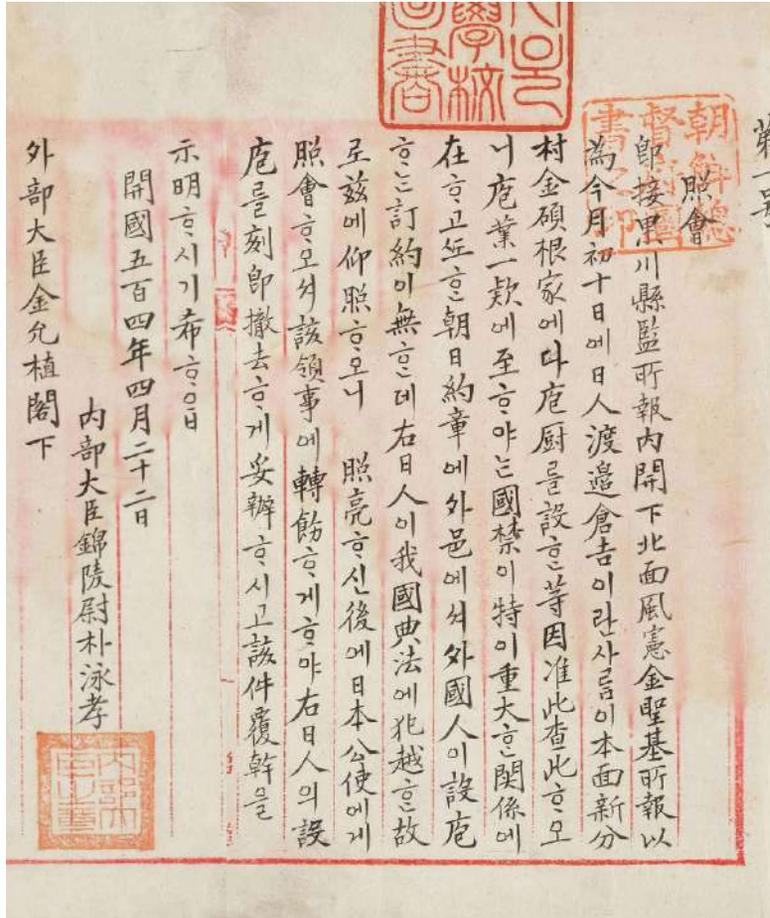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이	이	이	이	이	계	터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고	고	파	노	노	노	노	노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로	로
로	로	로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붓	붓
셔	야	야	야	야	야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으
은	은	은	은	은	은	은	은	은

을	을	을	을	을	을	을	을	의
의	의	의	의	의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케	케	터	터
히	히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함	함
함	함	함	함	함	함	함	함	함
함	함	함	함	함	함	함	함	함
함								

4. 내부내거문內部來去文의 관공체官公體

4-1. 「조회照會 제1호第一號, 果川縣監 報告內 “下北面 風憲 金聖基 보고에 따르면 日人 渡邊倉吉이 新分村 金碩根家에 庖廚를 設하였다고 한다”고 하나 이는 國禁이며 朝日約章에 없는 것이므로 日本公使가 領事에게 轉飭하여 撤去케 해달라, 1895년 4월 22일



第一號

照會

即接果川縣監所報內開下北面風憲金聖基所報以
為今月初十日에 日人 渡邊倉吉이 本面 新分
村 金碩根家에 다 庖廚를 設하 因准此查此 故
니 庖業一款에 至하야는 國禁이 特이 重大 關係에
在하 고 또 朝日約章에 外邑에서 外國人이 設 庖
하는 訂約이 無하 데 右 日人이 我國 典法에 犯越하 故
로 茲에 仰照하오니 照亮하신後에 日本公使에게
照會하 오서 該領事에 轉飭하 게 하야 右 日人의 設
庖를 刻即 撤去하 게 妥辦하 시고 該件 覆幹을
示明하 시기 希하 矣

開國五百四年四月二十二日

內部大臣 錦陵尉 朴泳孝

外部大臣 金允植 閣下

도판 4-14. 外部(朝鮮) 編, 奎17794-v.1, 내부내거문內部來去文,
「조회照會 제1호第一號」, 1895년 4월 22일, 001a, b쪽

규장각한글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
book_cd=GK17794_00&vol_no=0001

4-2. 관공체官公體 65자, 23 날자, 내부내거문內部來去文, 「조희照會 제1호第一號」, 1895년 4월 22일

게	게	게	고	고	기	니	니	느
느	다	테	란	로	를	를	름	사
시	시	신	야	야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모	모
모	물	의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읍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5. 관급증서官給證書의 관공체官公體

5-1. 「윤병학尹秉學의 대한의원大韓醫院 졸업증서卒業證書」, 1907년 7월 30일



第拾壹號

卒業證書

尹 秉學
二十五年

右員이本院의醫學全科를
修了하여卒業試驗에及第
하였기므로此證書를授與하
노라
光武十一年七月三十日

大韓醫院教官正六位勳四等小竹武次
全 正 三 品劉世煥
全 正 三 品劉秉琰
全 九 品崔奎翼

大韓醫院教育部長正六位勳四等小竹武次

도판 4-15. 「윤병학尹秉學의 대한의원大韓醫院 졸업증서卒業證書」, 1907년 7월 30일

자료 제공 : 황상익, 2024. 1. 16.

대한의원大韓醫院

대한의원大韓醫院은 당대 동아시아 전역에서도 손꼽을 정도의 규모와 시설을 자랑하는 초대형의 최신식 병원이었다. 통감부統監府가 대한의원을 설립하도록 한 것은 일차적으로 병원을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에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러일전쟁 이후 많은 일본인이 한국에 들어왔고, 그에 따라 '질병의 교류'도 확대되었다. 통감부는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한국의 질병이 일본으로 유입되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 진보된 의료 및 위생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한제국 정부와 황실이 설립한 병원을 '통합'해 대한의원을 만든 것은 한국인들이 서양 근대 의학을 주체적으로 수용해 온 역사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1907년 3월에 제정 공포된 관제에 따르면, 대한의원에는 17명의 의원과 7명의 교관, 9명의 약제사 등 30명 이상의 의료진이 있었으며, 치료부와 교육부, 위생부를 두어 진료뿐 아니라 중독 사무, 방역 및 위생 사무, 빈민에 대한 무료 시료 등도 담당하도록 했다. 이는 광제원과 대한국적십자병원의 사무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었다.

대한의원 관제는 1907년 12월 말에 1차 개정되어 19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으로 대한의원은 의정부 직할에서 내부 소속으로 관제상 지위가 낮아졌으며, 위생부가 위생시험부로 바뀌었다. 위생사무는 성격상 경찰행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병원이 담당할 일은 아니었다. 대한의원이 위생업무를 경찰에 넘긴 데에는 이미 일본인 경무 고문이 한국 경찰행정 전반을 감독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려도 작용했다. 이때 교육부도 의육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는 대한의원을 내부 직속 기관으로 바꿈에 따라 학부 소관인 '교육 사무와 혼동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었다. 제2차 관제 개정은 1909년 2월 1일에 이루어졌다. 이 개정으로 의육부는 대한의원 부속의학교로 개편되었고, 황제가 직접 임명하는 칙임의 관습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의사의 지위를 높였다. 또 조수직을 신설하여 의육부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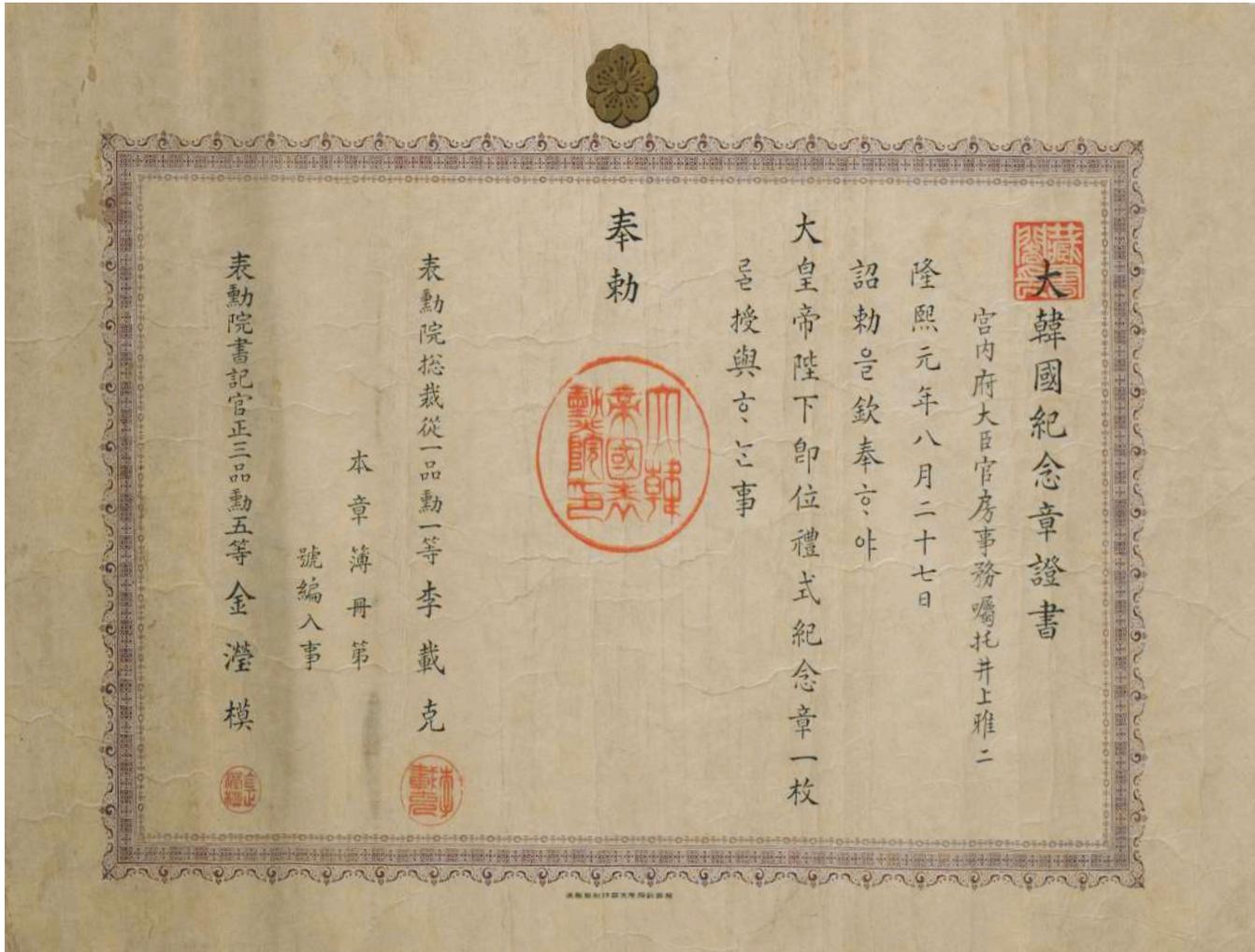
생들의 진로를 열어주었다.

대한의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치과 등 전문 분과별로 나누어진 근대적 종합병원이었으며, 정교하게 짜인 교과과정에 따라 4년제 의학교육을 실시했다. 의학교 제4회, 제5회 입학생들은 대한의원 교육부 및 의육부醫育部의 제1회, 제2회 졸업생이 되었는데, 이들은 의학교 시절과는 달리 4년간 교육을 받았다. 학생들은 이론과 임상을 결합한 교육을 받았고, 졸업 후에는 대한의원이나 자혜의원의 조수가 되어 임상 경험을 더 쌓을 수 있었다. 의육부가 부속의학교로 개편된 뒤에는 약학과, 산파과, 간호과가 추가되어 종합 의료인 양성기관으로 발전했다. 대한의원은 국립병원으로서 빈민이나 공상자公傷者를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해온 전통을 승계하면서도, 최고 수준의 의술과 시설을 갖춘 일반 진료 기관으로 운영되었다. 개원 직후에는 무료 진료 대상을 한국인으로 한정했으나, 1909년 10월부터는 일본인 빈민도 무료 진료 대상에 포함했다.

개항 이후 서양 선교병원이나 일본인들이 개항장에 설립한 병원은 각각 자국의 의학 체계를 이식하고자 했고, 그 때문에 20세기 초 우리나라의 근대 의학은 확고한 표준을 갖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원은 근대 의학의 분과 및 교육 체계에 표준을 제시했다. 대한의원 창설을 계기로 근대 의학과 의료는 국가 보건 의료사업의 확실한 중심이 되었으며, 대한의원에서 교육받은 한국인 의학도들은 우리 사회에 서양 근대 의학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대한의원』,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사진과 함께 보는 한국 근현대 의료문화사 1879-1960』, 웅진지식하우스, 파주, 2009년, 2019년, 42쪽, 43쪽

5-2. 「대한국기념장증서大韓國紀念章證書」, 1907년 8월 27일



도판 4-16. 「대한국기념장증서大韓國紀念章證書」, 왕실고문서 102, 1907년 8월 27일

원본 크기 : 32×43cm

자료 출처 : 왕실고문서 102 / 隆熙 元年(1907년) 8월 27일

자료 제공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20. 3. 2.

大韓國紀念章證書

官內府大臣官房事務囑托井上雅二

隆熙元年八月二十七日

詔勅을 欽奉 訶야

大皇帝陛下即位禮式紀念章一枚
를 授與 訶는 事

奉勅 大韓帝國表勳院印

表勳院 總裁從一品勳一等 李 載 克

本 章 簿 冊 第

號 編 入 事

表勳院書記官正三品勳五等 金 滢 模

순종 황제의 즉위 예식을 기념하여 표훈원에서 순종 황제의 조칙을 받아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 관방사무촉탁(官房事務囑託) 이노우에 마사지에게 수여한 대한국기념장증서(大韓國紀念章證書)이다.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을 계기로 일제의 강압에 의해 고종이 물러나고 순종이 즉위하였다. 이에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이 체결되어 일본인의 관리 임용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실상 대한제국의 정치는 일본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노우에 마사지 또한 그때 임명된 인사이다.

발급자는 표훈원총재종일품훈일등 이재극과 표훈원서기관정3품훈오등 김형모이다.

증서의 내용은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 관방사무촉탁(官房事務囑託) 이노우에 마사지(井上雅二)에게 융희 원년 8월 27일 조칙을 흥봉하여 대황제폐하(大皇帝陛下) 즉위(即位) 예식(禮式) 기념장(紀念章) 1매를 수여함.’이라고 하였으며, 봉칙 아래에는 대한제국표훈원인이 정 가운데에 있다. 출처: 고문서 대관 1권, 大韓國紀念章證書, 2010, 462쪽.

「1907년 대황제폐하즉위예식기념장」, 디지털장서각, jsg.aks.ac.kr/dir/view?dataId=JSG_RD00102

5-3. 관공체官公體 19자, 14 날자, 관급증서官給證書, 1907년

5-3-1. 관공체官公體 13자, 11 날자, 「윤병학尹秉學의 대한의원大韓醫院 졸업증서卒業證書」, 1907년 7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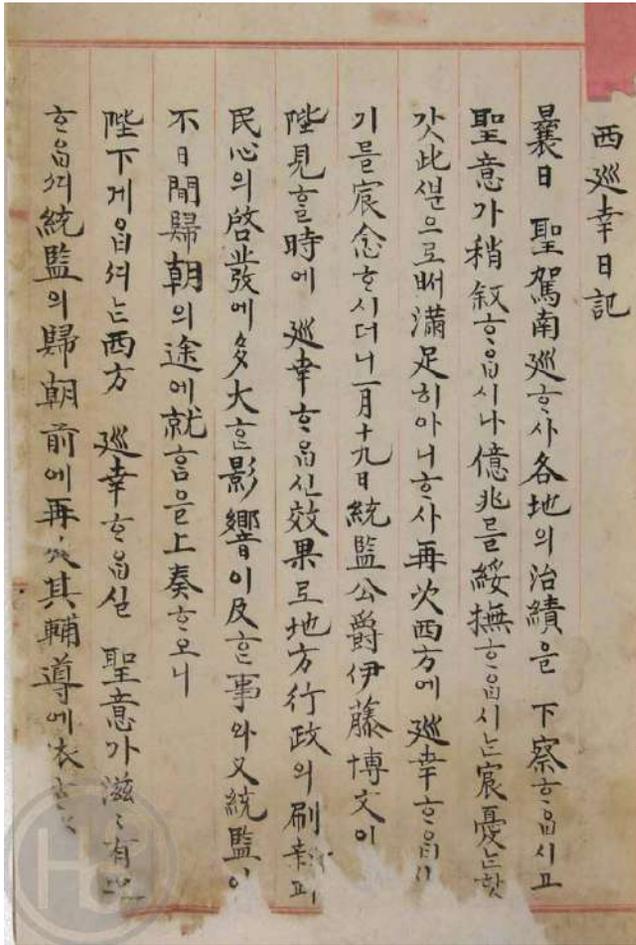
기	노	라	로	를	야	앗	에	의
이	하	하	하					

5-3-2. 관공체官公體 6자, 5 날자, 「대한국기념장증서大韓國紀念章證書」, 1907년 8월 27일

노	를	야	을	하	하
---	---	---	---	---	---

6.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의 관공체官公體

6-1.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1909년 1월 27일~2월 3일



도판 4-17.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원본 크기 : 26.8x19.0cm

작품 크기 : 39.0x30.0cm

자료 출처 : 화봉문고,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제81회 화봉현장경매』, 서울, 2022년, 3쪽, 14쪽

西巡幸日記

曩日 聖駕南巡 各地의 治績을 下察 聖意가 稍叙 億兆를 綏撫 民心의 啓發에 多大 影響이 及 統監이 不日 間歸朝의 途에 就 陛下게 上奏 統監의 歸朝前에 再次 其輔導에 依

도판 4-17은 2022년 제81회 화봉현장경매 서순행일기 표지 다음 첫 장이며, 훼손된 날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서순행일기*를 참고하였음. 두 종류의 필사본 서체 중 화봉현장경매 서순행일기의 서체가 대한의원개원칙서의 관공체 서체와 더 유사하다.

*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27.2x19.0cm / 필사본(筆寫本) / 선장(線裝), 1冊 133張 / 종이 / 국한문혼용

청구기호 K2-222

기록시기 1909년(隆熙 3)以後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서순행西巡幸

1909년(융희 3) 1월 말 ~ 2월 초 순종 황제가 평양을 비롯한 서북 지방을 순행한 일이다.

1909년 1월 27일 ~ 2월 3일 동안 순종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양서 지방을 순행하였다. 이는 1909년 1월 초에 대구, 부산, 마산 등을 순행한 남순행南巡幸에 이은 두 번째 순행이었다. 통감統監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은 1907년(융희 1) 새 황제로 등극한 순종이 대한제국인에게 황제로서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자 순종을 순행하게 하여 대중에 노출함으로써 황제로서의 인식을 공고히 하는 한편, 자신이 직접 배종하여 통감부統監府의 힘을 과시하였다.

순종의 서순행은 1월 7일부터 13일까지 이루어진 남순행에 이은 행차였다. 이러한 순종의 순행은 역대 왕이 도성 내의 종묘나, 도성 주변 선왕의 능에 행차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것이었다. 바로 일본 메이지 천황明治天皇의 순행을 본뜬 것이었다. 메이지 천황은 메이지유신 직후인 1868년(일본 명치 1)부터 20년간 6차례에 걸쳐 일본 각지를 순행하였으며, 이러한 순행은 신격화되어 있는 천황을 대중 앞에 드러냄으로써 유신 직후 불안한 일본 정세를 가라앉히고 천황을 중심으로 국가 구성원들의 통합과 자주적 국민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순종의 순행은 메이지 천황의 순행과도 다른 것이었다. 순행을 계획한 주체가 순종 자신이 아니라 통감 정치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통감부였다. 이 순행은 당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킨 통감 정치에 대한 한국 민들의 반일 감정을 달래고, 대한제국 황제의 건재함을 보여 통감 정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서순행은 1909년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7박 8일간 이루어졌으며 도시 간의 이동은 특별 궁정 열차를 이용하였다. 1월 27일 순종은 오전 8시에 남대문역을 출발해서 평양에 도착하여 하루를 묵은 뒤, 다음 날 정주를 거쳐 신의주에 도착하였다. 29일에 신의주에서 의주로 이동하여 머물렀으며, 30일에는 다시 신의주로 돌아와 머물렀다. 31일에는 정주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평양에 도착하였다. 31일과 2월 1일에 평양에 머물렀으며 2월 2일 평양에서 출발하여 황주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개성에 도착하였다. 2월 3일 개성에서 출발하여 오후 3시에 남대문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순종의 서순행에는 궁내부宮內府, 내각內閣, 통감부의 3개 부처에서 279명이 선발되어 호종하였다. 호종원 가운데에는 완순군完順君 이재완李載完, 궁내부 대신大臣 민병석閔丙奭, 시종원侍從院 경卿 윤덕영尹德榮, 내각 총리대신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내부內部 대신 송병준宋秉峻, 군부軍部 대신 이병무李秉武, 학부學部 대신 이재근李載崐 등 궁내부에서 201명, 내각에서 49명이 호종하였다. 일본인으로는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하여 궁내부 차관次官 고미야 사보마쓰小宮三保松, 내장원內藏院 이사理事 곤도 시로스케藤籙四郎介, 「대한의원大韓醫院」의관醫官 겸 전의典醫 스즈키 겐노스케鈴木兼之助 등 29인이 호종하였다[『순종실록』 2년 1월 21일].

순종은 서순행 시 서구식 대례복인 대원수복을 착용하였으며, 머릿도 단발을 갖추었다. 이러한 순종의 차림은 사람들의 단발과 양복에 거부감을 완화하는 효과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순종의 서순행시 통감부에서는 연도에 마중 나온 만민들에게 한일 양국 기를 들도록 하였는데, 이때 오산학교 학생들을 비롯하여 일장기를 거부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대한제국관보大韓帝國官報』,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황성신문皇城新聞』,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김소영, 『순종황제의 남·서순행과 충군애국론』, 한국사학보 39호, 2010.

이왕무, 『대한제국기 순종의 남순행 연구』, 정선문화연구30권 2호, 2007.

이왕무, 『대한제국기 순종의 서순행 연구 -서순행일기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31, 2011.

『서순행西巡幸』, 위키 실록사전, sillokwiki

『서순행西巡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성과포털, 한국학 기초자료사업 장서각 국가전자적 자료센터 구축사업, <http://waks.aks.ac.kr/> 박재감,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139~140쪽

6-2. 관공체 官公體 74자, 33 날자, 「서순행일기 西巡幸日記」, 1909년 1월 27일~2월 3일

가	가	갓	게	고	기	나	너	너
니	느	느	느	더	로	로	를	를
빠	사	사	셔	쨌	시	시	시	시
신	실	써	아	읍	읍	읍	읍	읍
읍	읍	읍	에	에	에	에	에	에
오	와	으	을	을	의	의	의	의
의	이	이	햇	히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제5장 국문시대國文時代 한국韓國개화기開化期 국어교과서國語教科書

(1894~1910년)의 국문서체國文書體

개화기開化期는 신문물의 유입, 서구 열강列強의 득세 등으로 근대 국가로의 이행을 나라 안팎에서 요청받던 시기이다.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은 이러한 내적 욕구와 외적 요구 사이에서 발생한 정치·사회적 사건으로, 근대 교육 체재의 정비도 갑오개혁과 그 흐름을 같이한다. 갑오개혁을 통해 국가의 교육을 관장하는 학무아문學務衙門이 설치되었고, 소학교小學校, 사범학교師範學校, 대학大學, 전문학교專門學校 등의 학교 설립이 고시되었으며, 1895년부터 각종 학교 관제官制와 규칙規則이 제정制定, 공포公布되었다.

‘개화기開化期’라는 용어에는 응축된 사회 변혁의 의지와 함께 점증하는 외세가 만들어낸 시대의 수많은 변인變因들이 자리 잡고 있다. 개화기는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근대교육이 제도적으로 마련된 출발점이자 기원이었다.

근대 교육의 도정道程은 내재적 개혁이었던 갑오개혁甲午改革의 흐름 안에서 태동했다. 그러나 그 지향점은 급진적인 만큼 주체적이나 외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갑오개혁의 한계와 고스란히 통한다. 갑오개혁甲午改革에는 동학혁명東學革命에 따른 민중의 요구와 함께, 청일전쟁淸日戰爭에서 승리한 일본日本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 교과서의 체재와 기술은 한국 어문의 형성과 직결되어 있고,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들은 근대 지知的 계몽啓蒙과 ‘국민’이라는 주체 형성과 궤를 같이한다.

개화기開化期 국어교과서國語教科書에 담긴 근대 국어교육의 출발점이라는 역사적 함의畝意는 크다. 여기에는 시대적 과제와 마주한 사회의 요구要求와 이상理想이 아로새겨져 있고, 근대국가 성립에 필요한 근대 지知와 공통감각의 원천이 자리 잡고 있다.

요컨대 교과서는 국가와 국민, 개인과 사회가 새롭게 재편되고 형성되는 구체적인 지표였던 셈이다.

『국민소학독본』에서 『부유독습』에 이르는, 1895년부터 1910년 사이에 간행된 국어교과서와 독본류 14권은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생경한 단어와 한자 표현 때문에 원문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운 전대의 텍스트이다.

『2012년 가을 문턱에 편역자 일동, 총서(한국개화기 국어교과서) 발간사에서』, 강진호 편역, 『국민소학독본(학부 편집국 편찬)』, 도서출판 경진, 광명, 2012년, 5, 6쪽

근대적 학제에 맞추어 대한제국 학부가 편찬한 최초의 교과서는 『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1895)이었다. 1895년 2월 고종의 교육입국 조서에서는 국가의 부강이 국민의 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는데, 『국민소학독본』은 그러한 필요에 부합하여 다양한 근대적 지식을 담아 국민을 계몽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난 텍스트이다. 『국민소학독본』 이후 학부는 『소학독본小學讀本』(1895), 『신정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1896), 『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본通學校學徒用 國語讀本』(1907) 등을 개발하였으나, 근대 교육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교과서들의 내용, 수준, 편차, 성격 등은 일관된 기준으로 묶이지 않는다. 또한 ‘독본 讀本’, ‘필독必讀’, ‘필지必知’의 제목을 단 상당수의 민간 교과서가 공존하는 형국이었다.

양정섭, 『한국개화기 국어교과서』, 경진출판, 2021년, mykyungjin.tistory.com/91

한글의 부흥기復興期인 국문시대國文時代(1894~1910년)에
 활용된 국문서체國文書體를 조망하기 위하여 한국 개화기의
 다양한 국어교과서國語教科書를 인용한다.

1.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士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경성京城,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2.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5년
3.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소학독본小學讀本』,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5년
4.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신정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6년
5. 리봉운, 리규대, 『국문정리國文正理』, 국문국國文局, 경성京城, 1897년
6. 대한국민교육회大韓國民教育會, 『초등소학1初等小學 一』, 대한국민교육회장판大韓國民教育會藏板, 1906년
7. 학부學部, 『보통학교학도용普通學校學徒用 국어독본國語讀本, 권1卷一』,
 한국정부인쇄국인쇄韓國政府印刷局印刷, 鉛活字本, 1907년 初版, 1908년 再版, 1909년 參版, 1909년 四版
8. 정인호鄭寅琥, 『최신초등소학1最新初等小學 一』, 옥호서림玉虎書林, 경성京城, 1908년
9. 장지연張志淵, 『여자독본女子讀本 상』, 광학서포廣學書鋪, 경성京城, 1908년
10. 유길준兪吉濬, 『노동야학독본勞動夜學讀本』, 경성일보사京城日報社, 경성京城, 1908년
11. 유길준兪吉濬, 『대한문전 전 大韓文典 全』, 용문관隆文館, 경성京城, 1909년
12. 현재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13. 周時經, 『國語文法 全』과 주시경체周時經體
 - 13-1. 周時經, 『國語文法 全』, 博文書館, 京城, 1910년
 - 13-2. 주시경체周時經體

1.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士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경성京城,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도판 5-1.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士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경성京城,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사민필지士民必知는 1889년 미국인 선교사 호머 헐버트Hulbert, H.B가 세계의 지리와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저술을 시작하여 1891년 1월에 첫 책을 출판한 세계 지리서이다.

호머 헐버트는 1886년, 고종 23년 조선의 초청으로 육영공원育英公院 교사로 취임해 세계의 지리지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의 교과서 격인 『사민필지』를 저술했다. 1891년 한글본으로 초판이 나왔고, 1895년 학부學部에서 백남규白南奎 · 이명상李明翔 등이 왕명으로 한문본 『사민필지』를 간행했다.

한편, 1906년에는 아처Archer의 도움으로 『Geographical Gazetteer of the World』라는 이름의 수정판이 출간되었다.

초판한글본은 17행×28자 161면이며, 10장의 지도가 수록되었다. 한문본은 10행×20자 71장張으로 되어 있으며, 지도는 실려 있지 않다. 한글본 목차는 제1장 지구, 제2장 유럽주, 제3장 아시아주, 제4장 아메리카주, 제5장 아프리카주로 되어 있고, 총론에서는 태양계와 그 현상, 지구의 모습, 기후 · 인력 · 일월식, 그 밖에도 지구상의 현상, 대륙과 해양, 인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주의 총론은 각 주의 위치 · 지형 · 면적 · 기후 · 인구 · 인종을 적고, 이어 각 주별로 주요 국가의 위치 · 방향 · 기후 · 산물 · 국제 · 인구 · 씨족 · 수도 · 산업 · 군사 · 학업 · 종교 · 나라나무 등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기술상의 특징은 한국을 기준으로 한 점인데, 예를 들면 “일본: 일기는 대한보다 좀 덥고 습기가 많으며…….”와 같은 내용이 그것이고, 각국의 수출입액은 한국의 화폐단위인 ‘원’으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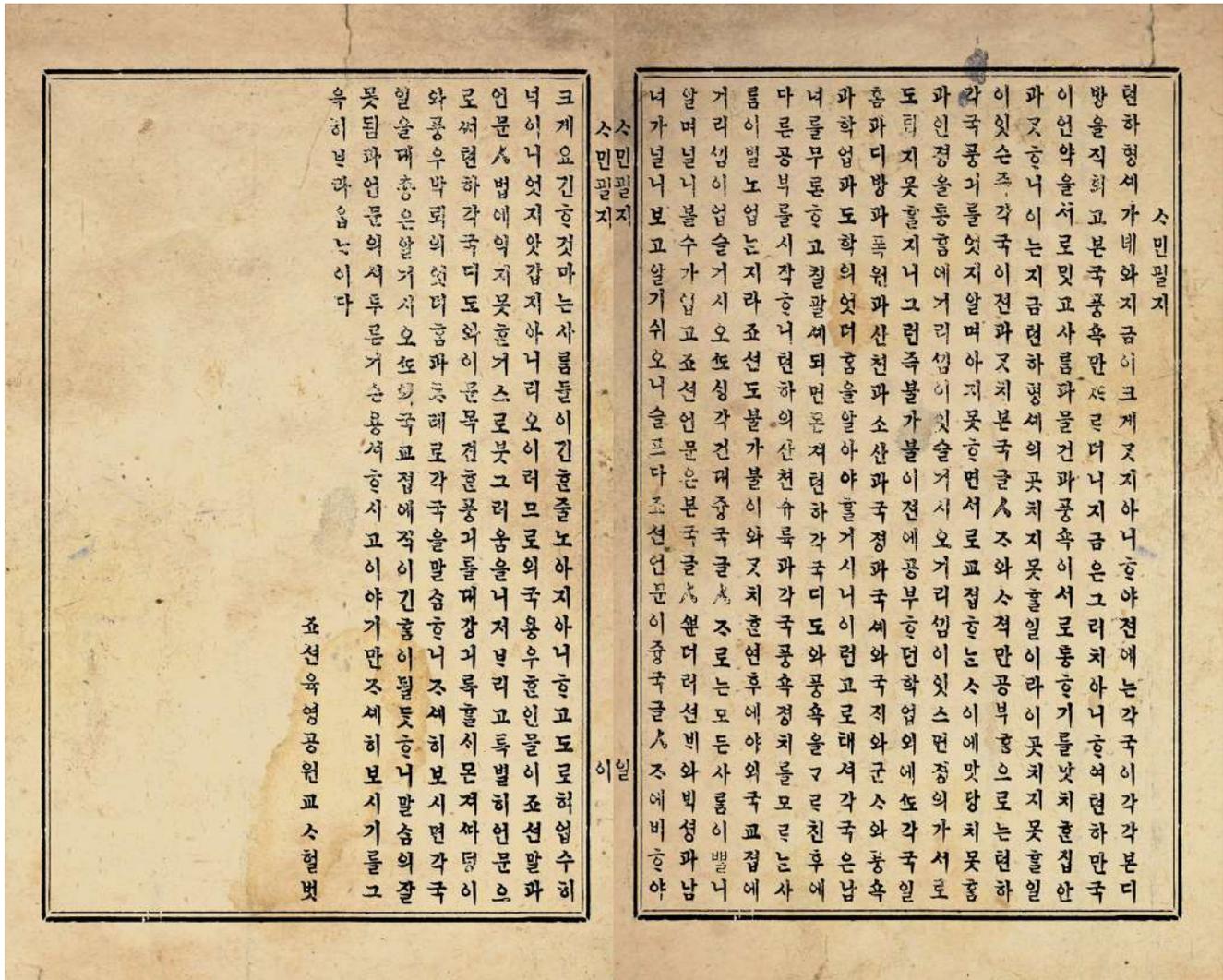
했다. 비록, 외국인의 손에 의해서 저술된 것이지만, 한국 최초의 세계지리 교과서로, 아직 세계정세에 대해 백지상태이던 한국에 세계 지리 지식을 꾸밈없이 심어주어 세계에 눈을 돌리게하고, 근대화의 문을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한글 전용인 이 책은 1890년대 국어 연구의 자료가 된다. 표기법에서 한글만으로 쓰면서도, ‘글스자, 언문스법’ 등 사이시옷이 사용되고, 된소리 표기에 전통적인 된시옷과 함께 ‘ㄱ, ㅍ’ 등이 ‘뽀니, 뽉뽉이’ 등과 같이 사용된 점이 주목된다.

외국, 특히 유럽의 국명이 영어식 발음에 따라 ‘유로바 · 노웨국 · 쉬덴국 · 덴마크국 · 네데란스국’ 등으로 적히고, 바른쪽에 가로줄을 친 점도 특이하다. 참고로 한문본에서는 위 지명이 ‘구라파歐羅巴 · 나위那威 · 서전瑞典 · 정말丁抹 · 하란荷蘭’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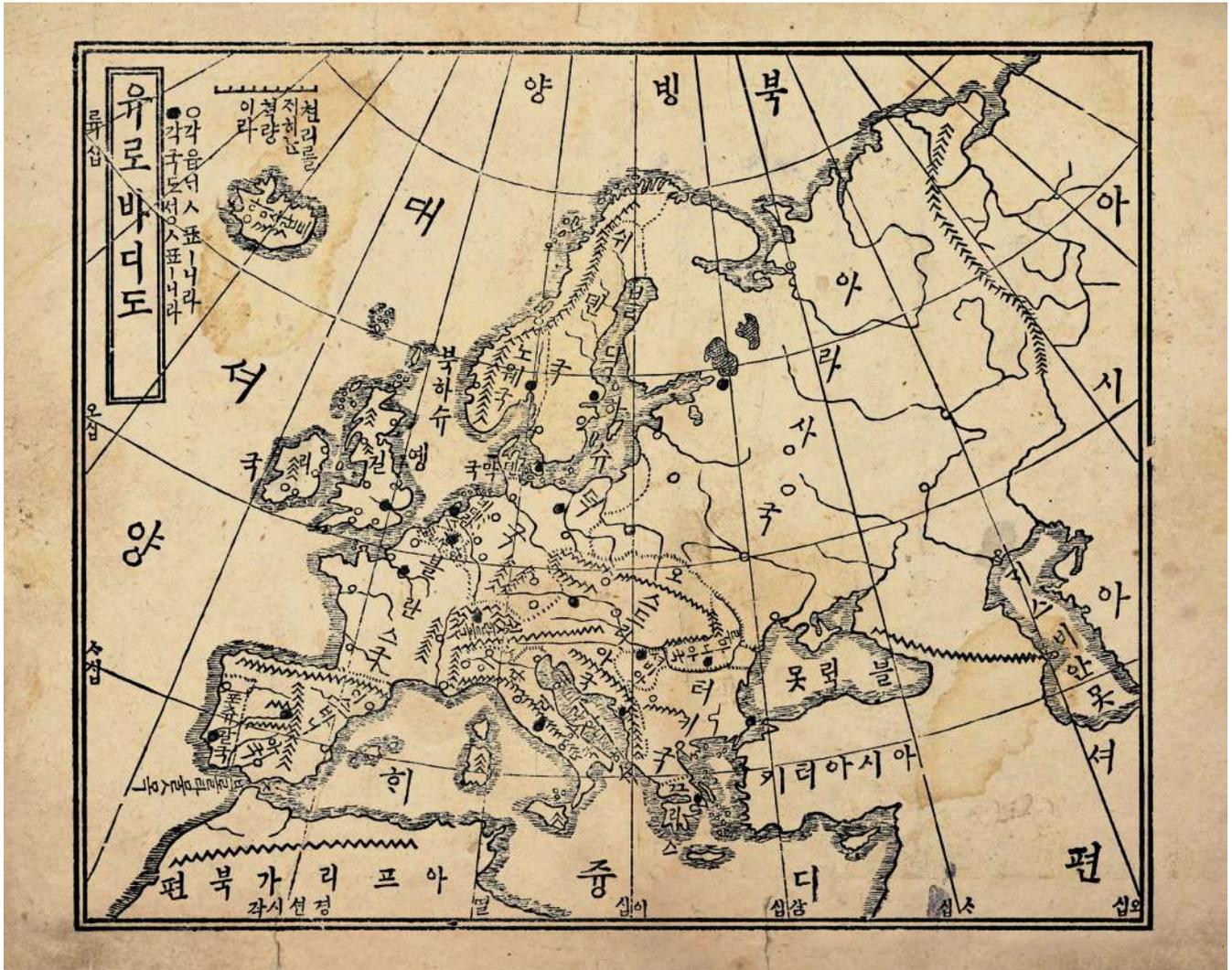
김동진, 『최초의 교과서이자 최초의 한글 교과서 『사민필지』』, 『헐버트의 꿈 조선은 피어나리!』, 참좋은친구, 서울, 2019년 초판 1쇄, 2023년 2쇄, 81~92쪽 『사민필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25620

『사민필지』(도판 5-2)에보면 저자는 ‘조선육영공원교수헐벗’으로 되어있으나, Hulbert, Homer B.의 다른 이름으로 Hulbert Homer Bezaleel ; 헐버트 호머 ; 헐버트 호머 B ; 헐버트 H B ; 헐벗 ; 허흘법 ; 허할보 ; 할보 ; 흘법 ; 하루바토 H B ; ハルバート H B가 있다. Hulbert, Homer B., 국립중앙도서관 isni KOREA, www.nl.go.kr/isni/0000000081141905



도판 5-2.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士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1쪽, 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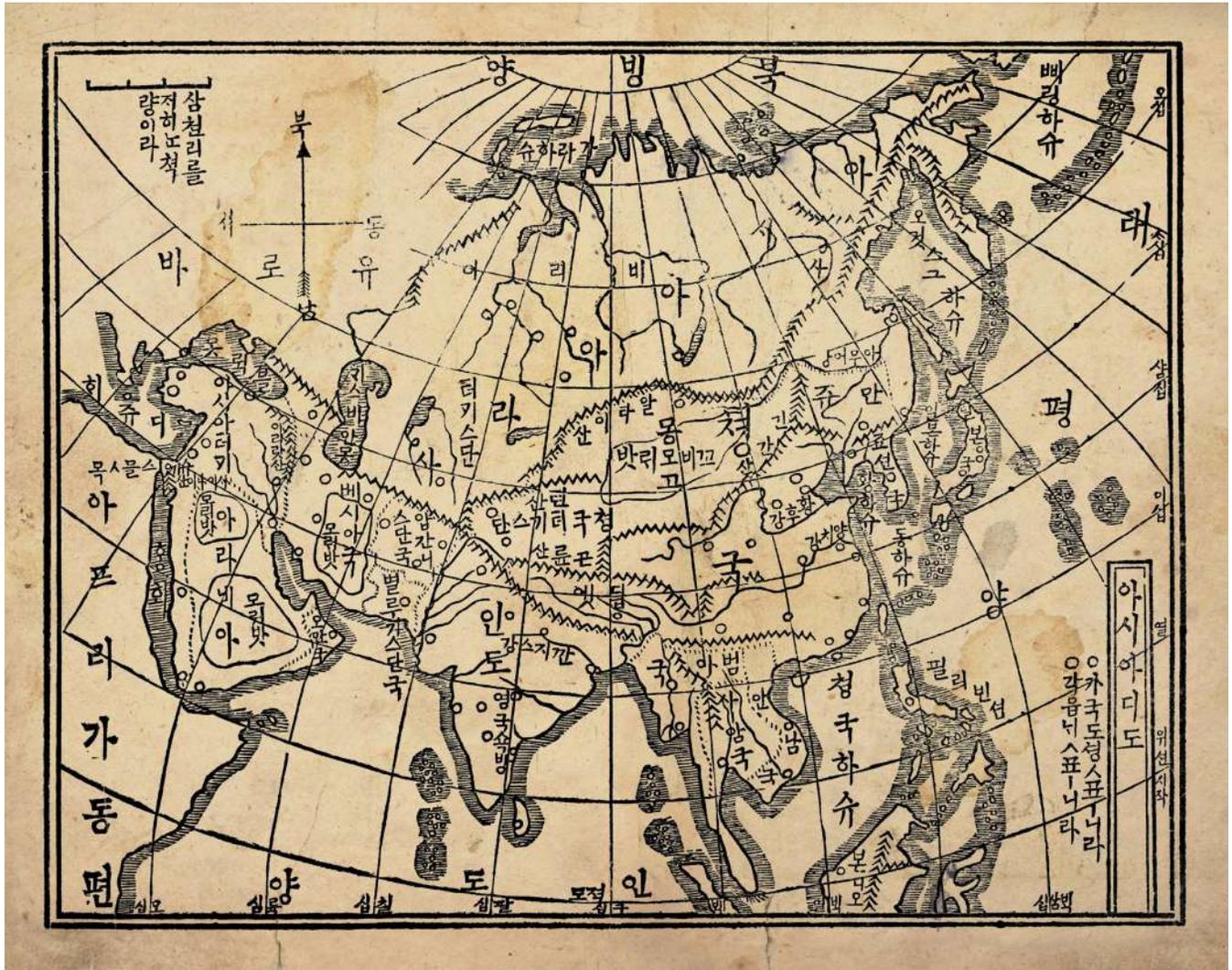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士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경성京城,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도판 5-3. 유로바디도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士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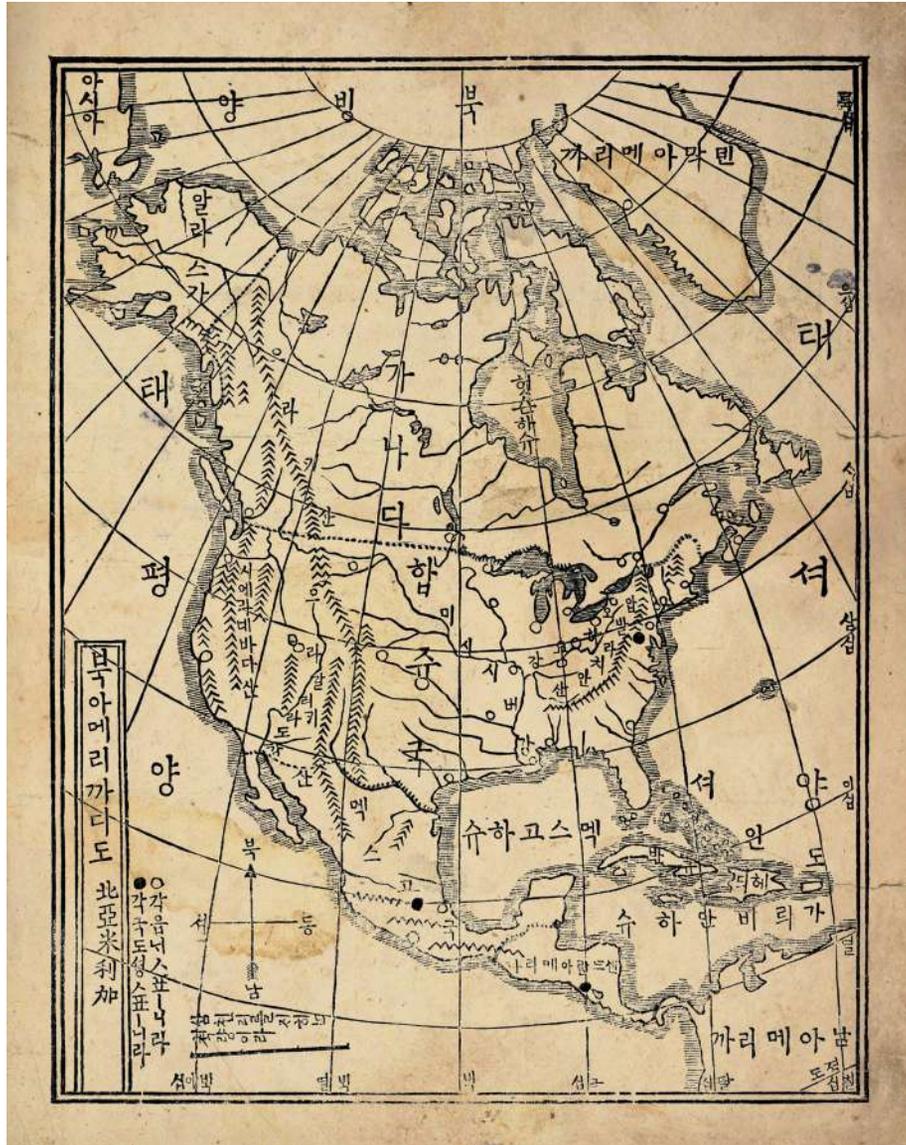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士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경성京城,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도판 5-4. 아시아디도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士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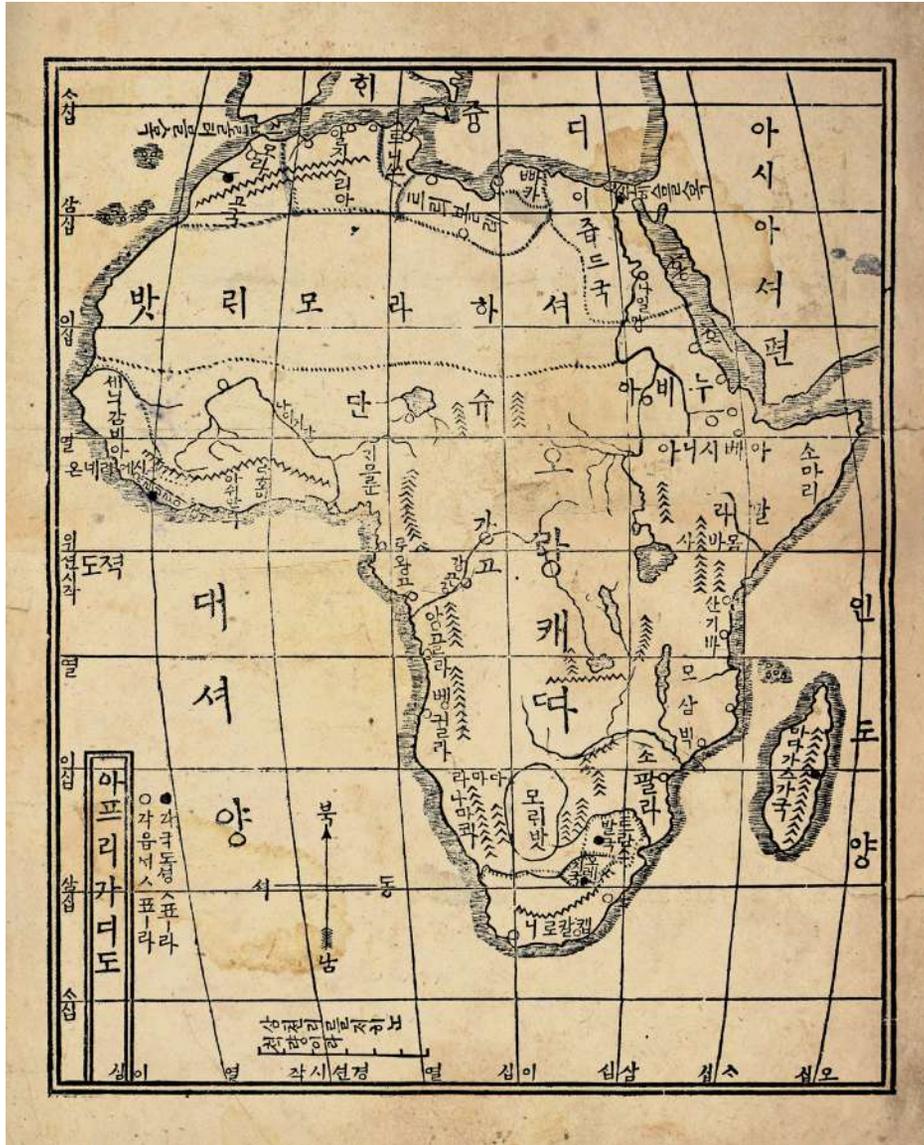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士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경성京城,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도판 5-5. 북아메리카도 北亞米利加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士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士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경성京城,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도판 5-7. 아프리카대륙도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士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2.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5년



도판 5-9.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5년, 1쪽

『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은 갑오개혁 이후 ‘학부學部’에서 편찬, 목활자本木活字本으로 간행한 신 교육용 교과서이다. 1895년 음력 7월에 간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관찬官撰 교과서로 오늘날의 국정교과서國定教科書에 해당한다. 제1과「대조선국」에서 제41과「성길사한2」에 이르기까지 모두 41과로 편성되어, 우리의 역사와 인물, 근대 생활과 지식, 서양 도시와 역사와 위인 등을 다루고 있다. 서양 문명의 수용과 침략적인 외세의 진출로 인해 복잡한 양상을 띠었던 당대의 현실을 타개하려는 민족적 의지와 자주독립, 주권 수호의 시대적 사명감 등이 강하게 투사되어 있다. 단원의 구성이나 내용은 ‘국민 소학’이라는 표제와 달리 매우 어렵고 전문적인 것이 많다. 이 책은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초등교육용 교재라기 보다는 당대 정부의 가치와 지향을 담은 국민교육용 교재라 할 수 있다. 『국민소학독본』은 조선의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대 전환기에 본격적인 근대 교과서, 특히 국어과 교과서의 탄생을 알리는 매체로 민족주의의 산물이자 응결체였다는 점, 아울러 서구와 일제日帝라는 강국에 둘러싸여 갈등하는 당대 정부의 고뇌와 지향을 집약된 형태로 보여주는 문화사적 사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강진호 편역, 『국민소학독본(학부 편집국 편찬)』, 도서출판 경진, 광명, 2012년, 8-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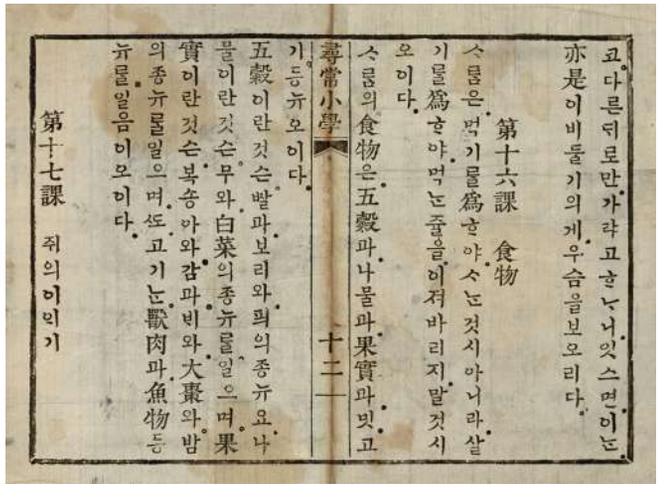
3.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소학독본小學讀本』,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5년



도판 5-10.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소학독본小學讀本』,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5년, 1쪽

『소학독본小學讀本』은 개국 504년(1895) 중동仲冬(11월)에 목활자本木活字本으로 간행된 한지韓紙로 된 한장本韓裝本이다. 같은 해 가을에 간행되었던 『국민소학독본』과 마찬가지로, 이 책도 비교적 난도 높은 한자가 사용된 장문의 국한문혼용체로 기술되어 있다. 『소학독본』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인 학제가 마련된 직후에 간행된 수신서로서 지금의 교과서와는 많이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다. ‘소학小學’이라는 제명 그대로 이 교과서는 초심자를 위한 수양 입문서라는 외양을 취하고는 있다. 그러나 사용된 한자의 수준은 중급 이상이다. 또한 이 교과서는 전통 학문에서 근대 학문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양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소학독본』에는 군주제 국가로서 변화하는 세계속에서 스스로 실리적인 사고와 실천력으로 무장한 신민臣民 양성으로 이어지는 궤적과 함께 유교적 이념에 근간을 둔 국민과 개인의 구체적인 상이 감겨 있다. 비록 이듬해에 간행된 『신정심상소학』(1896)의 성격이 일본 색채가 깃든 교과서로 바뀌고 말지만, 이 같은 변화 때문에 역설적으로 『소학독본』이 가진 개화기 최초의 수신교과서修身教科書로서의 위상이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유임하 편역, 『소학독본(학부 편집국 편찬)』, 도서출판 경진, 광명, 2012년, 8-12쪽

4.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신정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6년



도판 5-11.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신정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6년, 1, 12쪽

1896년 음력 7월에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에서 편찬한 신정심상소학은 국한문 혼용의 금속활자본金屬活字本(정리자整理字)이다.

『신정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은 1896년 조선의 학부가 새로 만든 국어교과서이다. 3권 3책으로 구성되었고 국한문혼용으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1895년의 『국민소학독본』에 비해 대체로 문장의 길이가 짧고, 한자의 쓰임새가 적으며, 한자의 난도도 높지 않다. 특히 내용과 단원 구성을 비교해 보면, 『국민소학독본』은 국기, 역사, 지리 등이 중심이 된 데 반해 『신정심상소학』은 생활, 가정, 사회 등 일상의 제재가 평이한 수준으로 엮인 것이 특징이다. 『신정심상소학』(1896)은 근대적 국어 교과서의 내포內包와 외연外延을 수립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일제의 정교한 교육 전략의 소산이며, 식민 지배를 위한 '정형화定型化 작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가 채택한 국한문체 역시 본질적으로는 근대적 지식을 빠르고 용이하게 전달하기 위한 조선의 선택이자 일제의 산물인바, 일본의 문화 통합이 낳은 전략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즉 일제의 조선어 교과서 개발과 참여는 조선의 말과 글을 가르치기보다는 국민(나아가 일제의 신민)을 향한 통치 이념과 정책 보급에 궁극적 목표가 있었던 까닭이다.

구자항 편역, 『신정심상소학 (학부 편집국 편찬)』, 도서출판 경진, 광명, 2012년, 8-12쪽

5. 리봉운李鳳雲, 리규대, 『국문정리國文正理』, 국문국國文局, 경성京城, 1897년



도판 5-12. 리봉운李鳳雲, 『국문정리國文正理』, 국문국國文局, 경성京城, 1897년

1897년(건양 2)에 리봉운李鳳雲이 지은 국문 연구서로, 현대적 의미에서의 국문 확립 방안을 논의한 최초의 저술이다. 저자는 국문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국문에 대한 독창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어에 대한 체계적 이론서라기보다는 국문에 대한 일종의 논설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내용에는 ‘자모 규칙, 장음 반절 규칙, 단음 반절 규칙, 받침 규칙, 언어 장단 규칙, 문법론, 문법 말 규칙, 탁음 규칙, 어토 규칙, 새 언문 규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권말에 ‘학부대신 민중목씨’ 등의 ‘열람’이 있는데, 같은 해에 간행된 이득수의 『국문정리』에도 똑같은 기록이 있으므로 당시 학부學部의 인정을 받은 책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책은 형식적인 면에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순전한글로 쓰였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갑오경장 이후 위상이 높아진 한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권점圈點을 통해 띄어쓰기를 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각 어절의 오른쪽 끝에 권점을 찍어 띄어쓰기 표시를 하고 있는데, 조사와 어미를 어간에 붙여 쓰도록 한 조처는 현재의 맞춤법 규정과 동일하다. 다만 일부 관형형과 체언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셋째, 고유명사 중에서 인명人名은 홀줄로, 지명地名과 국명國名은 겹줄로 오른쪽에 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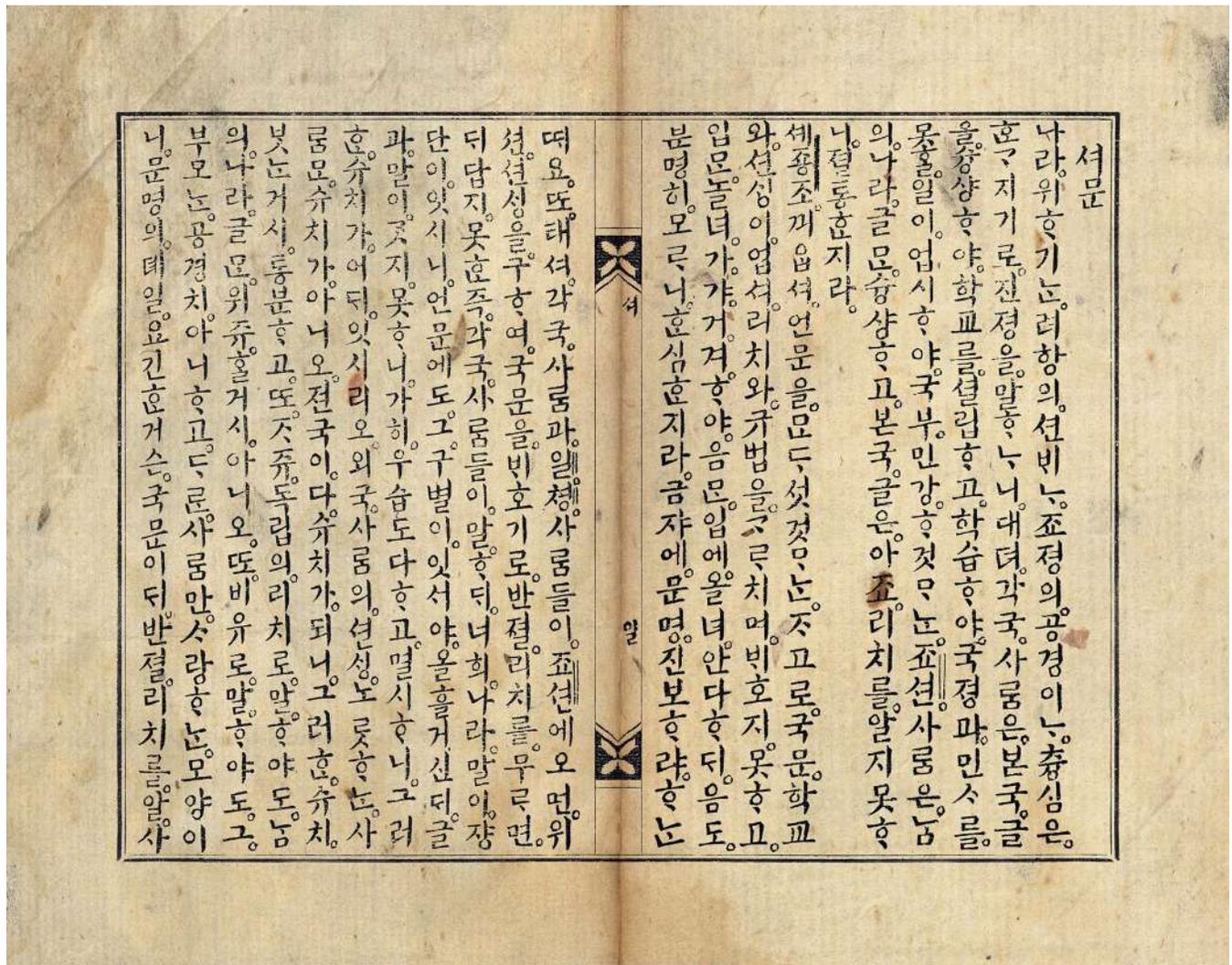
도판 5-13. 리규대, 『국문정리國文正理』, 국문국國文局, 경성京城, 1897년

이러한 표기 방식은 그 이전 시기 성경의 번역본에 나오는 체제와 같은 것이다. 한편 리봉운이 제안한 국문 확립 방안 중 특이한 것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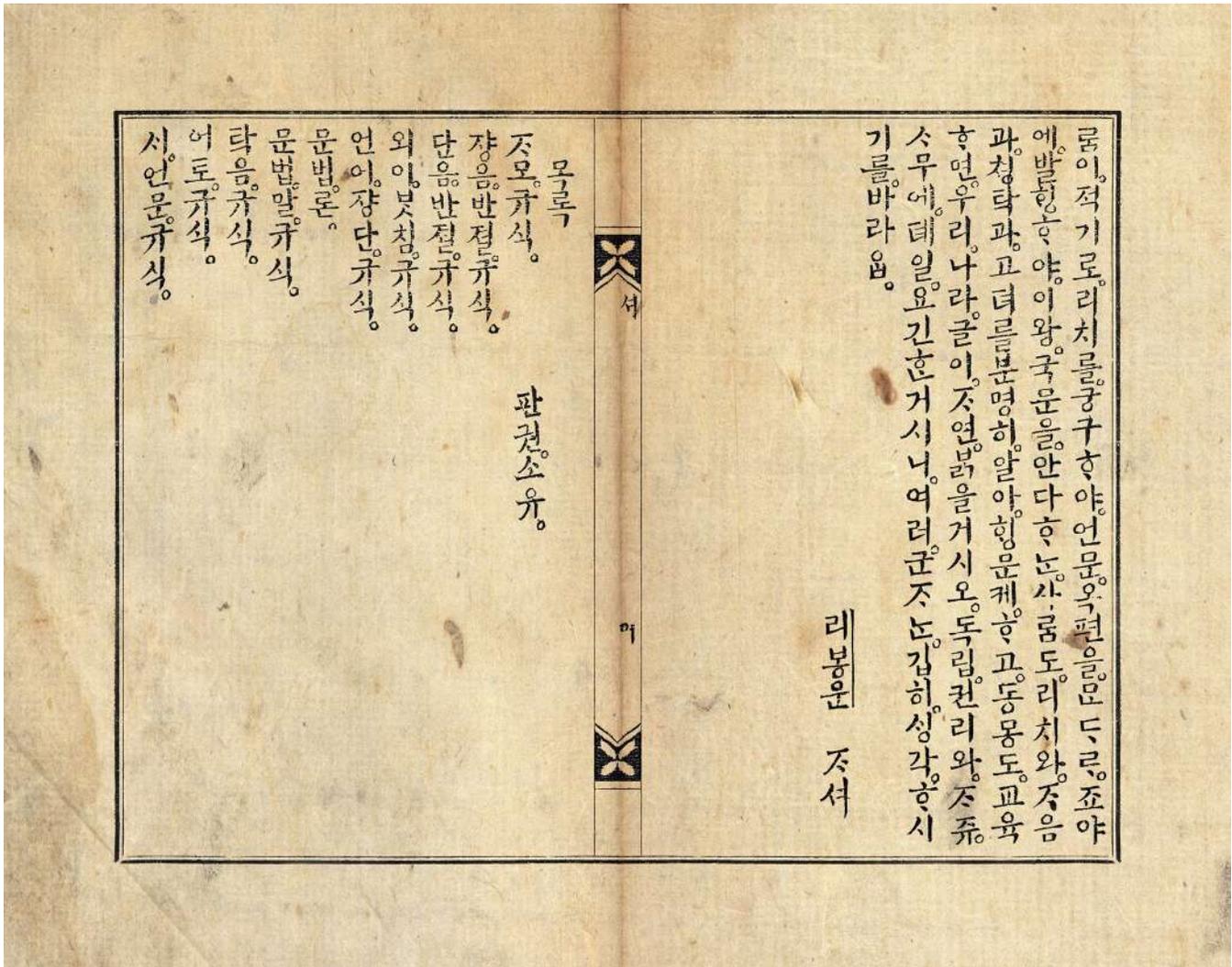
첫째, 국어에는 장단, 고저, 청탁의 구별이 있으므로 국문에 이러한 구별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장단의 구별을 중시해서 기존의 반절을 ‘장음반절규식’이라고 하고, 여기에 새로 ‘단음반절규식’ 176자를 만들어 장음과 단음의 구별을 국문에서 명확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리봉운 자신이 일본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일본어의 특징을 기준 삼아 국문을 확립하려 한 결과로 보인다. 이득수의 『국문정리』에도 비슷한 주장이 나온다.

둘째, 자모의 분류를 좌모자左母字, 우모자右母字, 종성終聲으로 구분했다. 자음은 모두 좌모자에, 모음은 모두 우모자에 속하게 하여 분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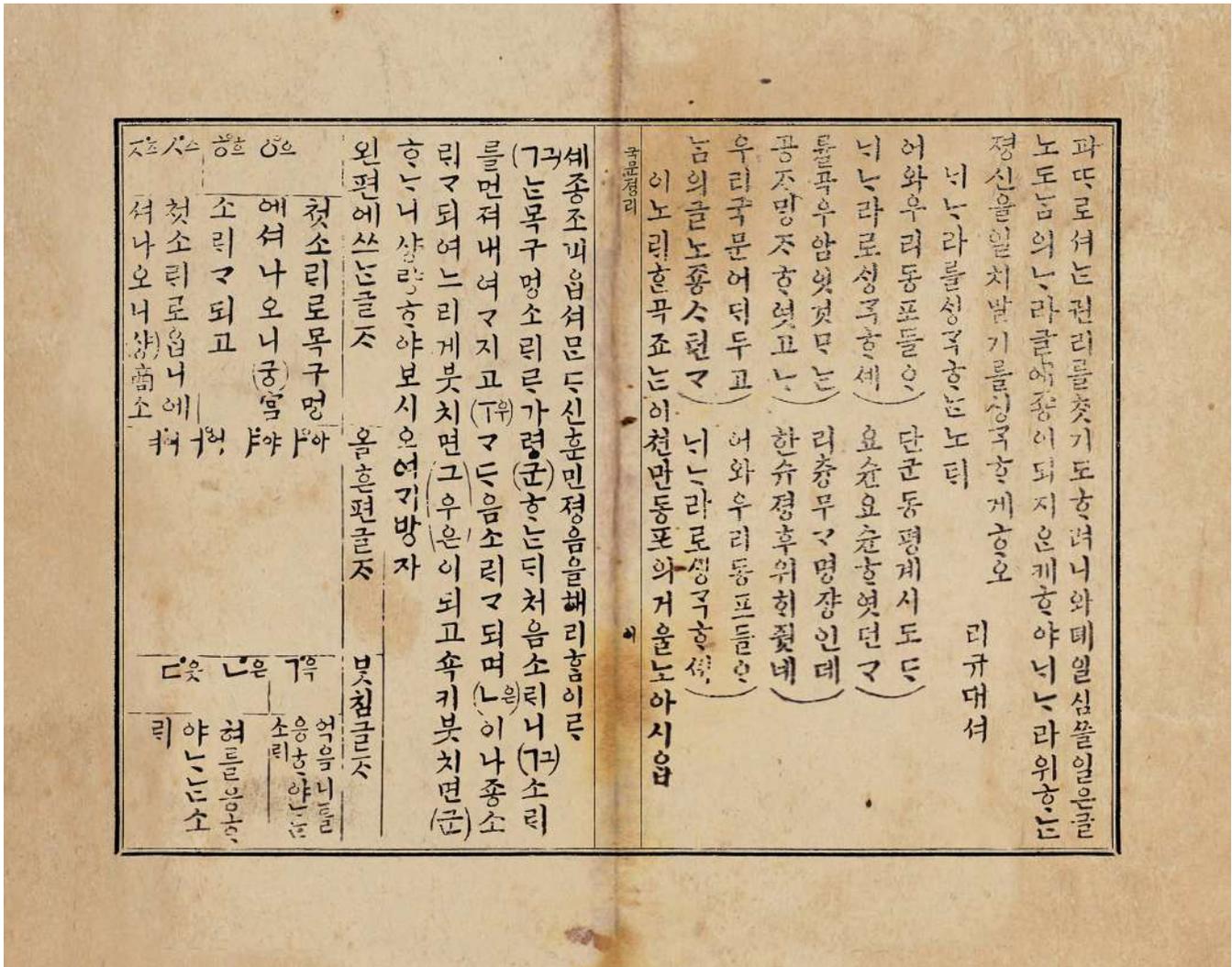
『국문정리』, 조광국(해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G43238_00¬es=basic



도판 5-14. 리봉운李鳳雲, 『국문정리國文正理』, 국문국國文局, 경성京城, 1897년, 서, 일쪽



도판 5-15. 리봉운李鳳雲, 『국문정리國文正理』, 국문국國文局, 경성京城, 1897년, 서, 이쪽



도판 5-16. 리규대, 『국문정리國文正理』, 국문국國文局, 경성京城, 1897년, 이쪽

8. 정인호鄭寅琥, 『최신초등소학1最新初等小學 一』, 옥호서림玉虎書林, 경성京城, 1908년

『최신 초등소학1』은 을희 2년(1908) 7월에 간행된 소학교용 교과서·독본이다. 4권 2책으로 되어 있으며, 우문관에서 인쇄본으로 제작하여 유통하였다.

편술 겸 발행은 정인호, 교정은 이충건이 맡았다. 정인호는 한일 병합 후 군수로 역임했으나, 삼일운동을 전후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한 인물이다. 특히 상해 임시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고, 군자금을 모집하여 송금하려다 발각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최신 초등소학』에서는 자주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애국심, 자강사상 등을 고취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편술자의 사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신 초등소학』의 본문과 주석은 세로쓰기로 되어 있다. 본문은 국한문혼용체로 서술되어 있으며, ‘로다’, ‘더라’, ‘더냐’ 등의 어미를 주로 사용하여 언문일치를 꾀하고 있다.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한문체는 엄밀히 말하면 국어의 통사統辭가 거의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주한종체國主漢從體에 해당한다. 이는 개화기 이후 전개된 언문일치 운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특히 4권 중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담은 1권은 한자漢字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거의 한글로만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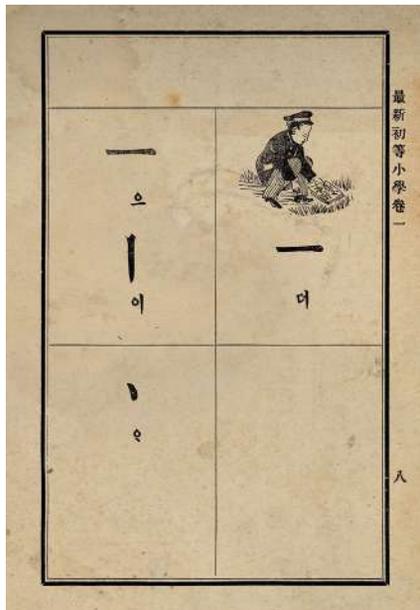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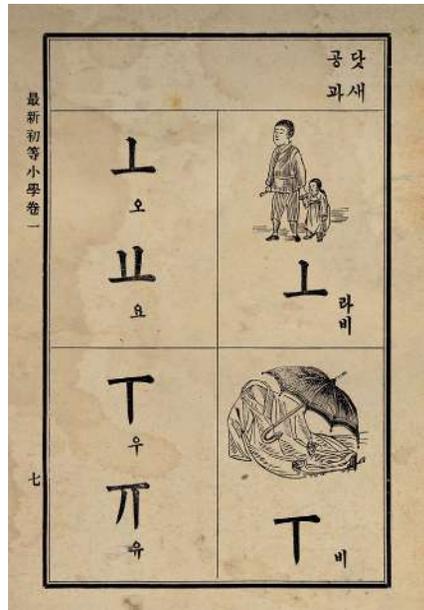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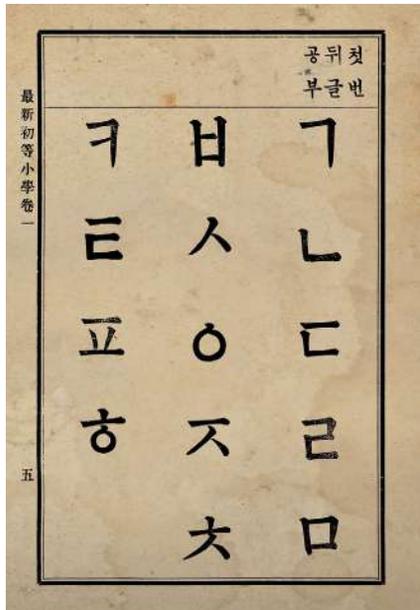
편술자 정인호는 이 책을 통해 독자인 학생들의 애국심과 독립사상을 고취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각 장에는 한두 개의 중심 소재가 마련되어 있는데, 소재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려는데 그치지 않고, 그 특성에 빗대어 교훈을 주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매나 식물의 뿌리와 같은 자연물에 대한 설명문의 성격을 지닌 단원에서도,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제공에 더하여 그 자연물의 성질에 빗대어 학생에게 교훈을 주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이 책은 상당 부분에서 당국과 마찰을 겪는다. 을지문덕이나 정몽주, 거북선 등 역사적인 인물이나 유산을 통해 민족적 자긍심과 독립 정신을 강조하는 단원들은 집필되었다는 기록은

남아있으나 현재의 판본에는 삭제되어 있다. 이 독본이 발행된 시기가 한일병합 이전이지만 이미 학부 당국에서 일본인과 친일파의 득세가 두드러지던 시기였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은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던 것이다. 결국 『최신 초등소학』은 1909년 학부 지시로 사용금지 처분이 내려지고, 한일병합 이후 일제에 의해 압수·분서焚書 처리되기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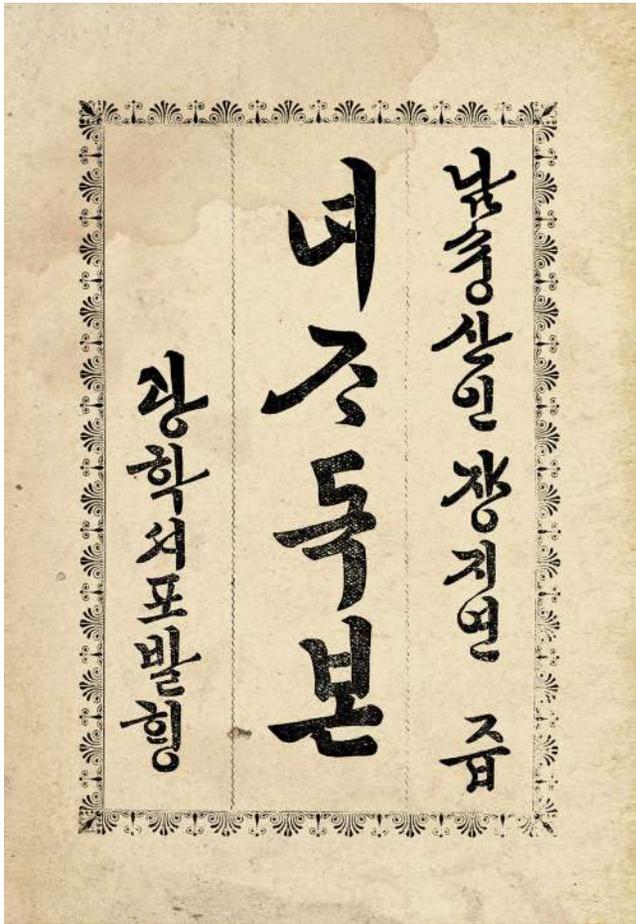
『최신 초등소학』의 일차적인 목적은 학생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일이다. 이때 동원되는 소재는 벌, 미역, 도요새, 소나무와 같은 자연물에서부터 ‘비를 무릅쓰고 책을 돌려주다’, ‘바른말 하는 학도’, ‘문명한 기상’ 등 학생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짧은 삽화들, 그리고 최치원, 정약용, 민영환 등 역사적인 인물들이다. 이들 소재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언어를 교육하고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동원된 소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편술자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호출되어 배치된 것이었으며, 그것은 한일병합 직전이라는 당대의 시대적 문맥 속에서 편술자가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다. 1906년 2월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보통학교령’이 반포됨에 따라 조선에 대한 일제의 교육정책은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최신 초등소학』이 위치한 1908년이란 시점은 곧 이 책의 성격을 결정짓는 것이었다. ‘구국救國’과 ‘식민지화植民地化’라는 서로 병행할 수 없는 목적이 충돌하던 한 가운데 『최신 초등소학』이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이승윤, 김준현 편역, 『최신초등소학(정인호 편술 겸 발행)』, 도서출판 경진, 광명, 2012년, 8-11쪽



도판 5-19. 정인호鄭寅琥, 『최신초등소학1最新初等小學 一』, 옥호서림玉虎書林, 경성京城, 1908년, 5~8, 26, 52쪽

9. 장지연張志淵, 『여자독본女子讀本 상』, 광학서포廣學書鋪, 경성京城, 1908년



도판 5-20. 장지연張志淵, 『여자독본女子讀本 상』, 광학서포廣學書鋪, 경성京城, 1908년

1908년 장지연이 여성의 국어 교육을 위하여 편찬한 상·하 2권으로된 순국문체의 인쇄본 교과서, 독본이다. 상권은 총론·모도도道·부덕婦德·정렬貞烈·잡편雜篇 등 5장 64과로 되어 있고, 하권은 장의 구별 없이 56과로 되어 있다.

상권에서는 역사적으로 이름난 우리나라 현모·현부의 사적을 열거하여 이상적인 유교적 여인상을 제시하였고, 하권은 주로 중국과 서양 여성들의 사적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특히, 서양 여성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과 활동을 그려 신여성의 전범典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편찬 방법 및 기술상의 특징은 순국문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간혹 한자를 곁에 달았으며, 각 단원 끝에는 본문에 사용한 한자의 음과 훈을 별도로 묶어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상권의 총론에서는 국민의 지식이 가정교육의 발달 여부에 성패가 달려 있음을 강조하여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논하고 있다.

제2장 모도편에서는 김유신金庾信·정여창鄭汝昌·이항복李恒福·이이李珣 등의 어머니가 지녔던 부덕과 엄정한 가정교육을 소개하고 있다.

제3장 부덕편에서는 신라시대 소나素那의 처, 고구려 온달의 처, 신숙주申叔舟의 처인 윤부인尹夫人 등의 예화를 통하여 내조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제4장 정렬편에서는 석우로昔于老·박제상朴堤上·도미都彌의 처 등 정절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여인들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제5장 잡편에서는 기생·무녀 등 천민 가운데에서 뛰어난 행적을 지녔던 인물들을 실고 있다.

하권에서는 중국과 서양의 여인 중에서 국가존망의 위기를 맞아 나라를 구한 영웅담과 급박한 상황에서도 정절과 부덕을 지닌 여성들을 소개하고 있다. 맹모孟母·방아가녀龐娥賈女·마리타馬利他·여안如安 등 25명의 행적이 실려 있다.

이 책은 여성용 교과서의 편찬 및 출판이 극히 제한되었던 개화기에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구적인 교재로 평가된다. 1910년 11월 일제에 의하여 발매금지를 당하였다.

『여자독본女子讀本 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36459

10. 유길준俞吉濬, 『노동야학독본勞動夜學讀本』, 경성일보사京城日報社, 경성京城, 1908년



도판 5-21. 유길준俞吉濬, 『노동야학독본勞動夜學讀本』, 경성일보사京城日報社, 경성京城, 1908년

이 책의 목차 앞에는 상징적인 삽화 한 장이 실려 있다. 코트를 입고 구두를 신은 노동야학회 고문 유길준 씨와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 올리고 맨발에 짚신을 신은 ‘노동자’의 대화 장면이 그것이다. 조윤정 편역, 『노동야학독본(유길준 저술 및 발행)』, 도서출판 경진, 2012년, 8쪽

『노동야학독본勞動夜學讀本』은 유길준俞吉濬(1856~1914)이 저술한 노동자 교육용 교과서이다.

갑오개혁 이래 근대 교육이 실시되면서 근대적 교육 기관 설립이 증가하는 한편 국어, 역사, 지리, 수학, 정치, 경제, 과학 등 근대 교과서의 저술, 출판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 역시 근대적인 교육을 위해 1908년 7월 경성일보사에서 출판된 교과서로 총 91쪽 분량으로 3,000부가 발행되었다. 이 책은 일반 학교가 아닌 야학에서 공부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였다. 당시 대한제국에서는 사립 학교 설립 운동과 함께 야학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야학들 중 노동야학회의 경우 서울에서만 1만여 명을 넘어서는 회원을 가지고 있었고, 지회 설립을 통해 지속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유길준은 노동야학회의 고문을 맡고 있으면서 야학에서 사용할 교재로 『노동야학독본』을 저술했다.

교과서는 총 50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문체를 위주로 하고 한문 훈독을 기재한 형태로 기술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노동자의 의무, 권리, 윤리에 관한 것이며,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질, 군주와 국가에 대한 충군과 애국심, 국민으로서 의무와 권리 등에 대한 것이다.

『노동야학독본』은 제도권 교육 기관에서 근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부여받지 못하고 있던 노동자들과 일반 민중을 위해 설치된 야학의 교재였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노동자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여기지 않고 계몽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야학독본』의 노동, 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당시 계몽 운동가들의 일반적인 인식의 반영이기도 했다.

『노동야학독본』,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contents.history.go.kr/front/tg/view.do?treeId=0200&levelId=004_0240&ganada=&pageUnit=10

11. 유길준俞吉濬, 『대한문전 전 大韓文典全』, 용문관隆文館, 경성京城, 1909년



도판 5-22. 유길준俞吉濬, 『대한문전 전 大韓文典全』, 용문관隆文館, 경성京城, 1909년, 緒言一, 緒言二

『대한문전大韓文典』, 용문관隆文館, 경성京城, 1909년은 개화사상가이자 정치가인 유길준(1856-1914)이 국어의 문법 및 특징을 기술한 국어문법서이다. 1909년 용문관隆文館에서 간행하였다. 이 책의 서언緒言에 의하면, 30년 동안 국어문법을 연구하면서 원고고치기를 8차에 이르러 이 책이 이루어졌으며, 그 제4차 원고본이 세간에 잘못 흘러 재판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따라서, 저자로서는 개고를 8번이나 거듭한 끝에 이룩한 최종의 완결본이나, 최초의 문법가인 저자의 그러한 저술이 출판된 것은 최광옥崔光玉의 이름으로 출판된 『대한문전』(1908.1.), 주시경周時經의 『국어문전음학國語文典音學』(1908.11.)에 뒤이어 세 번째가 되었다.

저자 유길준은 11년간(1896~1907) 일본에 망명하여 있었고, 그 사이에 국어문전을 집필하여 『조선문전』의 여러 필사본과 유인본을 남겼으므로, 당시 나돌던 문전의 이본이 몇 가지에 이른다. 내용으로 보아 유길준 저술로 밝혀진 조선문전과 최광옥의 『대한문전』과 이 책의 3종인데, 이 3종이 모두 유길준의 저술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우선, 『조선문전』의 서序와 이 책의 서언과의

취지가 같고, 특히 그 가운데 한 부분은 『조선문전』의 서와 거의 같은 표현이다.

이것은 『조선문전』이 유길준의 저술임을 확인하는 증거인 동시에, 『조선문전』과 내용이 같은 최광옥의 『대한문전』도 유길준의 저술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 책은 자서自序와 서론緒論·언어론·문장론의 세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서론에서는 문전의 의의와 음운론·문자론 등을 다루고 있고, 제2편 언어론에서는 품사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제3편 문장론에서는 문장 성분의 종류, 문장의 종류, 문장의 호응呼應 및 해부解剖 등을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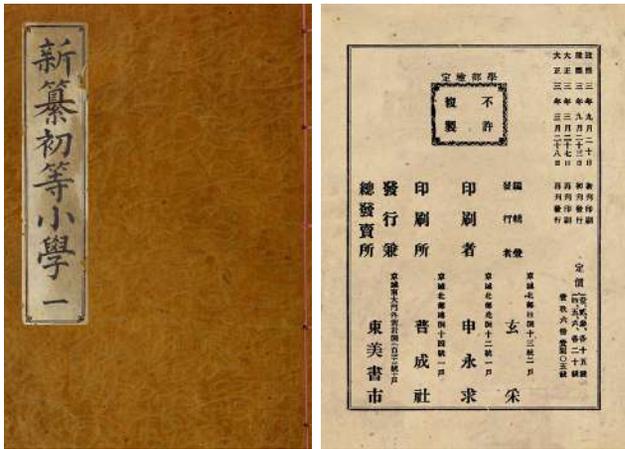
이 책은 교과서의 체재를 갖추고 있는데, 이전의 이본들에 비하면 훨씬 체계화되고 자세하며 정돈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최광옥 저술로 출판된 『대한문전』(1908)과 비교하면, 품사인 어종語種은 이전의 후사(조사)를 접속사에 포함시키는 한편, 어미에 해당하는 조동사를 독립시켜 같은 수의 8 품사가 되었으나, 음운의 3종인 모음과 부음 및 자음의 분류가 일치하고, 음운변이인 몽수蒙受와 축약, 명사의 세 종류와 대명사의 네 종류 및 그 수량, 동사의 자동과 타동 및 주동과 피동의 구분, 동사의 시제 및 변화, 조동사의 종류 등 또한 같다.

물론, 형용사에서와 같이 내용을 확장하거나 신설하여 자세하게 체계화한 부분도 있고, 접속사에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나 체계상 같은 부분도 있다. 또한, 개고판이기 때문에 용어의 변경이나 설명과 용례의 증보 및 하위 분류의 재조정 등 수정한 곳도 적지 않다. 이러한 부분은 제3편 문장론이 가장 뚜렷하여 분량도 많이 늘어났다.

『대한문전大韓文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14999

12. 현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도판 5-23. 현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신찬초등소학1』은 1909년(융희 3)에 현채玄采(1886~1925)가 지은 사찬私撰 국어교과서다. 번역가이자 역사가였던 현채는 『신찬초등소학』에 앞서 초등학교 교과서 『유년필독幼年必讀』(1907)을 집필하였으며, 이 책은 당시 초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널리 읽혔다. 그러나 애국심과 민족사상 고취를 근간으로 삼았던 『유년필독』은 1909년 5월 일제에 의해 발표된 ‘출판법’에 의하여 강제 압수 및 발매금지 당한다. 그 후 『유년필독』을 대신할 교과서로서 『신찬초등소학』이 출간되었다.

『신찬초등소학』의 내용은 기초 지식이나 일반 상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권 1은 특별한 제목 없이 자모字母와 철자의 보기를 들고, 낱말 익히기 형식의 단어나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 2~6은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우화寓話 형식의 비유를 통하여 기본적인 상식, 혹은 교훈을 전달하는데 주력한다. 이것은 크게, 실생활에 필요한 ‘실용 지식’과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도리’, 그리고 ‘조선의 지리와 역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다룬 부분으로는 ‘담’, ‘누에’, ‘나무’, ‘기름’ 등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 설

명하는 단원과 ‘동서남북’, ‘혜는 법’, ‘7요일’, ‘춘수 알기’ 등 기초 지식을 가르치는 단원이 포함된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시계’, ‘지남침’, ‘기차’, ‘군함’ 등 근대화와 관련된 서구 문물에 대한 소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편지 쓰기 양식이 예시되어 형제간에, 혹은 친구 사이에 어떻게 편지를 주고받는지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신찬초등소학』에는 실용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이 많아서 이 책을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기초지식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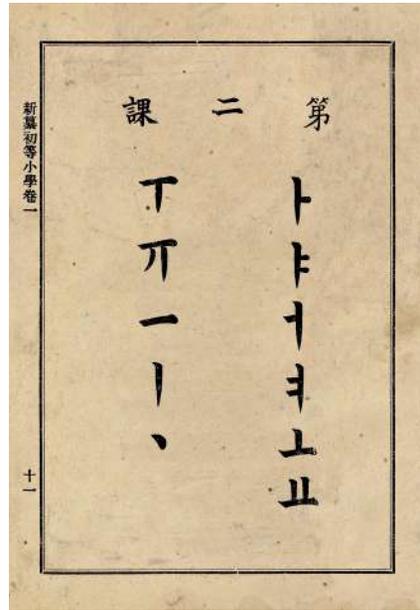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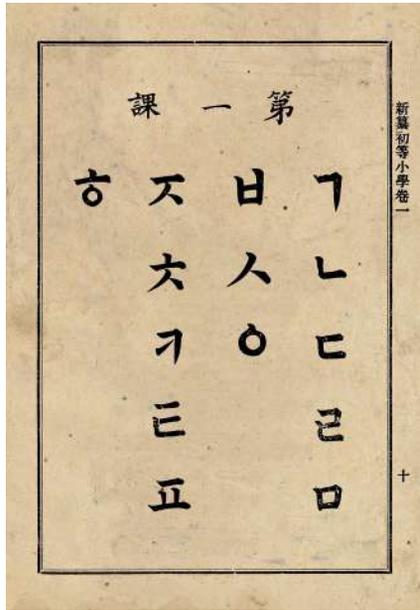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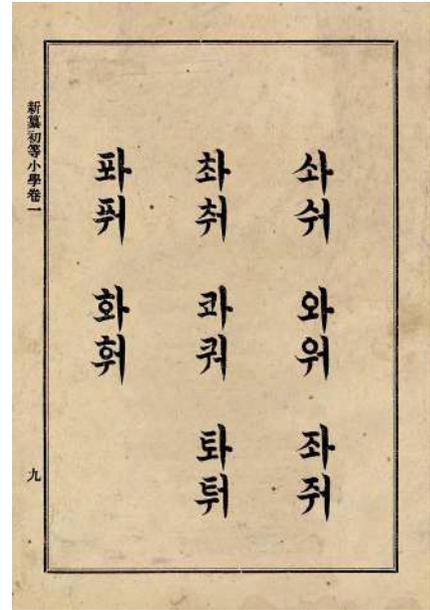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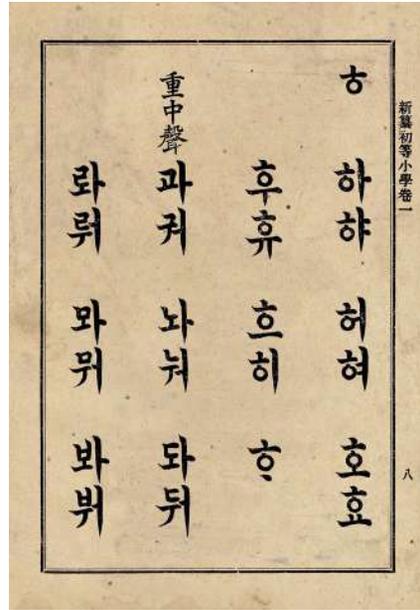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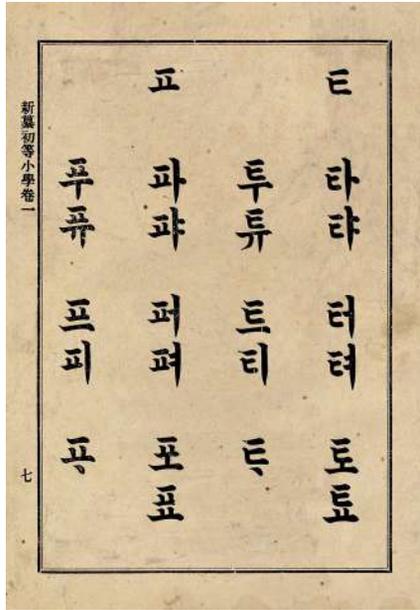
다만, 권 4의 35과 ‘경찰警察’ 단원의 다음과 같은 내용은 『신찬초등소학』이 한편으로 상식적인 내용을 전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결과적으로 옹호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이 글에서 경찰은 관할지역을 순시하여 화재나 수해와 같은 재난을 예방하고 구원하며, 항상 엄한 규칙을 준수하여 인민의 재난을 방지防備하고 구제하기에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는 자라고 설명되어 있다. 경찰의 본분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저자의 이러한 시각은 한결음 더 나아가 우리 인민은 경찰을 항상 존경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당부하기까지 이른다.

『신찬초등소학』의 또 다른 내용으로 효성과 신의, 근면과 성실과 같은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도리를 강조한 부분이 있다. 여기서는 일본의 서예가인 소야도풍小野道風, 미국의 초대대통령 워싱턴, 그리고 가난하지만 면학하는 아이들을 예로 들어 ‘정직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긍정적인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이솝 우화와 같은 이야기를 통하여 겸손하고 현명하게 살아갈 것을 권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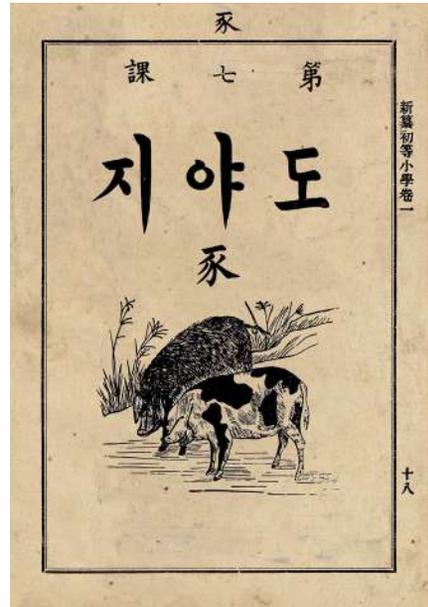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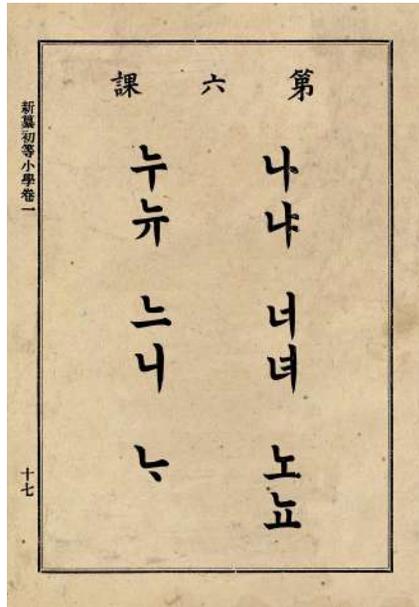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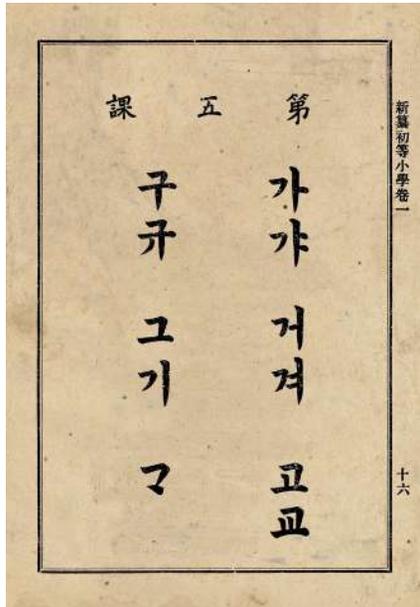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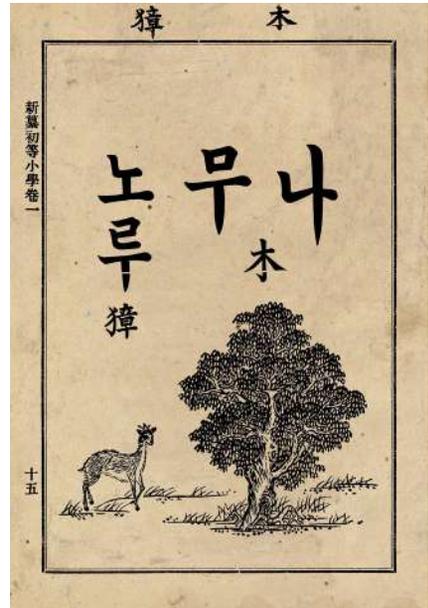
박민영, 최석재 편역, 『신찬초등소학(현채 저작 겸 발행)』, 도서출판 경진, 광명, 2012년, 8-10쪽

현재 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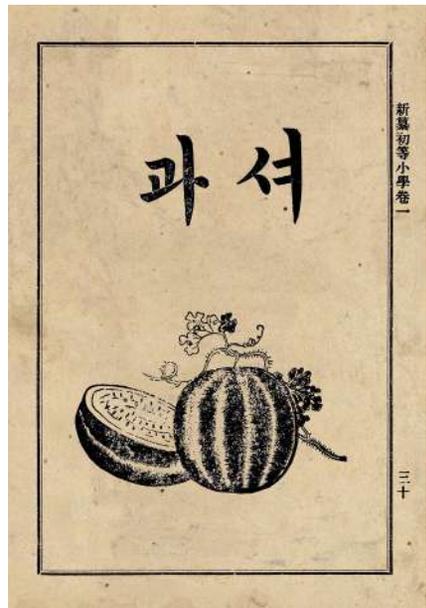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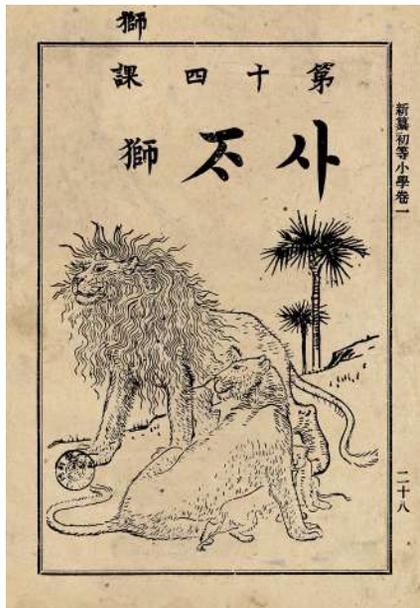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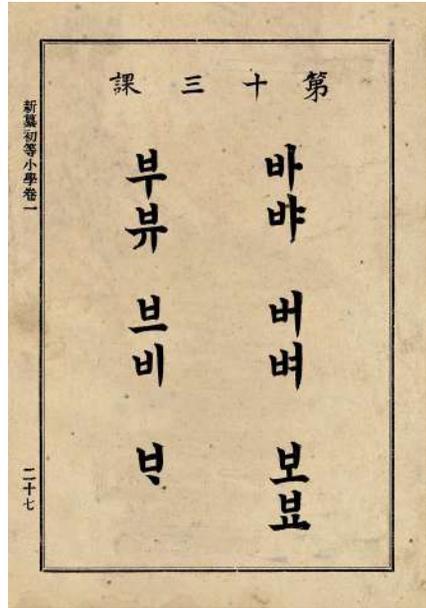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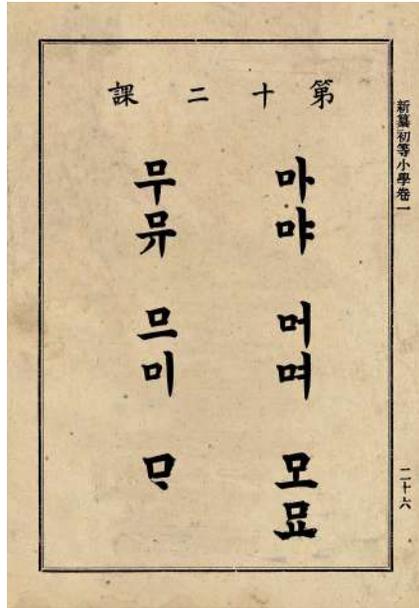
도판 5-25. 현재 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7-12쪽

현재 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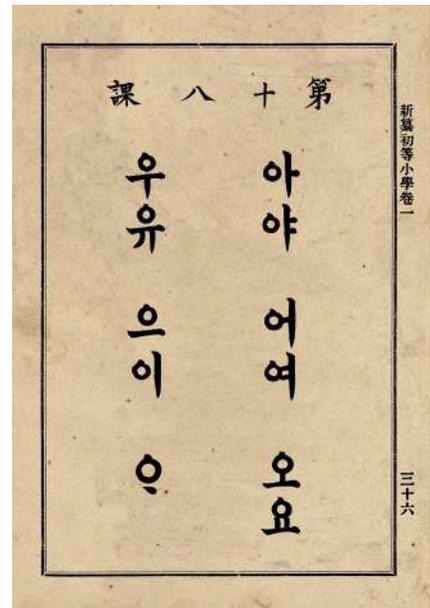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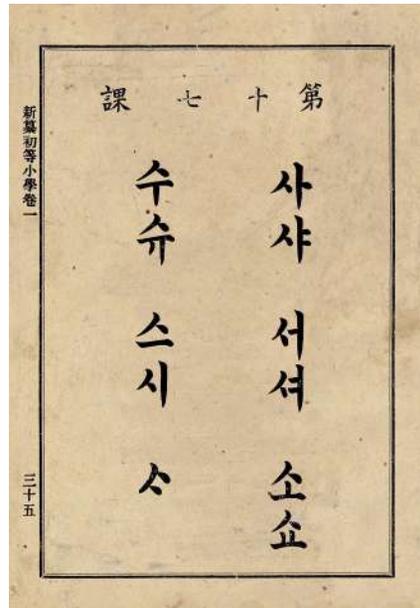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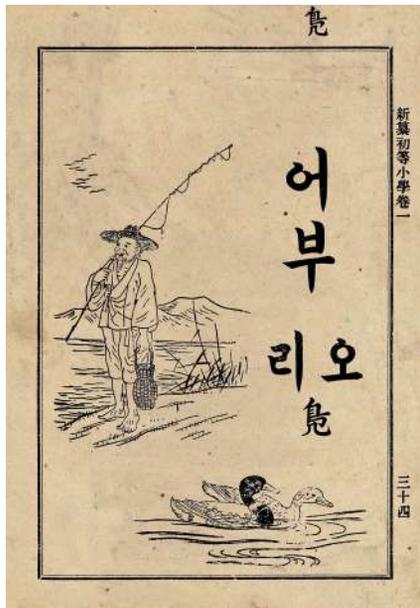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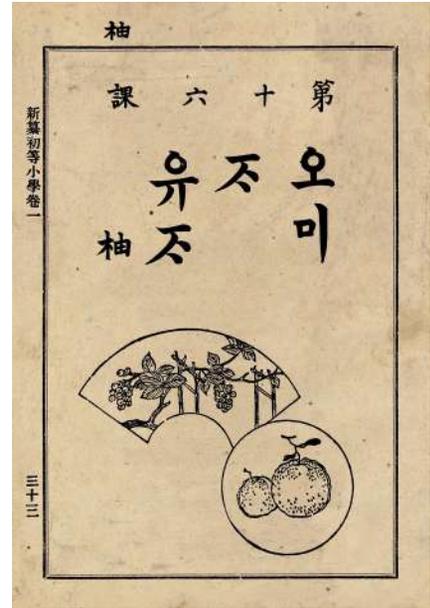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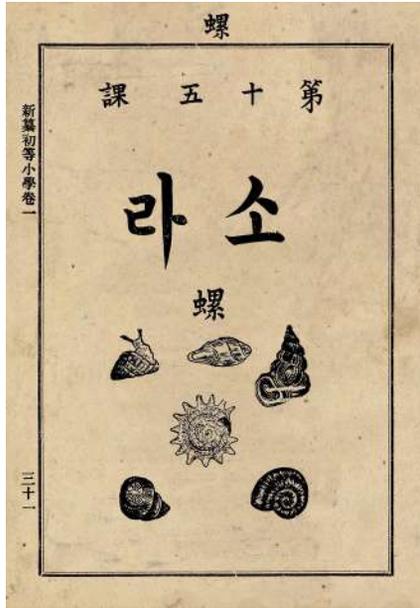
도판 5-26. 현재 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13~18쪽

현재 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도판 5-28. 현재 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25~30쪽

현재 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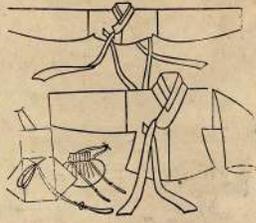
도판 5-29. 현재 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31~36쪽

현재 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囊 襦

第十課

니 주 리 저
 囊 襦 高



新纂初等小學卷一
 三十七

燭 梔

초 燭



치 不 梔

新纂初等小學卷一
 三十八

第十二課

주 쥬
 즈 지 즈

자 ㅈ
 저 ㅈ
 조 ㅈ

新纂初等小學卷一
 三十九

第十二課

추 쥬
 츠 치 ㅈ

차 ㅈ
 처 ㅈ
 초 ㅈ

新纂初等小學卷一
 四十

箕 象

第二十二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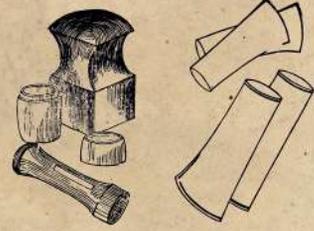
기 箕



코 기 리 象

新纂初等小學卷一
 四十一

新纂初等小學卷一
 四十二



투 ㅈ
 토 수

도판 5-30. 현재 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37~42쪽

현재 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新纂初等小學卷一

第 二 十 三 課

가 가 커 겨 코 교
쿠 큐 크 키 코

四十三

新纂初等小學卷一

第 二 十 四 課

타 타 터 터 토 토
투 투 트 티 투

四十四

笙 蕉

第 二 十 五 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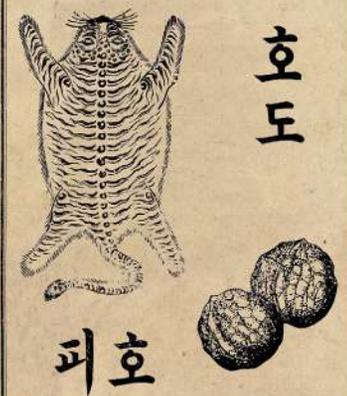
피리笙 파초蕉



四十五

新纂初等小學卷一

호도



피호

四十六

新纂初等小學卷一

第 二 十 六 課

파 파 퍼 퍼 포 포
푸 푸 프 피 푸

四十七

新纂初等小學卷一

第 二 十 七 課

하 하 허 허 호 호
후 후 흐 히 호
과 과 와 워 화 휘

四十八

도판 5-31. 현재 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43~48쪽

新纂初等小學卷一

第五十六

第三十四課

산

산이 구에 폭포가 났쳐.
나려오니 경치도 좃코.
소리도 요란하오.



新纂初等小學卷一

第五十七

第三十五課

駝

약티란 짐
성은 성품
이 순할고
로 조고마
늘 아히도.
능히 살고.
가오



新纂初等小學卷一

第五十八

第三十六課

鼠

쥐
쥐박

쥐의 바릇은 물건
을 잘 싸을꼬. 박
치는 낮에 눈이 나
두어 보지 못하오



新纂初等小學卷一

第五十九

第三十七課

冊

책상

책상 위에 노인
것은 책이니.
저 책은 우리
가 날마다 공
부하는 책이
올시다



新纂初等小學卷一

第六十

第三十八課

菽

콩

콩은 밥에 두
어 먹으면 구
수하고. 솥 두
부를 민드려
반찬하면 더
욱 좃소



新纂初等小學卷一

第六十一

第三十九課

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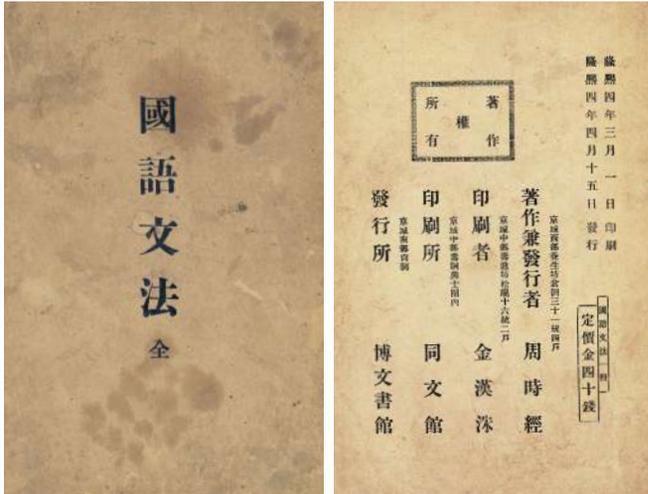
사람

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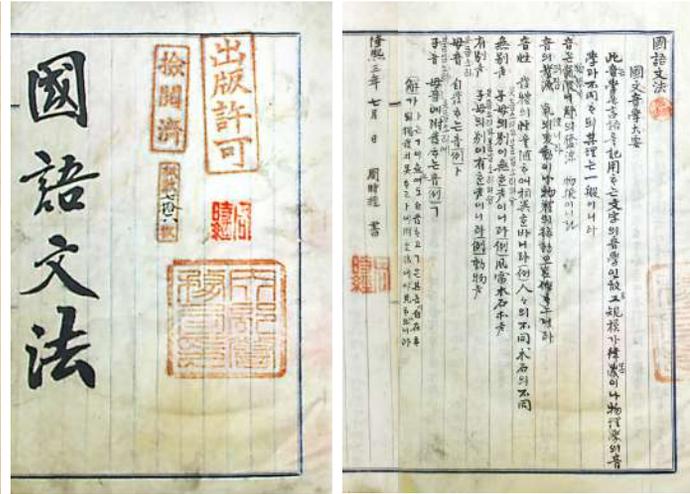
톱질하는 사람
은 목수이니.
이 사람은 집
도 짓고. 세간도
민드니. 참. 지조
가 잇소



13. 周時經, 『國語文法 全』과 주시경체周時經體
 13-1. 周時經, 『國語文法 全』, 博文書館, 京城, 1910년



도판 5-34. 周時經, 『國語文法 全』, 博文書館, 京城, 1910년



도판 5-35. 周時經, 『國語文法 全』 육필본肉筆本, 응희隆熙3년(1909) 7월

『국어문법』은 국어학자 주시경이 국어의 문법 및 특징을 기술하여 1910년에 간행한 국어문법서이다. 1911년과 1913년에 『조선어문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간행되었다. 주시경은 책의 서문에서 말과 문자가 독립의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하며 그 필요성에서 책을 저술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말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보편 문법의 토대 위에서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품사 분류론과 문장 구성론이 주요 내용을 이루는데, 품사 분류론에서는 9 품사를 설정하였고 문장 구성론에서는 독창적인 도해법과 의미해석 이론을 전개하였다.

『국어문법國語文法』,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06387

『EBS주시경체』는 콘텐츠 저작권 강화와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한글학회로부터 주시경周時經 선생의 『국어문법』육필본 원본 자료를 협조받아, EBS 자체적으로 글꼴 원형의 특성을 분석하고 디지털화를 위한 글꼴 기본 모듈을 추출하였으며, 기본 모듈을 추출하여 3가지의 굵기로 파생하였다.

『EBS주시경체』, about.ebs.co.kr/kor/organization/font?tabVal=jusigyong

또 이 때에 우리 나라에 날다스리니. 인민의 말이 신이 들
 과 우리 나라 말에 이름이 높으신 이들 과 우리 나라에
 자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말으신 이들 과 우리 나라 말을
 바르게 쓰어 줄 것이다. 되게 하고자 하시는 이들 과 우리
 나라 말의 자전을 만드려고 하시는 이들 과. 그 남아 우
 리 나라 말을 발달하게 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신 이들
 에게 감히 이 글을 들이노니. 이 글이 우리 나라 그래. 돌
 아 다니는 문법들과 다름이 있다고 미리 그 말이 쓰리
 라 하여 입에 갖갑게도 안이 하시고. 곳 버리시지. 말고
 연구 하실. 한 걸이로 삼아. 길이 씹어. 그 속까지. 맛보시
 고. 그 잘 보실. 은 다. 곧 히어. 그 맛을. 고르게 하여. 우리 나
 라. 글이 잘.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 고. 어 리 석은. 뜻은.
 감히. 말함 이. 로 이 다

음의삼년시월 일 주시경

제6장 『국문연구의정안國文研究議定案』(1909년)의 국문서체國文書體

『국문연구의정안』은 대한제국 말기인 1907년 9월에 학부學部 안에 설치된 국문연구소國文研究所에서 23회의 회의를 거쳐 1909년 12월 28일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성격을 갖는 글이다. 국문연구소가 설치된 1907년 7월은 시국적으로 볼 때 실로 격랑의 한 달이었다. 당시의 시국이 얼마나 복잡다단했는가는 7월 19일 헤이그 밀사사건으로 일제로부터 협박을 받아 고종 황제가 퇴위하고 순종이 즉위하였으며, 순종 즉위 직후인 7월 24일에 ‘정미 7조약丁未七條約’이 체결되고, 27일에는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신문지법新聞紙法’, 이어서 29일에는 집회·결사를 금지하기 위한 ‘보안법’이 발표되는 한편, 31일에는 ‘군대 해산령’이 내려져 대한제국이 무력화된 사실 등이 응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런 격랑激浪의 와중에서 설치된 국문연구소 위원들이 내놓은 『국문연구의정안』을 살펴보면, 국권 상실을 목전에 둔 시대적 불투명성과 암울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어 오늘날의 시점에서 뒤돌아볼 때 참으로 감개가 크다. 그들이 경주傾注한 노력이 얼마나 큰가는 이 『국문연구의정안』에 따로 별첨된 『국문연구國文研究』 하나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국문연구』는 1909년 3월 3일자 국문연구소 간사 이민응이 3월 16일 회의까지 최종연구안을 작성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위원들에게 보내고, 이에 위원들이 작성하여 회의일에 제출한 것을 묶어놓은 최종 연구안의 성격을 갖는다. 불과 10여 일의 여유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8명의 전체 위원은 각자의 연구안을 직접 손으로 써서 제출했는데, 그 분량은 어윤적 90장, 이능화 82장, 주시경 104장, 권보상 24장, 송기용 21 장, 지식영 15장, 이민응 7장, 윤구 11장 등에 달한다. 이 연구안들 가운데 어윤적·이능화·주시경의 연구안들은 각각 1책으로, 나머지 위원들의 연구안들은 함께 1책으로 묶여 모두 4책의 분량으로 『국문연구의정안』에 별첨 되어 제출되었다. 한동완, 『국문연구의정안』, 신구문화사, 서울, 2006년, 11, 12쪽

소 장 처 일본 동경대학 오구라문고
 서 명 『국문연구의정안國文研究議定案』
 저 자 국문연구소國文研究所 편編
 필 사 년 융희 3년 1909년
 판 사 향 필사본 31張 : 28.1 X 20.0 cm
 해 제 국문연구소에서 연구한 내용이다. 1909년 12월 27일까지 국문연구소 연구위원들이 국어의 음운과 맞춤법에 관한 10개의제議題를 연구하고 23회의 회의를 거쳐 1909년 12월 28일에 제출한 보고서이다. 「보고서」, 「국문연구의정안」, 「의결사」 등이 합철되어 있다.

表 題 『國文研究議定案』
 刊 記 隆熙三年,1909,十二月二十八日
 國文研究所委員長 尹致昨, 幹事 李敏應
 印 「尹昨」, 「李敏」, 「李容植印」
 合 綴 報告書, 國文研究所 隆熙3年,
 『國文研究議定案』筆寫本, 油印本(校訂), 議決事項

1. 『국문연구의정안』 보고서, 1909년 12월 28일

보고서

본 연구소에서 국문 연구를 종료하였기에 연구안을 첨부하여 의정안을 제출하옵고 사업의 전말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오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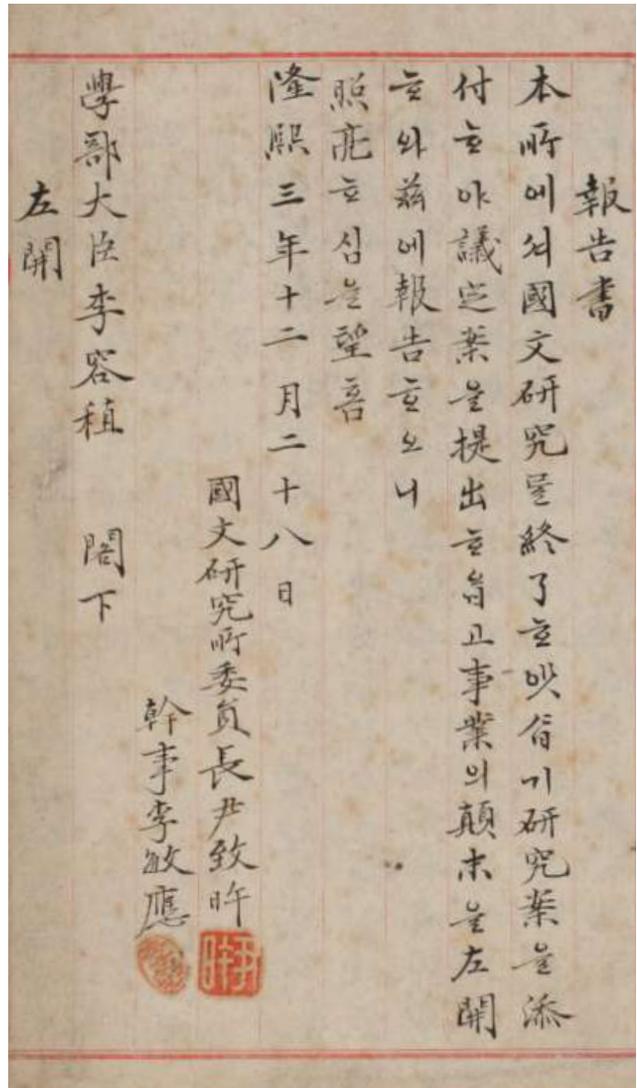
1909년(융희 3) 12월 28일

국문연구소위원장 윤치오
간사 이민응

학부대신 이용직 각하
좌개

이 부분은 『국문연구의정안』의 첫머리로서, ‘보고서報告書’라는 제목 아래 1909년 12월 28일 국문연구소 위원장 윤치오가 그동안 국문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를 당시 학부대신이었던 이용직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다음에 사업의 전말에 관한 기술까지를 포함해서 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국문연구의정안』 9장, 그리고 이 의정안 심의 과정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등사본 『국문연구의정안』 10장, 10회에 걸친 의결의 기록 4장이 붙어 있다. 의결 기록 다음에 <ㄱㄴㄷㄹㅁ 五字의 重音 (古謂 雙聲 俗稱 된시옷) 書法 一定>이라는 제목의 글 한 장이 있는데, 이는 이기문(1970:58)의 지적대로, 『국문연구안』 권 5 8장張의 어운적의 연구안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 글 다음에, 보고서에서 첨부한다고 한 연구안이 첨부되어 있는데, 첨부된 연구안은 국문연구소 위원들의 최종연구안으로서, 『국문연구國文研究』라는 표제表題로 되어 있으며, 주시경, 어윤적, 이능화의 최종연구안이 각 1책, 권보상, 송기용, 지석영, 이민응, 윤돈구의 최종연구안이 함께 묶여 1책 등 모두 4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기문, 『개화기의 국문연구』, 일조각, 1970년, 1982년, 58쪽
한동완, 『국문연구의정안』, 신구문화사, 서울, 2006년, 24, 25쪽



도판 6-1. 『국문연구의정안國文研究議定案』 보고서報告書, 국문연구소國文研究所, 1909년, 1쪽

2. 『국문연구國文研究』

2-1. 주시경周時經, 『국문연구國文研究』, 학부學部, 한성漢城, 1907년

작 성 주 체 주시경周時經(1876-1914) 찬,
어윤적魚允迪(1868-1935) 찬,
이능화李能和(1869-1943) 찬,
권보상權輔相, 송기용宋綺用, 지석영池錫永,
이민응李敏應, 윤돈구尹敦求 찬

판 종 필사본

발 행 사 항 학부學部, 한성漢城, 1907

형 태 사 항 不分卷4冊 : 26.6 X 18.3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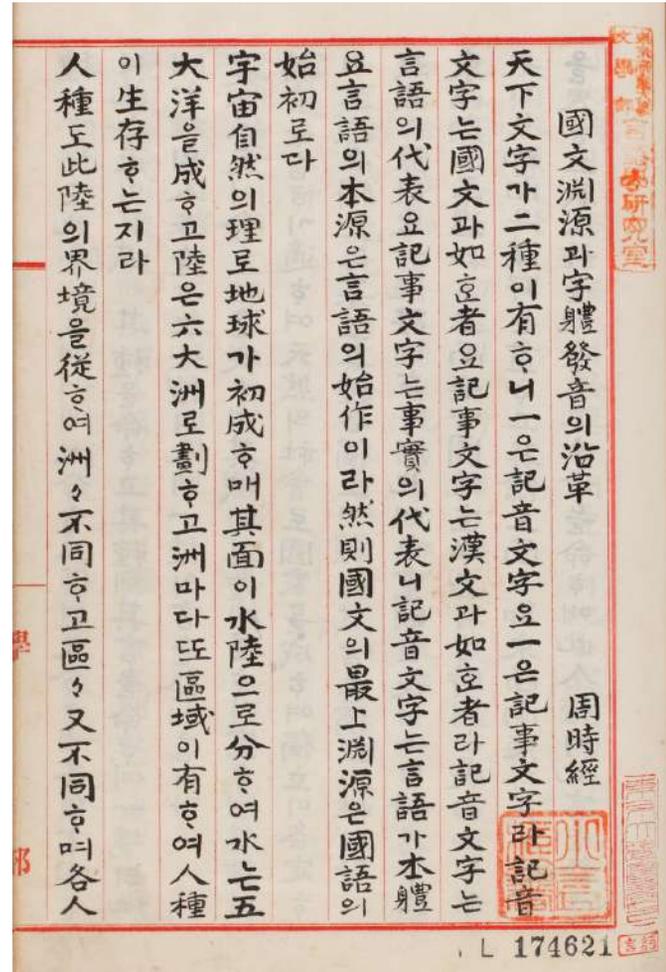
주 기 사 항 表題: 『國文研究』
書根題: 『國文研究』
冊次: 『國文研究』周時經(L174621),
『國文研究』魚允迪(L174622),
『國文研究』李能和(L174623),
『國文研究』權輔相·宋綺用·池錫永·
李敏應·尹敦求(L174624)

四針眼訂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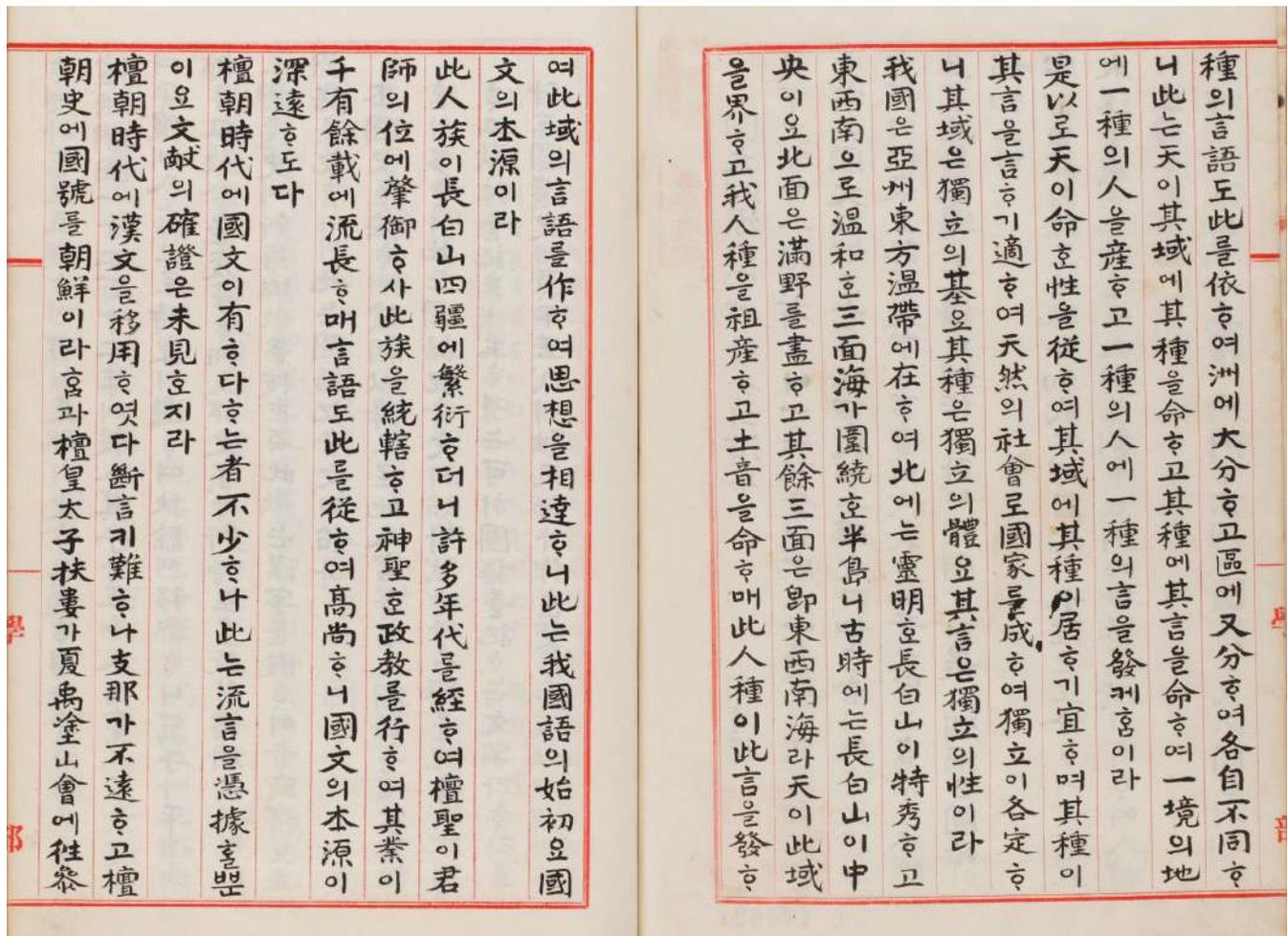
국한문혼용체. 學部 用紙 使用

현 소 장 처 各冊張數 1冊 107張, 2冊 94張, 3冊 84張, 4冊 83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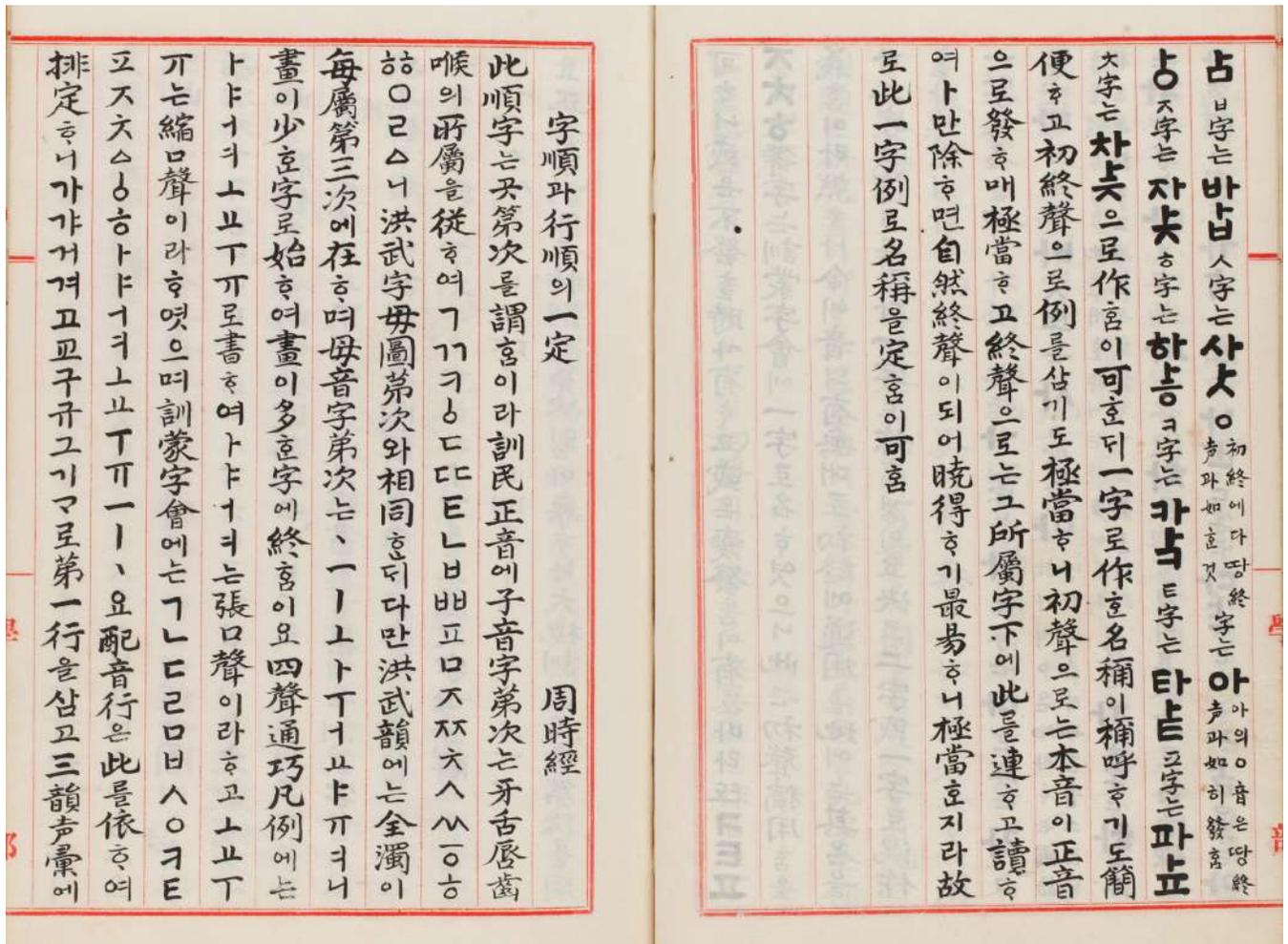
청 구 기 호 일본 동경대학 오구라문고
L174621-4



도판 6-2. 周時經, 『國文研究』, 學部, 漢城, 1907년, 0002쪽



도판 6-3. 周時經, 『國文研究』, 學部, 漢城, 1907년, 0003쪽



도판 6-4. 周時經, 『國文研究』, 學部, 漢城, 1907년, 0103쪽

